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Ⅱ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최성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김 원 예산분석관
곽보영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 원 | 강숙자 행정실무원
이예경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Ⅱ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 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5. 9. 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지정된 331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4년 기준 947조 3,919억원(부설기관 포함)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의 혁신 전략을 이끌어갈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은 안전 및 노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역시 발맞추어 앞으로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중점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공요금 관련 문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실시 및 면제사업의 집행 현황, 공공기관별 재정자금 관리 문제,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현황 등 주요 중점별 이슈를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권 및 3권에서는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 현황과 재무건전성, 사업부진 문제, 출자회사 관리 현황, 공공기관 자본금 미등기 문제 및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등 기관별 이슈를 정리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차 례

CONTENTS

정무위원회

1. 중소기업은행 ····· 3

1-1.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은행 역할 미흡 ····· 3

1-2.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문제 ····· 16

2. 예금보험공사 ····· 20

2-1.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현황 분석 ····· 20

2-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손실 누적 및 특별계정의 종료 예정에 따른 대책 필요 ····· 27

2-3.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이 출자한 지분증권에 대한 회수실적 저조 ····· 36

2-4. 정리금융회사 KR&C의 부실자산 정리 노력 강화 필요 ····· 45

2-5. 해외 프놈펜 사무소의 현지 자산 회수 장기화 문제 ····· 51

2-6.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강화 필요 문제 ····· 58

2-7.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적자 지속 문제 ····· 66

3. 한국주택금융공사 ····· 71

3-1. 주택저당증권(MBS)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체계 재검토 필요 ····· 71

3-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의 초과담보비율 과다로 인한 기초자산 활용 저하 ····· 75

3-3. 고유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80

3-4. 시공사 보증한도 산정체계 마련 필요 ····· 84

3-5. 신탁재산 여유자금의 동반성장대출 활용 및 특정 업체에 집중된 동반성장협력대출 문제 ····· 88



CONTENTS

4. 한국자산관리공사 ····· 93

4-1. 지원대상인 '구조개선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93

4-2. 부대업무인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의 지속 수행 필요성 검토 필요 ····· 99

4-3. 선박금융을 통한 신조 지원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05

4-4.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한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 ····· 112

4-5.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타 공공부문과 중복 최소화 필요 ····· 120

4-6.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면제 사업의 수익성 저조 및 투자심의회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미심의 문제 ····· 124

4-7. 유상증자 후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방식 재검토 필요 ····· 131

기획재정위원회

1. 한국수출입은행 ····· 137

1-1. 동일차주 신용공여 집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137

1-2.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현황 및 개선점 ····· 142

1-3.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실적평가 개선 필요 ····· 152

2. 한국투자공사 ····· 158

2-1. 적정 수준의 배당 유지 필요 ····· 158

2-2.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자금의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 164

3. 한국조폐공사 ····· 167

3-1. 민간기업이 진입가능한 지역의 지역화폐 운영 축소 검토 필요 ····· 167

3-2. 중증장애인생산품 4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 170



CONTENTS

교육위원회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175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175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 관리 강화 필요 ····· 179

2. 한국장학재단 ····· 183

2-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필요 ····· 183

2-2.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수혜 인원 확대 필요 ····· 188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방안 검토 필요 ····· 190

3. 한국사학진흥재단 ····· 194

3-1. 사학진흥기금의 사립학교 미수채권 관리 강화 ····· 19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공사(KBS) ····· 199

1-1.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 약화 문제 ····· 199

1-2. 시설투자 여력 약화 문제 ····· 206

1-3. 매출채권 관리 필요 ····· 210

1-4. 지속적 경영악화 중인 KBS 출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214

1-5. 인력운영 개선 필요 ····· 219



CONTENTS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224

2-1. 수익성 악화 문제 ····· 224

2-2.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증가 문제 ····· 231

2-3. 출판 재고 관리 필요 ····· 234

2-4. 증정용 연구 교재 제도 개선 필요 ····· 239

2-5.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 ····· 244

3. 한국연구재단 ····· 251

3-1. 예탁 출연금 낮은 예탁이자율 제고 노력 필요 ····· 251

4. 한국과학창의재단 ····· 257

4-1. EBS 출연금 교부 법적 근거 등 보완 필요 ····· 257

5. 시청자미디어재단 ····· 261

5-1. EBS 보조금 교부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261

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65

6-1. 중증장애인생산품 5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 26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한국농어촌공사 ····· 269

1-1. 농지보전부담금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269

1-2. 동반성장협력대출 동일업체 중복지원에 따른 정책혜택 편중 문제 발생 ···· 274



CONTENTS

2. 한국해양진흥공사 ····· 279

2-1.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의 해양산업 금융 업무 중복 우려 ····· 279

2-2.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업종 균형 고려 ····· 283

2-3. HMM 지분 보유 관련 문제 ····· 287

3. 해양환경공단 ····· 290

3-1. 정부 예산사업 과다 이월 문제 ····· 290

3-2.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293

3-3. 중증장애인생산품 4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 297

4. 부산항만공사 ····· 299

4-1. 부채비율 급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필요 ····· 299

4-2.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추진 지연 및 투자비 회수 문제 ····· 304

4-3. 해외물류센터 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 310

4-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투자심의회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미심의 문제 ····· 315

5. 인천항만공사 ····· 320

5-1.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에 따른 단기 유동성 관리 및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320

5-2. 골든하버사업 장기간 투자비 회수 지연 문제 ····· 327

5-3.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신규 배후단지 투자 회수 부진 문제 ····· 331

5-4.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운영사업자 계약 불이행 및 사업 지연 문제 ····· 339

6. 울산항만공사 ····· 343

6-1. 정부 배당 확대 필요 ····· 343

6-2. 사업 전략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해외사업 조기 철수 및 투자손실 발생 ···· 348



CONTENTS

7. 여수광양항만공사 ····· 352

7-1. 여수세계박람회장 인수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악화 문제 ····· 352

7-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집행 저조 문제 ····· 356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361

8-1.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 361

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364

9-1.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자금 낮은 예탁이자율 제고 노력 필요 ····· 364



정무위원회

1 중소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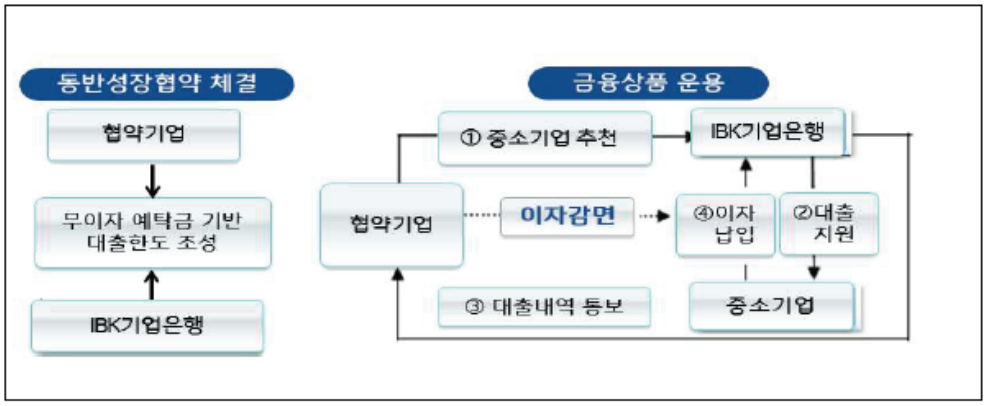
1-1.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은행 역할 미흡

가. 현 황

❑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협약은행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예탁금을 기반한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1]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 중임

○ 중소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의 협약은행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197개 협약기업의 3조 9,891억원에 이르는 예탁금을 재원으로 8조 7,05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6조 9,918억원임

[동반성장협력대출 개요]



자료: 중소기업은행

이은경 과장 (eunkylee@assembly.go.kr, 6788-3782)

1)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억원, 개사)

예탁금	대출한도	협약기업 수	대출잔액
39,891	87,050	197	69,918

주: 2025년 6월 말 기준
자료: 중소기업은행

❑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20~2025년 6월 말 동안 57개 공공부문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7,363억원을 예탁받아 1조 2,921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11,542개사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2025년 6월까지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57개에 이르는 공공부문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맺고 있음

[중소기업은행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억원, 개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예탁금(협약액)	13,060	11,952	11,125	10,403	9,288	7,363
대출 한도	18,925	20,061	18,574	18,336	16,746	12,921
대출 건수	6,146	9,384	10,001	11,913	11,846	11,542
대출 잔액	15,648	19,059	17,415	18,362	16,658	15,208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동일업체를 다수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로 활용하여 지원업체 중복 문제 발생

❑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편의적으로 일부 동일업체를 협약을 맺고 있는 다수의 공공부문(공공기관 등)에 중복적으로 추천 및 선정하여, 금리혜택을 일부 업체에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이 2020~2024년 동안 동일업체를 다수의 공공부문에 중복적으로 추천 및 선정한 수는 419~686개에 이름

- 협약은행이 동일업체를 2개의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로 선정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3개 이상의 공공부문 지원업체로 선정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 특히, 2022년도에는 1개 업체가 총 6개 공공부문으로부터 동반성장협력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 특혜 제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중소기업은행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사, %)

연도	공공부문의 동일업체 중복지원 수						전체 지원업체 수(b)	비중 (a/b)
	2	3	4	5	6	소계(a)		
2020	369	46	3	1	0	419	5,113	8.2
2021	546	77	9	2	0	634	7,986	7.9
2022	592	77	13	3	1	686	8,412	8.2
2023	582	68	6	2	0	658	10,098	6.5
2024	485	66	14	1	0	566	10,080	5.6

자료: 중소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를 직접 추천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업체 유형만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제시함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이 자행 대출업체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구조에서 기인함

-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업무협약서에 지원대상업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추천업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녹색금융, ESG 경영업체,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등을 유형으로 지정함
- 중소기업은행은 동 유형에 적합한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행 대출을 받고 있거나 특정 지원유형에서 자산건전성과 담보력이 우수한 기업들을 중복하여 협약 공공기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기인함
- 즉, 중소기업은행이 협약기관인 공공기관 등과 맺은 협약서 상의 대출한도를 용이하게 채우기 위해 타 공공기관의 지원업체를 활용한 결과임
- 참고로,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업체가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동일업체 중복선정 및 지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동일업체를 여러 번 활용할 소지가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함에 기인함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의 협약은행 중 중소기업은행이 예탁금 기준으로 2020년에는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73.3%의 비중을 차지함
-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 협약은행인 예금보험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에서 대구·경북 지역 업체 중복지원 현상이 발생한 바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의 사례에서도 동일업체 중복현상이 발생함

[협약은행별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중소기업은행(a)	783,500	855,020	903,500	652,000	578,276	386,261
농협	0	0	0	8,000	8,000	0
하나은행	34,000	39,000	181,220	29,000	26,000	25,000
우리은행	0	0	0	49,193	0	0
신한은행	11,000	11,000	11,000	1,000	2,000	2,000
부산은행	15,000	15,000	15,000	0	0	10,000
대구은행	10,000	15,000	12,000	22,000	20,000	10,000
광주은행	0	0	0	0	0	4,000
산업은행	0	0	0	90,000	90,000	90,000
합계(b)	853,500	935,020	1,122,720	851,193	724,276	527,261
중소기업은행 비중(a/b)	91.8	91.4	80.5	76.6	79.8	73.3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중소기업은행의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사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중복 선정 및 지원 사례

○ 중소기업은행이 협약에 따라 각각의 발전사별로 선정한 지원업체 중 2개 이상의 발전자회사 간 중복되는 지원업체 비중이 2020년 9.2%에서 2024년에는 16.1%로 확대됨

- 한국남동발전의 지원업체 중 타 발전사와 중복하여 지원하는 업체 수는 2020년에는 전체 지원업체 40개 중 8개, 2024년에는 전체 64개 지원업체 중 16개(25.0%)로 2배 증가함
- 지원업체 중 2개 이상 발전자회사 중복지원업체 비중은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20년 14.5%→2024년 15.6%,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2020년 13.3%→2024년 16.4%로 확대

[중소기업은행과 협약 중인 5개 발전자회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업체 중 타 발전자회사 중복현황]

(단위: 개)

기관명	중복업체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남동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8	10	11	12	16
	지원업체	50	46	57	61	64
	비중	16.0%	21.7%	19.3%	19.7%	25.0%
한국남부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0	0	0	0	2
	지원업체	0	0	0	0	4
	비중	-	-	-	-	50%
한국동서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6	8	7	7	9
	지원업체	45	46	52	56	55
	비중	13.3%	17.4%	13.5%	12.5%	16.4%
한국서부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10	11	11	12	15
	지원업체	202	174	162	131	126
	비중	5.0%	6.3%	6.8%	9.2%	11.9%
한국중부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9	9	10	11	12
	지원업체	62	73	72	78	77
	비중	14.5%	12.3%	13.9%	14.1%	15.6%
합계	타 기관 중복업체	33	38	39	42	52
	지원업체	359	339	343	326	322
	비중	9.2%	11.2%	11.4%	12.9%	16.1%

자료: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3개 이상의 발전자회사로부터 금리인하 지원을 받은 업체의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중 동반성장협력대출 금리인하 지원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코X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대출금 15억원에 대해 적용금리에서 1.55~2%의 금리를 인하받았으며, 동 대출금은 전체 기업은행 2024년 말 대출금의 50%에 해당함
- 성XXX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대출금 9.41억원에 대해 적용금리에서 1.55~2%의 금리를 인하받았으며, 동 대출금은 전체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의 59.5%를 차지함

[2024년 3개 이상 발전자회사의 동일업체 지원액 및 중소기업은행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업체명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합계 (a)	중소기업은행 대출(b)	비중 (a/b)
코X	500	500	-	500	500	2,000	3,000	66.7
성XXX	90	-	400	-	451	941	1,583	59.5

자료: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신규업체 선정 소요 시간과 대출업체 부실 리스크를 줄이고자 자산건전성과 담보력이 우수하고,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인 업체를 반복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금리지원 혜택을 받게 하여 한정된 재원이 일부 기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중소기업은행과 각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약서에는 지원업체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이 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원업체를 발전사별로 각각 활용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향후 협약 과정에서 중복 선정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일부 중복 선정 사례

○ 협약은행이 중소기업은행으로 동일한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지원업체를 비교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를 기준으로 총 98개 업체가 예금보험공사 지원업체와 중복된 것으로 분석됨

-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하여 우술 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창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전국에 분포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공사추천업체 1개, 대구·경북 지역 우수기술력 기업 48개, 일자리창출기업 46개, 코로나19 피해기업 3개 등 총 98개 업체가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중복적으로 금리지원을 받음

-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지원업체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중소기업은행이 협약은행인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중복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공사추천업체	대구경북			합계
		우수기술력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업체 수	1	48	46	3	98
대출잔액	500	10,176	6,664	700	18,040

주: 2024년 말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중소기업은행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중복 선정 및 지원사례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가스공사와의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서 일부 업체에 중복적으로 선정하여 금리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두 기관이 지원하는 협력업체는 2020~2024년 동안 21~37개이고, 이 가운데 2024년에 중복지원 업체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중복자원업체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업체 수	21	32	27	21	37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동일 업체 중복지원이 발생한 원인도 두 기관이 동일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유형 중 하나인 대구·경북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각 공공기관에 중복하여 추천 및 선정함에 기인함

◦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자사가 지원하는 업체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협약은행으로서 역할 미흡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동반성장대출 장기간 동일업체 반복지원 문제

◦ 중소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반성장대출 지원업체에 장기간 금리지원함에 따라 잠재적 수혜업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업무협약서에서는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협약 연장 시 총 대출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하는 규정을 둠

[한국자산관리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연도	협약은행	예탁금	예탁이율	은행 대출한도	지원대상 기업수	대출잔액	자동감면 금리
2021	중소기업은행	10,000	12개월 KORIBOR 금리 -연0.2%p	10,000	53	9,559	0.5
2022		10,000		10,000	62	9,943	0.5
2023		10,000		10,000	108	9,986	0.5
2024		10,000		10,000	98	9,665	0.5

주: 자동감면 금리는 은행이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특례지원하는 금리이며,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 추가감면 가능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협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최장 2년간 지원업체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를 발굴하기보다는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인 동일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금리지원 혜택을 받게 함

  : 중소기업은행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에 금리를 지원한 53개 업체 중 2022년과 2023년에도 연속지원한 업체는 36개 기관에 이름

-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신규업체 선정에 따른 각종 위험과 시간

소요 등을 최소화하고 자산건전성 및 담보력이 우수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은 잠재적 수요자가 배제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 과정에서 중복 선정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약은행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지만, 동일업체를 다수의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 협약은행으로서 역할이 미흡함

(2)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에 대한 금리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필요

❑ 중소기업은행은 협약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탁고를 확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여 확보한 이자수익 혜택을 동반성장협력대출업체에 공유함으로써 동 사업이 지향하는 상생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의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의 협약은행별 예탁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 협약은행의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6월 말에는 73.3%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협약은행 중 가장 많은 예탁금을 보유 중임

[협약은행별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중소기업은행(a)	783,500	855,020	903,500	652,000	578,276	386,261
농협	0	0	0	8,000	8,000	0
하나은행	34,000	39,000	181,220	29,000	26,000	25,000
우리은행	0	0	0	49,193	0	0
신한은행	11,000	11,000	11,000	1,000	2,000	2,000
부산은행	15,000	15,000	15,000	0	0	10,000
대구은행	10,000	15,000	12,000	22,000	20,000	10,000
광주은행	0	0	0	0	0	4,000
산업은행	0	0	0	90,000	90,000	90,000
합계(b)	853,500	935,020	1,122,720	851,193	724,276	527,261
중소기업은행 비중(a/b)	91.8	91.4	80.5	76.6	79.8	73.3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 포함한 지원업체 대부분은 자산건전성이 '정상'인 중소기업임

-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2,266개 지원업체 중 고정 이하 대출으로 분류된 곳은 14개사(0.86%)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0.39% 수준

[2025년 6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행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개사, %, 백만원)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자주 수	2,252	2	1	11	2,266
(비중)	99.14	0.12	0.06	0.68	100.00
대출	594,345	500	100	1,519	596,464
(비중)	99.61	0.09	0.02	0.28	100.0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정상 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구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협약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탁고를 확보하고, 자산건전성이 우수하고 담보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순이자마진을 취한 것으로 추정됨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협약 공공기관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포기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경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에 따라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협약 공공기관이 포기한 이자수익만큼을 금리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적용금리와 예탁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게 됨
- 중소기업은행은 2021~2024년 동안 최대 523억원의 이자수익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됨

※ (기초 + 기말 동반성장협력대출 잔액)/2를 평균잔액으로 가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 중소기업은행 순이자마진[2]을 곱하여 산출함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수탁에 따른 이자추정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중소기업은행 이자수익 혜택 추정액 (a=b×c))		12,371	15,651	13,922	10,396	52,339
	평균잔액(b)	819,260	879,260	777,750	615,138	
	순이자마진(NIM)(c)	1.51	1.78	1.79	1.69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순이자마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NIM(Net Interest Margin)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평균 운용자산 × 100%

○ 중소기업은행은 순이자마진 범위 내에서 협약 공공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지원금리에 추가하여 감면금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상생효과를 극대화하는 협약은행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우, 협약은행인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기술(주)의 ① 협약액의 두 배를 대출한도로 설정하고, ② 한국전력기술(주)의 지원금리에 더해 은행 자체적으로 추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지원업체의 금리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협약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한국전력기술(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은행과의 주요 협약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전력기술(주) 협약액		1,000	1,000	1,000	1,000	2,000
대출한도		2,000	2,000	2,000	2,000	4,000
지원업체 지원금리(a+b)		1.0%	1.64%	4.50%	4.30%	3.52%
	한국전력기술(주) 지원금리(a)	0.5%	0.82%	2.25%	2.15%	1.76%
	신한은행 추가 지원금리(b)	0.5%	0.82%	2.25%	2.15%	1.76%

자료: 한국전력기술(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문제

가. 현 황

❑ 과징금·과태료는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은 공공기관의 법령 준수 수준 및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볼 수 있음

- ◦ 과징금은 법령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기간, 위반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과 달리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질서위반의 효과로 부과됨

❑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소기업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141억 7,700만원으로 총 23건의 위반 사항 발생

- ◦ 과징금은 총 5건 법령 위반에 대해 1,069억 3,504만원 부과
- ◦ 과태료는 총 18건 법령 위반에 대해 72억 4,146만원 부과

[중소기업은행 과징금 · 과태료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과징금	104,989	0	1,901	46	0	106,936
(건수)	2	0	2	1	0	5
과태료	120	18	5,123	667	1,313	7,241
(건수)	1	1	8	6	2	18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에 부과된 과징금(1,069억원)의 98%에 해당하는 1,050억원은 2020년 미국연방검찰과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이며, 이후로 지속적인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됨

- ○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에 따라 미국 자금세탁방지법(31 U.S. Code §5318) 및 뉴욕주 은행법(NYBL 200-C) 위반으로 미국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감독청에 3,500만 달러의 과징금 제재를 받음
- ○ 이후 2022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총 1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2023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약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지속적인 법령 위반 발생

[연도별 중소기업은행 과징금 부과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처분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과징금
2020.04.21.	자금세탁방지법 31 U.S. Code §5318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유지·운영 의무 위반	62,261
2020.04.21.	뉴욕주 은행법 NYBL 200-C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유지·운영 의무 위반	42,728
2022.03.23.	자본시장법 제119조 등	원자재 및 금리연계 등 4개 사모펀드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25
2022.08.03.	자본시장법 제119조 등	US 핀테크 글로벌 선순위채권 펀드 등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1,876
2023.11.30.	외국환거래법 제8조 등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46
합계			106,936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에 부과된 과태료(약 72억원)는 2022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47억 1,000만원 부과된 것이 가장 큰 규모이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2024년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라 함) 위반으로 13억 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처리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인도중앙은행, 캄보디아중앙은행, 중국 쑤저우외환관리국 등 해외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음

[연도별 중소기업은행 과태료 부과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처분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과태료
2020.04.27.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120
2021.02.03.	은행법 제52조의2 등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18
2022.02.16.	자본시장법 제420조 등	사모신탁 불완전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4,710
2022.03.03.	지배구조법 제43조 등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61
2022.06.09.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 위반	72
2022.06.14.	금융실명제법 제4조의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10
2022.06.20.	금융실명제법 제3조 제1항	실명확인 미실시, 대리권 확인서류 미징구 등 금융실명거래 위반	10
2022.09.09.	인도중앙은행-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시스템 기반의 주기적인 고객위험 평가 미실시	55
2022.11.25.	캄보디아중앙은행-회계기준 운영 관련 준수	설문조사 미제출	2
2022.12.21.	쑤저우외환관리국-해외담보 외환관리규정 제18조 등	대외보고 누락, 송금자료 확인 미흡	104

(단위: 백만원)

처분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과태료
2023.04.21.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등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237
2023.06.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50
2023.08.16.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 등	고객확인의무 위반	150
2023.10.07.	국가금융관리총국 톈진감독국- 은행업 실적평가 감독지침 등	경영평가지표 개선 미흡, 대출 취급 오류	90
2023.11.05.	은행법 제34조의2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90
2023.11.30.	지배구조법 제24조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0
2024.12.23.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313
2024.12.23.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1)]	1,000
합계			7,241

주: 1) 이의제기 신청 중인 건임
자료: 중소기업은행

❑ 과징금 등 제재금 부과로 인한 재무적 영향

○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중소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총 1,142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은 해당 연도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2020년 해외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1,050억원의 과징금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켰음

❑ 중소기업은행의 최근 5년간 1,142억원에 달하는 제재금과 23건의 법령 위반은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2020년 대규모 해외 제재 이후 국내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법령 준수 관리체계의 점검이 요구됨

○ 자금세탁방지법, 자본시장법, 은행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 법령에서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금융기관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령 준수 체계 구축이 필요

2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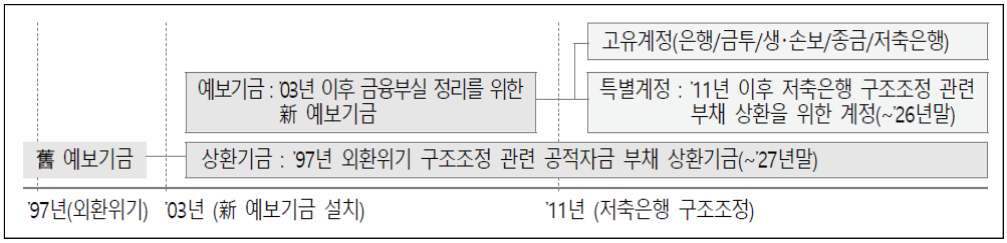
2-1.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현황 분석

가. 현 황

❑ 예금보험기금의 출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1996.6월 은행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제도 및 舊예금보험기금(현행 예금보험기금과 구분)이 도입된 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및 신협[1]의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기금이 통합되었음(1998. 4월)
- 이후 舊예보기금의 적자가 확대되자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예보채상환기금을 설치하여 舊예보기금의 자산, 부채를 포괄 이전하였고, 2003년 이후 발생하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업무를 위해 2003.1.1. 부터 예금보험기금(현행)을 재출범

[예금보험공사 관리 기금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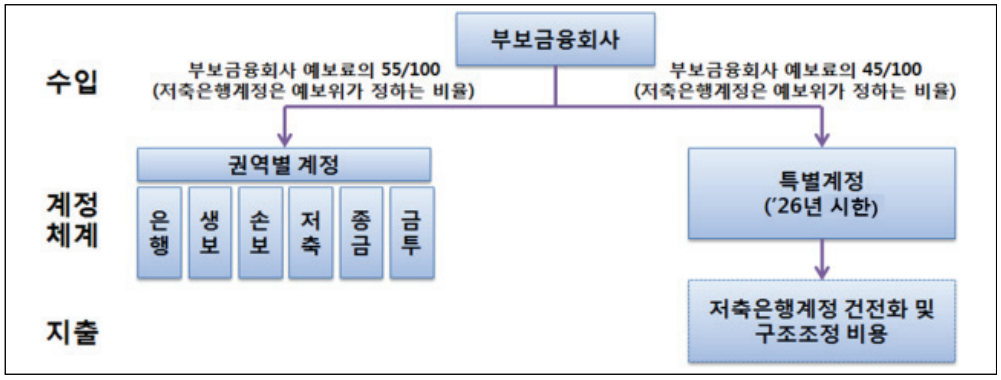
자료: 예금보험공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신협은 이후 '04. 1. 1.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에서 제외

❑ 현재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은 6개 업권별(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2] 각 업권별 부보금융회사[3]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2003년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함

[예보기금 운용 체계도]



2)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조달을 위해 예보기금 내 한시적(~'26년말)으로 설치한 계정으로, 각 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의 45%(저축은행은 100%), 지원자금 회수 등을 통해 부채 상환 중에 있음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2024년 12월 말 기준 부보금융회사는 총 283개이며, 부보예금의 규모는 총 3,098조원임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예금 현황]

(단위: 개사, 조원)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1)]	저축은행	합계
부보금융회사	52	106	22	23	-	80	283
부보예금	2,003	79	672	248	-	96	3,098

주: 1) 2024. 8월 유일하게 남은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됨에 따라 적립금만 1년간 유지(예보법§31④)
1. 2024. 12월말 기준

❑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기금의 계정별로 필요적립규모(목표규모[4])를 설정하고 기금적립액이 목표 규모 도달 시 예보료를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를 2009년 6월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계정별로 상·하한 밴드 형태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기금적립 수준에 따라 목표 하한 초과시 예보료를 감액하고, 상향 초과시 면제함

- 각 업권별 고유계정에 대해서 목표규모를 정하되, 종금계정은 2009년 목표규모 설정 당시 부보금융회사 수가 2개에 불과하여 설정을 유보함
- 2024년 12월 말 기준, 목표적립액(하한)을 초과하여 적립한 예보기금 계정은 생보가 유일하여 현재 예보료 감액이 적용되고 있음

[계정별 목표 규모 및 적립액]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합계
現 목표적립률(2011년~)	0.825~1.100	0.825~1.100	0.660~0.935	0.825~1.100	1.650~1.925	-
현행 목표적립액(하한)[1)]	165,274	6,482	44,342	20,495	15,846	252,439
현행 목표적립액(상한)[1)]	220,366	8,642	62,818	27,326	18,487	337,639
기금적립액[2)]	142,444	5,395	61,377	17,029	△18,979	207,266

주: 1) 각 업권별 부보예금에 목표적립률 하한(상한)을 적용하여 산정
2) 각 업권별 계정의 자본총계
1. 2024. 12월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4) 향후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금융안정 비용

❑ 예보기금 계정 중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5개 업권별 계정은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 중인 반면, 저축은행 업권별 계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은 각각 1.9조원, 4.3조원의 손실이 누적된 상황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기금 적립액]

(단위: 조원)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14.2	0.5	6.1	1.7	0.05	△1.9	△4.3

주: 2024.12월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주요쟁점

❑ 부보금융회사의 2024년 예보료 납부액은 총 2조 4,935억원이며, 이 중 특별계정으로 전입된 규모가 1조 4,575억원으로 가장 큼

- ○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예금등 잔액의 일정 비율[5]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함
-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서는 각 업권별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규정하였으며, 한도 내에서 업권별로 예보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업권별 표준료율은 아래와 같음

[예금보험료 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각 업권별 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합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표준료율	0.08	0.15	0.15	0.15	0.15	0.40	-	
2024년 예보료	7,630	390	819	1,275	29	217	14,575	24,935

주: 2024.12월말 기준

5)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

❑ 2024년 12월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계정과 달리 저축은행 및 특별계정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임

◦ 저축은행 계정 및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의 경우 누적된 결손으로 인해 자본총계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상황임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산총계	142,525	5,400	61,378	22,006	466	1,898	14,623
부채총계	81.2	4.7	0.67	4,977	-	20,877	57,418
자본총계	142,444	5,395	61,377	17,029	466	△18,979	△42,795

주: 2024년 12월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연도별 보험료 납부액은 2011년 1조 2,231억원에서 2024년 2조 4,935억원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예보기금의 은행·금투·생보·손보·종금 등 5개 계정은 예금보험료의 55%를 적립 중이며, 특별계정은 2011.4.1부터 각 업권의 예금보험료 중 45%(저축은행계정 100%)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 중임

◦ 이에 따라 저축은행특별계정으로 전입되는 보험료 규모가 2011년 1,742억원에서 2024년에는 1조 4,5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2024년도 보험료 납부액 2조 4,935억원의 약 58.5%을 차지함

[예금보험기금 계정별·연도별 보험료 납부액]

(단위: 억원)

연도	각 업권별 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1]	합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2003~2010	40,168	2,372	26,177	5,864	233	10,600	-	85,414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2	1,742	12,231
2012	3,748	2	14	100	8	1,345	5,816	11,004
2013	3,948	0	221	488	8	253	6,672	11,590
2014	4,197	0	811	445	6	256	6,158	11,872
2015	4,369	0	1,280	710	4	64	7,120	13,547
2016	4,675	0	1,857	806	7	296	6,823	14,463
2017	5,005	0	2,349	883	9	286	8,242	16,774
2018	5,250	0	2,466	973	9	139	9,102	17,940
2019	5,342	39	2,426	1,018	10	248	9,360	18,443
2020	5,942	0	2,109	1,030	11	216	10,259	19,567
2021	6,641	165	914	1,093	14	253	11,267	20,347
2022	6,946	456	826	1,159	18	211	12,473	22,090
2023	7,239	428	885	1,194	25	273	13,739	23,784
2024	7,630	390	819	1,275	29	217	14,575	24,935
합계	115,894	4,135	45,488	17,738	408	16,988	123,350	324,002

주: 1) 2011.4.1부터 각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납부액 중 45%(저축은행계정 100%) 해당분을 특별계정 보험료 수입으로 함(예금자보호법§24조의4제2항제5호)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보기금은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2024년 말까지 부실금융기관에 31.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파산배당 등으로 16.0조원을 회수하였음

○ 예보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 수는 2003~2024년 간 총 48개사이며, 이 중 1개사(손보)를 제외하고 모두 저축은행이었음

○ 자금 지원 규모는 손보계정에서 226억원,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 5,275억원, 저축은행특별계정에서 27조 1,71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자금의 회수 규모는 손보계정 147억원, 저축은행 계정 1조 7,894억원, 저축은행특별계정 14조 1,647억원 규모임

[예보기금의 금융회사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개사, 억원)

구분	자금지원 금융회사 수	자금지원	지원자금 회수
손보	1	226	147
저축은행	16	45,275	17,894
특별계정	31	271,717	141,647
합계	48	317,218	159,688

주: 2003.1월~2024.12월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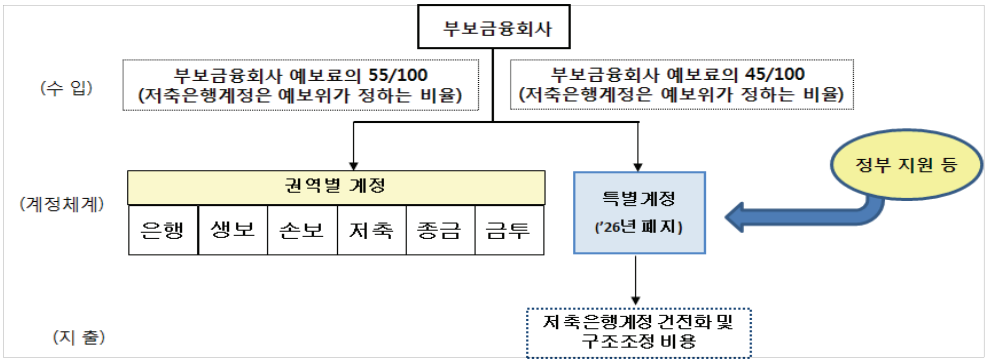
2-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손실 누적 및 특별계정의 종료 예정에 따른 대책 필요

가. 현 황

❑ 2011년 4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였음[1](「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2])

- 특별계정은 예보기금의 은행계정 등 타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며, 주요 재원은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중 일부[3], 예보기금채권 발행, 예금보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정부 출연금 등임

[저축은행 특별계정 구조]



자료: 예금보험공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예금자보호법」 부칙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부보회사의 경우 각 계정별 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고유계정과 특별계정으로의 납부비율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예금보험료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납부하고 있다.

❑ 특별계정은 지원규모 대비 회수 실적이 저조하여 2024년 말 기준 순자산 부족 상태로, 계정 종료시점까지 상환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별계정은 총 31개 부실저축은행에 27.2조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14.2조원(52.1%)을 회수하였음

- 2011~2012년에 12조원 이상씩 지원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부터는 지원규모가 거의 없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금 지원액은 27조 1,717억원임. 반면,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14조 1,647억원으로 지원자금 대비 회수 금액이 5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저축은행특별계정 지원 및 회수 실적]

(단위: 억원)

특별계정 지원실적		회수실적	
출자	3,655	출자금 회수	3,120
출연	229,873	파산배당금 수령	135,891
보험금지급	36,277	대출금 회수	1,210
대출	1,136	기타(가지급금 회수)	1,426
개산지급금	775		
지원자금(누적)	271,717	지원자금 회수(누적)	141,647

자료: 예금보험공사

◦ 특별계정은 2024.12월말 기준 순자산 부족 상태(△4.3조원)에 있음

- 특별계정의 순자산은 2022년말 △6.7조원에서 2023년말 △5.5조원, 2024년말 △4.3조원으로 결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음

[특별계정 재무현황]

(단위: 조원)

자산			부채			순자산
구상채권	미수보험료 등	소계	외부차입	계정간차입[1] 등	소계	
0.5	0.9	1.4	3.6	2.1	5.7	△4.3

주: 1) 계정간차입 이자는 10년간 면제('11.4~'21.3), 이후 '26년까지 납부 유예('11년 예보위)
1. 2024.12월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 한편, 예보기금의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특별계정이 종료되는 2026년말까지 특별계정의 상환부족액 규모는 1.8조원으로 추정됨

나. 주요 쟁점

❑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계정으로, 특별계정의 설치 기한인 2026년 말까지의 특별계정 자금 수지 및 이와 관련하여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금액 등을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4월, 예보기금 내 특별계정 신설 당시 2026년까지 해당 계정에서 15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이자비용 6.6조원을 합한 21.6조원의 상환을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타 계정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이전 등을 법률화[4]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까지 16.9조원의 보험료 수입과 5.1조원의 지원회수를 가정하였으며, 2026년 말 해당 계정의 기말 자금은 0.4조원으로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였음

---

4)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즉,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고유계정과 특별계정으로의 납부비율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예금보험료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납부하고 있다.

[2011년 설치 시 2026년까지의 특별계정 자금 수지 추정액]

(단위: 조원)

구분		금액	추정 근거
수입	보험료 수입	16.9	· 2011~2015년 : 과거 연평균(2006~2010) 부보예금 증가율 적용 · 2016년~ : 공적자금재계산 방식 적용
	지원 회수액	5.1	회수율 : 34% 적용 (2013~2017년 동안 매년 1.02조원씩 회수 가정)
	합계(A)	22.0	-
지출	지원액	**15.0**	**15조원 지원 추정**
	이자비용	6.6	조달금리 5.0%
	합계(B)	**21.6**	-
기말자금 (A-B)		**0.4**	2026년 말 기말자금

자료: 예금보험공사

◦ 그런데 2011년 특별계정 설치 이후 2024년까지의 2011년 당시 자금수지 추정액과 실제 자금수지 발생액을 비교해 보면, 2011년 추정 시에는 2024년까지 19.2조원의 수입과 21.7조원의 지출을 예상하여 △2.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그러나 2024년까지 실제 수입액은 보험료수입과 지원 회수액을 합하여 26.5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은 총 32.2조원(지원액 27.2조원+이자비용 5.0조원)이 발생한 바, 이에 2024년까지의 특별계정 기말자금은 △5.7조원의 손실로, 2011년 추정치 대비 손실규모가 △3.2조원 확대되었음

- 이는 2019년까지 실제 지원액에 대한 회수액이 추정치에 비해 9.1조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금액이 27.2조원으로, 2011년 추정당시 예상했던 15조원에 비해 12.2조원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5)]

5) 이에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유효기간인 2026년 말까지 해당 계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1년 설치 시의 특별계정 자금수지 추정액 및 실적 비교(2011~2024)]

(단위: 조원)

구분		금액[1]			차이 발생 주요 원인
		설치 시 추정(a)	실적 (b)	차이 (b-a)	
수입	보험료 수입	14.1	12.3	△1.8	부보예금 증가율이 추정치를 하회함에 따라 예보료 수입 감소
	지원 회수액	5.1	14.2	9.1	적극적 회수노력 등에 따른 회수율 제고
	합계(A)	19.2	26.5	7.3	-
지출	지원액	15	27.2	12.2	저축은행 부실규모가 당초 예상 대비 늘어남에 따라 소요자금 증가
	이자비용	6.7	5.0	△1.7	금리 인하 등으로 추정치 대비 실제 조달금리 감소
	합계(B)	21.7	32.2	10.5	-
기말자금 (A-B)		△2.5[2]	△5.7	△3.2	-

주: 1) 2024년말 기준 누적 수입·지출
2) (당초 추정) 2024년말 기준 금액이며, 2026년말 기준 기말자금 +1조원으로 추정
자료: 예금보험공사

◦ 특별계정은 2024년 12월 말 기준 3조 4,600억원의 사채와 1조 8,791억원의 예금보험기금 내 은행계정 등 타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1,900억원의 재정융자 금액 등 총 5조 7,417억원의 부채를 보유한 반면, 2024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1조 4,623억원(9,069억원의 미수수익 및 5,256억원의 구상채권 등으로 구성)에 불과하여, 따라서 자본 총계(총자산-총부채)는 △4조 2,795억원의 결손을 보이고 있음

◦ 2026년까지 특별계정의 5조 7,417억원의 부채 상환은 구상채권 등으로부터의 회수 또는 보험료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설치 기한인 2026년까지의 보험료수입액과 지원자금 회수액 등 자금수지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통해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음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분회계 재무상태표(2024.12.)]

(단위: 억원)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자산총계 (A)	14,623	부채총계 (B)	57,417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7	사채(채권발행)	34,600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70	계정간 차입(예금보험기금 내)	18,791
단기미수수익	9,069	재정융자	1,900
장기구상채권[1]	5,256	미지급이자 등[2]	2,126
		자본총계 (A-B)	**△42,795**

주: 1) 장기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잔액임
2) 사채, 계정간차입 및 재정융자는 원금기준으로 관련 할인차금은 '미지급이자 등'에 포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 특별계정이 종료된 이후 2028년까지 지원자금을 회수하여도 지원금액의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회수가 어려운 금액에 대한 상환 및 처리 대책 마련 필요

○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2028년 회수금액을 4조원[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의 누적회수액 21.4조원에 4조원을 추가 회수한다고 하여도 총지원액 대비 1.8조원의 결손이 발생함

[2024~2028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2026년말 특별계정 상환부족액]

(단위: 조원)

총지원액(A)	회수규모(B=a+b)[1]		**예상 상환부족액(A-B) (결손 예상액)**
	2024년말 누적회수액(a)	향후 회수예상액(b)	
27.2	21.4	4.0[2]	**1.8**

주: 1) 누적회수액에는 특별 지원자금 회수 14.2조원 외에 예보료 수입(12.3조원) 포함 및 채권 이자비용(△5.1조원)이 반영되어 있음
2) 예보료 3.7조원, 지원자금 회수 0.5조원, 이자비용 등 0.2조원

6) ①예보료 수입(37,341억원), ②지원자금 회수(5,633억원), ③예특채 이자비용(2,455억원)으로 구성

[특별계정 보험료 및 지원자금 회수]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a)	지원자금 회수(b)	이자비용(c)	합계(a+b-c)[1]
2025	12,768	958	1,558	12,168
2026	14,087	908	897	14,098
2027	10,486[2]	732	-	11,218
2028~	-	3,034[3]	-	3,034
합계	37,341	5,633	2,455	40,519

주: 1)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공운법§39의2) 상 계획 금액
2) 은행: 2026.4분기 보험료를 2027.1월에 수납
타업권: 2026년 보험료를 2027.6월에 수납
3) 2028년 회수액 및 2028년말 구상채권 잔액 포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 특별계정은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 발행분 및 무이자 정부융자도 남아 있어 특별계정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예보기금 저축계정으로의 이전을 통해 상환이 지속될 예정임

○ 2025년 5월말 기준 예보기금특별계정 채권의 누적 발행금은 45조 1,500억원, 누적 상환금액은 42조 300억원으로, 잔액(누계)은 3조 1,200억원 규모(2025~2026년에 만기)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등 수입금액 및 단기사채 등 조달을 통해 만기상환 예정임

[예보기금 특별계정 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	상환금액	잔액(누계)
2011	12,000	-	12,000
2012	200,400	-	212,400
2013	20,900	-	233,300
2014	-	12,000	221,300
2015	56,400	98,800	178,900
2016	26,300	42,200	163,000

(단위: 억원)

구분	발행	상환금액	잔액(누계)
2017	37,300	72,900	127,400
2018	14,500	26,500	115,400
2019	11,400	26,300	100,500
2020	22,300	34,200	88,600
2021	11,500	24,700	75,400
2022	13,900	27,000	62,300
2023	11,700	25,500	48,500
2024	9,000	22,900	34,600
2025. 5월	3,900	7,300	31,200
합계(누적)	**451,500**	**420,300**	**31,200**

주: 2025.5월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 또한 특별계정은 3차(2012~2014)에 걸쳐 2,500억원의 무이자 정부융자를 받았으며[7], 2024년까지 600억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900억원을 2025~2029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다만, 특별계정이 2026년에 종료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의 부채를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하여 저축은행계정에서 2029년까지 정부융자보조금을 상환할 계획임[8]

7) [무이자 정부융자보조금 융자내역]

(단위: 억원)

차입일	융자기간	융자금
2012.7.6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000
2013.11.26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000
2014.10.2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500
합계		2,500

주: 2024년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8) 애초 저축은행계정 부채를 특별계정에서 발생시킨 후 다시 이전받는 성격이며, 他계정 이전시 저축은행계정의 부실을 전가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특별계정 종료시 잔여 자산·부채는 예보기금의 구분계리 원칙 등에 따라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

[특별계정의 무이자 정부융자보조금 상환내역 및 향후 상환 계획]

(단위: 억원)

만기년도	2023 (기상환)	2024 (기상환)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금액	200	400	500	500	500	300	100	2,500

주: 2024년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 또한 특별계정 설치 기한인 2026년 말 잔여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계정의 적자발생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 규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예금자보호법」 부칙〈법률 제10476호〉에 따르면, 2026년 특별계정 유효기간 경과 시 남는 자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는 정부 출연금 범위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잔여 자산은 상호저축은행 계정을 제외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상의 특별계정 잔여자산 처리 규정]

「예금자보호법」 부칙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는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연구원과 함께 2026년말 상환부족액과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원자금 회수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부채감축 지속(특별계정 파산배당 등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으로 상환) 및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임

○ 2024~2028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를 때 특별계정 계정이 종료된 2026년 이후 2028년까지 회수가 이루어져도 지원자금 전액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계정 종료시 이와 관련한 상환 및 처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이 출자한 지분증권에 대한 회수실적 저조

가. 현 황

❑ 예금보험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 1996년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이라 함) 설치 이후 IMF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구조조정업무 수행으로 기금의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수립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함)을 신설하였음

❑ 상환기금은 정부 출연, 특별기여금, 회수자금 등을 재원으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며,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보유주식 가치제고 및 매각, 특별기여금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2002년 말 당시 부채 97.2조원(예보 82.4+ 캠코 14.8)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25년 간) 상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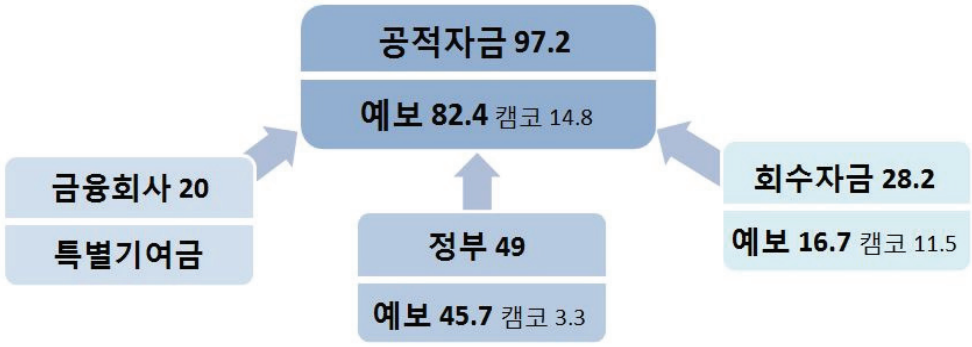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상환기금은 '02년 말 이전 예보기금의 자산, 부채를 포괄 이전받아 '27년 말까지 동 부채(82.4조원)를 상환하도록 하였으며[1] 상환기금의 채무 상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① 정부 출연금 45.7조원
- ②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20조원(부보예금의 0.1%를 25년간('03~'27년) 납부시 합계('02년 당시 추정))
- ③ 회수자금 16.7조원('02년 당시 추정)으로 부채 82.4조원을 상환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상환대책에 포함된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3.2월 청산

[공적자금 상환체계도(2003~2027)]



자료: 예금보험공사

○ 현재 상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 잔액 × 0.1%)[2]을 수납받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잔여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20.12)을 통해 잔여재산 일부를 매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한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보유주식 매각 추진 등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이행 중에 있음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요율 현황]

(단위: %)

구분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예금보험료(표준요율)	0.08	0.15	0.15	0.15	0.15	0.4
특별기여금	**0.1**	**0.1**	**0.1**	**0.1**	**0.1**	**0.1**

주: 1. 신협에 대해서는 '06~'17년까지 12년 간 특별기여금 수납('07년부터 0.1%에서 0.05%로 요율 인하)
자료: 예금보험공사

2)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03~2027년까지 25년간 한시적으로 수납하는 법정부담금

[특별기여금 수입 현황]

(단위: 억원)

2003~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90,236	19,748	21,772	23,750	24,928	25,744	306,178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2024회계연도 기준 상환기금이 보유한 자산은 1조 3,714억원이며 이 중 장기투자증권이 8,09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9%를 차지함

○ 예금보험공사는 장기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으로서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에 각각 지분증권 2,137억원[3], 1,361억원[4]을 보유하고 있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자산 현황]

계정과목		금액(억원)	주요 내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0	MMDA(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 7백만원)
단기 투자증권	지분증권	2,517	완전위탁펀드(MMF, 국공채 등)
	채무증권	768	수협 국채 (만기 1년 이내)
	소계	3,285	
장기 대여금	장기대여금	142,815	케이알앤씨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140,487)	
	소계	2,328	
장기 투자증권	**지분증권**	**3,498**	**한화생명(2,137억원) 서울보증보험(1,361억원)**
	채무증권	4,596	수협 국채 (만기 1년 초과)
	소계	8,094	
기타 비유동자산	선급금	7	공사사옥 임차보증금 등
	장기미수이자채권	11,028	케이알앤씨 장기대여금 미수이자 100% 대손 설정
	대손충당금	(11,028)	
	소계	7	
자산 총계		13,714	

주: 2024회계연도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3) 상장주식으로 2024년말 종가(주당 2,460원)으로 평가

4) 2024년 결산 당시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원가(주당 2,077원)로 평가(2025.3.14 주당 26,000원으로 상장)

○ 2024년도 상환기금 수입결산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에 우리금융지주 출자주식 잔여지분(1.24%)를 1,366억원에 매각완료 하였고, 수협중앙회 국채[5] 만기도래 금액 800억원을 회수하였음. 다만, 한화생명 및 서울보증보험의 보유주식은 각각 1,101억원, 7,230억원 규모의 매각을 계획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수입 결산액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음

[2024년도 상환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분	계획(A)	실적(B)	계획 대비(B-A)	
				증감율
① 여유자금회수(기초 보유자금)	17,116	23,008	5,892	34.4
② 자체수입	38,694	31,424	△7,270	△18.8
재고자산매각대(보유주식 매각)	10,332	2,166	△8,1651)	△79.0[1)]
우리금융지주	1,200	1,366	166	13.8
한화생명	**1,101**	**-**	**△1,101**	**△100.0**
서울보증보험	**7,230**	**-**	**△7,230**	**△100.0**
수협중앙회	800	800	-	0.0
정부출자수입(보유주식 배당금)	1,910	2,145	235	12.3
법정부담금(특별기여금)	25,441	25,745	303	1.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대출 이자수입, 운용수익 등)	1,011	1,369	358	35.4
합계	55,810	54,432	△1,378	△2.5

주: 1) 2024년 중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미매각에 따라 계획 대비 크게 감소
자료: 예금보험공사

5) 2022.9월 우선출자증권 잔여지분을 만기가액 7,574억원의 국채로 교환하여, 연도별(2023~2027년) 만기 도래시 현금으로 회수

나. 주요 쟁점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금융회사 주식의 예상 매각 수입이 지원 금액 대비 저조함

◦ 2023년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제4차 정기재계산 연구결과[6]에 따르면 상환기금은 110.9조원의 지원액 중 62.3조원을 회수하였고,[7] 당시 상환기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출자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3개 금융기관 주식의 향후 예상 회수액은 3.6~3.7조원으로 추정하였음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예상회수액 대비 실제회수액]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재계산시 회수예상액	2022년말 ~ 현재까지 실제 회수액		
		매각 (A)	FY22, FY23 배당 (B)	회수합계 (A+B)
우리금융지주	1,155	1,366[1)]	185	1,551
한화생명	2,245	0	130	130
서울보증보험	33,098	1,815[2)]	4,608[3)]	6,423
합계	**36,498**	3,181	4,923	**8,104**

주: 1) 2024.3.14 잔여지분 1.24% 매각완료
2) 2025.3.14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가 26,000원)을 통해 지분 10% 매각
3) 2025.4.30 예정인 FY24 배당 1,955억원은 미포함(한화생명은 FY24 배당 미실시)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4년 말 기준, 상환기금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지원 대비 회수율은 46.9%, 한화생명에 대한 회수율은 71.0%에 불과함

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는 기금설치 이후 매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실사 결과와 조치예정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 출자를 통한 50.8조원의 지원액 중 주식매각 등으로 32.1조원 회수
- 출연·예금대지급·자산매입 등을 통한 60.1조원의 지원액 중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30.2조원 회수

[상환기금의 주요 투자자산 현황 및 매각 추진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지분율	지원액 (A)	회수액 (B)	회수율 (B/A)	잔여회수액 (A-B)	향후 매각 계획
서울보증보험	93.85	102,500	48,091	**46.9**	**54,409**	2025년 상반기 상장 추진 중이며 이후 시장상황, 기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자위 논의를 거쳐 소수지분 및 경영권 지분매각 등을 결정할 예정
한화생명	10.00	35,500	25,201	**71.0**	**10,299**	회사 실적 및 주가추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자위 논의를 통해 매각 추진
수협	(국채)	11,581	5,607	**48.4**	**5,974**	2027년까지 국채 만기 도래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할 예정

주: 2024.12월말
자료: 예금보험공사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99.6월부터 '01.11월까지 유동성 지원 및 대우채 등 회사채 대지금 자금으로 총 10조 2,500억원을 지원(보통주 12,500억원, 우선주 90,000억원)하였고, 2024.12월말까지 유상감자, 상환우선주 상환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해 총 4조 8,091억원을 회수하였음

[서울보증보험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원	회수		
보통주	12,500	유상감자('06.3)		665
우선주	90,000	유상감자('06.3)		4,791
		우선주 상환	('08.7)	3,980
			('09.7)	1,876
			('10.7)	2,525
			('11.7)	3,414
			소계	13,172
배당	-	FY'06 배당('07.7)		3,522
		FY'11 배당('12.7)		1,648
		FY'12 배당('13.7)		1,472
		FY'13 배당('14.4)		803
		FY'14 배당('15.4)		3,374
		FY'15 중간배당('15.8)		1,397
		FY'15 정기배당('16.4)		2,551
		FY'16 정기배당('17.4)		3,210
		FY'17 정기배당('18.4)		2,159
		FY'18 정기배당('19.4)		1,455
		FY'19 정기배당('20.4)		1,504
		FY'20 정기배당('21.4)		987
		FY'22 정기배당('22.4)		2,150
		FY'22 정기배당('23.4)		2,653
		FY'23 정기배당('24.4)		1,955
		소계		30,840
합계	**102,500**			**48,091**

주: 2024년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시점(2027년말) 등을 고려하여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2024.3월)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IPO(1단계)를 추진하여 2025.3.14. 상장하였음
-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83.85%(58,546,746주)를 보유중으로, 매각을 통한 예상 회수금액은 주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25.3.20 주가(34,600원) 기준 보유주식 평가금액은 2조 257억원 수준임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 수정(안)(2024.3월)]

방식	상장공모(IPO)를 통한 소수지분 매각	소수지분 추가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예상 시기*	2025년 상반기 이내	상장 완료 이후 ~ 상환기금 청산시점(2027년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0% 이상 (시장상황 및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최대 33.85% (단,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0% + 1주 이상

자료: 예금보험공사

- 한화생명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99.10월부터 '01.9월까지 부실금융기관인 대한생명(現 한화생명)에 3조 5,500억원을 지원하고 보통주 지분 100% 취득하였으며, 2024.12월말까지 경영권 지분 매각, 상장시 구주매출, 블록세일 등으로 총 2조 5,201억원을 회수하였음

[한화생명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지원	회수		
출자	지분 매각	한화컨소시엄 매각 ('02.12월)	8,236
		콜옵션 행사 ('08.9월)	2,584
		상장공모시 구주매출 ('10.3월)	1,586
		1차 블록세일 ('15. 3월)	1,334
		2차 블록세일 ('15.10월)	5,203
		3차 블록세일 ('17. 8월)	1,739
		4차 블록세일 ('17.11월)	1,591
		소계	22,273
	배당금		2,928
35,500			25,201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한화생명의 매각여건 ·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낮은 주가수준을 고려하여 매각 추진을 보류하였음. 공사는 상환기금 청산시점('27년말)까지 잔여지분(10%)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상 회수금액은 주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25.3.20 주가(2,675원) 기준 보유주식 평가금액은 2,323억원 수준임

◦ 상환기금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3개 금융기관 주식의 회수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추정한 예상 회수액인 3.6~3.7조원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말 기준 서울보증보험과 한화생명에 대한 잔여회수액은 각각 5조 4,409억원, 1조 299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상장 이후 보유주식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서울보증, 한화생명의 보유주식 평가액(2025년 3월 기준) 전액을 회수한다고 하더라고 2.7조원 규모로 잔여 회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회수액 또한 감소할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시점('27년말) 이내 최대 33.85%의 서울보증보험 지분 추가 매각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최대한 손실을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법률 규정상 2027년까지 운용 후 청산이 예정되어 있는바, 청산 전까지 출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을 확대하고 적정 시점에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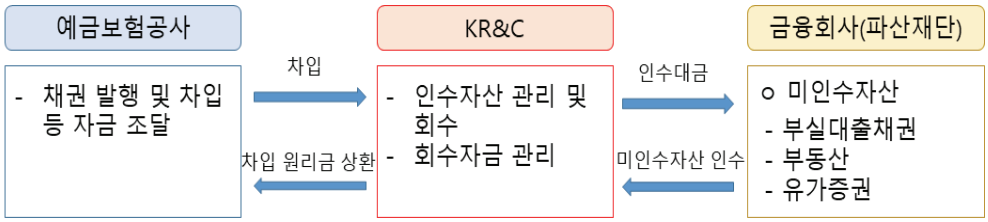
2-4. 정리금융회사 KR&C의 부실자산 정리 노력 강화 필요

가. 현 황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시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이를 정리금융회사인 KR&C[1]가 인수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태로 KR&C에 지원하고 있음

○ KR&C(구RFC)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상환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상환기금 부실자산 정리업무를 수행함. 예보기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정리업무도 수행하며, 동 정리자금은 예보기금으로부터 대여 받고 있음

[KR&C 업무 구조]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정리금융회사 설립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36조의7[2]에 따르면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①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만료, 정리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리금융회사의 인수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정리금융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KR&C는 당초 1999년 말 설립 이후 수차례 영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왔고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영업기간이 연장된 상태임

[케이알앤씨 연혁]

ㅇ1999.12.27 : 정리금융공사(RFC) 설립(예금자보호법)
ㅇ2002.12.26 : 영업기간 1년 연장(3년 + 1년 연장)
ㅇ2003.12.26 : 예금자보호법 개정, '3년+1년 연장' → '5년 + 연장가능'
ㅇ2004.12월, 2007.12월 : 영업기간 각 3년 연장
ㅇ2009.11.11 : 정리금융공사, 페이퍼컴퍼니인 KR&C로 변경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차, 2008.8월)」)
ㅇ2010.12월, 2013.12월, 2016.12월, '19.12월 : 영업기간 각 3년 연장
ㅇ2022.12.20 : 영업기간 3년 연장 (2025.12.26 까지)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4년 말 기준 KR&C의 상환기금에 대한 차입금 규모는 14조 2,815억원임

[KR&C의 상환기금 구분계리 재무제표]

(단위: 억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현금및예치금	1,503	**차입금**	**142,815**
인수매도가능증권	435	기타부채	45,604
인수대출채권	60	부채	188,419
유형자산	606	자본금	0.5
기타자산	150	자본잉여금	301.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6
		결손금	△186,253
		자본	△185,665
자산	2,754	부채 및 자본 계	2,754

주: 2024년 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상환기금은 KR&C에 대한 대출금 대비 KR&C의 회수가능액이 적어 대출원금 중 회수예상액을 제외한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고, 현재는 이자금액 중 일부만을 매년 회수 중임

[KR&C의 상환기금 및 예보기금 상환(원금+이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상환기금		예보기금	
	차입규모 (연말 원금 잔액 기준)	상환규모 (연간 상환액 기준)	차입규모 (연말 원금 잔액 기준)	상환규모 (연간 상환액 기준)
2009	164,274	173,156[1)]	2,235	1,913[1)]
2010	155,248	9,025	1,827	1,393
2011	152,362	5,528	1,746	710
2012	145,107	9,823	1,296	1,053
2013	142,815	5,837	1,209	166
2014	142,815	1,321	1,211	35
2015	142,815	1,831	1,012	231
2016	142,815	600	924	107
2017	142,815	760	844	95
2018	142,815	1,035	780	78
2019	142,815	330	628	168
2020	142,815	414	628	11
2021	142,815	476	628	6
2022	142,815	396	628	5
2023	142,815	364	443	202
2024	142,815	484	110	348

주: 1) 1999~2009년 누적 상환액
자료: 예금보험공사

○ KR&C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에는 상환기금 차입금(2024년말 14.3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발생(4,945억원)으로 4,78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KR&C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289	5,222	△3,469	△2,351	△1,490	△2,112	△1,098	△1,96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189	△2,124	△1,559	△1,378	△2,116	△5,797	△5,183	△4,785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분석의견

❑ 상환기금의 자회사인 KR&C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상환기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

- ○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상환기금의 KR&C에 대한 대여금(케이알앤씨 차입금)은 부실금융회사의 예금대지급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당초부터 전액 상환은 불가능한 성격이었던 바, 상환기금 청산시 미회수 KR&C 대여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3)]
- ○ 2023년 정기재계산시 파산채권 등 회수 추정액 규모는 4,936억원이었는데, 이는 2022년 말 기준 KR&C 보유자산(대출채권 등) 회수예상액이었음[4)]

[2023년 정기재계산시 KR&C 추가 회수예상액]

(단위: 조원)

구분	지원	기회수(A)	추가회수예상(B)
2023년 재계산시(2022년말)	33.8	19.5[1)]	0.5[2)]

주: 1) 이자회수액 1.6조원 포함시 21.1조원
2) 회수시 전액 이자상환 회계처리
자료: 예금보험공사

3) 상환기금은 회수가능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쌓고 있음

4) KR&C 보유자산(대출채권, 비상장주식, 유형자산 등)으로부터의 회수예상액을 평가(→회계결산상 장부가액에 대해 회계법인이 별도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결산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회수예상액 결과와 차이가 있음

◦ 이후 상환기금의 2024년도 회계결산시에는 KR&C로부터의 회수예상액을 2,328억원(2024년말)[5]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 2027년 상환기금 청산 시 미회수된 잔여재산은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보기금으로 그 귀속이 결정되는바, KR&C의 정리자산 회수 노력을 강화하여 상환기금의 회수 실적을 제고할 필요

◦ 현재까지 상환기금이 KR&C로부터 회수한 대여금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원금 1조 2,434억원, 이자는 1조 6,765억원임. 또한 KR&C는 2014년부터는 원금에 대하여는 상환하지 않고, 이자의 일부만을 상환하고 있는데 연간 이자 상환 규모도 크게 감소한 상황임

[상환기금의 KR&C 대여금 회수액(2011~2024)]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원금	2,886	7,256	2,292	-	-	-	-	-
이자	2,642	2,567	3,545	1,321	1,831	600	760	1,035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원금	-	-	-	-	-	-	12,434	
이자	330	414	476	396	364	484	16,765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4년 말 기준 상환기금의 KR&C에 대한 장기대여금 14조 2,815억원은 미수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대출원금이며, 이 중 KR&C로부터의 회수예상액(2024년말 2,328억원)을 추정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미수이자는 1조 1,028억원으로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음[6]

5) 회수예상액은 KR&C 재무제표를 근거로 '총자산 - 상환기금 외 타법인귀속채권'으로 산정

6) 2011년부터 외감법인 의견에 따라 누적 미수이자(1.1조원,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2011년 이후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회수예상액은 대여금 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시 반영하고 있음

[상환기금의 KR&C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금액	비고
장기대여금 (대출원금)	142,815	2,328 (회수예상액)
		140,487 (대손충당금)
미수이자	11,028	11,028 (대손충당금)

주: 2024년 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2027년말 상환기금의 청산전까지 매년 KR&C 보유자산 환가를 통해 회수하고, 2027년말까지 미환가된 KR&C 현물자산(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환기금 청산시 잔여자산 처리방안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인바, 청산 전까지 KR&C의 정리자산 회수 노력을 강화하여 상환기금의 회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는 상환기금 청산시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기금 중 그 귀속 주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환기금 청산시 KR&C에 대한 대여금 등 잔여자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처리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2002. 12. 26.〉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 ·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2-5. 해외 프놈펜 사무소의 현지 자산 회수 장기화 문제

가. 현 황

❑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파산재단)이 보유한 캄보디아 자산의 관리 및 회수 강화를 위해 2017.3.9자로 캄보디아 프놈펜[1]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2]

○ 프놈펜 사무소는 자산매각 및 잠재투자자 발굴 등 회수 추진, 소송 대응 등 자산 관리, 현지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한 회수 장애요인 해소 및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예보제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프놈펜 사무소의 인력은 사무소장 포함 등 총 5명이며[3]. 관리 자산은 2025.3월 기준 캄코시티, 담보부동산 등 15개임[4]

[프놈펜 사무소 연도별 인력(공사 직원) 현황]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	5	4	4	4	4	4	4	4

주: 연말 기준, 2025년은 3월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해외자산이 가장 많은 캄보디아(프놈펜)에 사무소 설치(전체 해외관리자산의 77% 수준)

2)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은 국내외 SPC를 통해 캄보디아에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사업 중단
- 현지 공동사업자*의 비협조, 법규 및 제도 차이, 비대면 업무 및 격지 관리 등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관리 및 회수에 애로
* 캄보디아는 (토지소유 목적의) 현지법인 설립시 현지인이 지분 51% 이상 보유 필요

3) 공사 직원 4명, 현지채용 직원 1명(통·번역 사무보조)

4) 사무소 설치('17.3월) 당시 20개에서 5개 회수 완료

[프놈펜 사무소 관리자산 개요 및 현황]

(단위: 억원)

자산명	대출등[1]	평가액	내용
캄코시티	2,369 (대출·투자)	-	• (개요) 국내외 시행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프놈펜 북서쪽에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 (현황) 현지 시행사에 대한 경영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한·캄 정보공유 TF」 운영 및 (캄)국토부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회수 노력
토마토저축은행 담보부동산(11개) ·동닙부지 ·노스브릿지부지 ·TBS부지 ·메콩강부지 ·선착장부지(2개) ·대로변부지(2개) ·스텅강부지(2개) ·시엠립호텔부지	520 (대출)	542 (감정평가)	• (개요) 현지법인 3사를 통해 프놈펜(3개), 깐달(7개), 시엠립(1개) 등 총 11개 부동산에 투자 • (현황) 저당권 실행을 위한 대여금소송 및 가압류수표 환수를 위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PGCT[2] 임대사업	114 (대출·투자)	60 (매매계약)	• (개요) 프놈펜-경상북도간 문화교류를 위해 건물을 완공하고 30년간 임대사업 추진 • (현황) 현지법인 소수지분 인수를 통한 세무이슈 해결 후 매매계약 종결 등 추진
(인도네시아) 발리리조트	200 (투자)	117 (감정평가)	• (개요) 발리리조트 운영사업 관련 펀드 투자 • (현황) 운용사의 현지 저당권 절차 지연에 따라 운용사에 신속 진행 촉구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시엠립 신공항부지	11 (미정산)	11 (미정산)	• (개요) 시엠립 신공항 건설 추진→(캄)정부에 부지 매각完 • (현황) 현지법인 청산절차 진행 중
합계	3,214	730	

주: 1) 대출채권 또는 투자액 원금기준

2) 프놈펜-경상북도 문화통상교류관(Phnom Penh-Gyeongbuk Culture Tourism & Trade Promotion Center)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주요 쟁점

❑ 예금보험공사의 프놈펜 사무소 존속 기한은 당초 2017년 설치 당시 계획이었던 2022년 대비 5년 이상 연장된 상황

◦ 2016년 예금보험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외사무소 설치안에 따르면 “프놈펜 사무소의 존속기간은 현지 시장상황, 관리자산 상태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가급적 5년 내에 신속히 자산 매각을 추진하여 운영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설치 2년 후 사무소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 할 예정에 있었음

◦ 이에 설치 2년 후인 2019년 검토 결과, 당초 결정과 같이 최소 3년간은 잔존하여 최소존속기간(5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설치 5년이 경과한 2022.3월, 예금보험공사 이사회는 자산 회수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프놈펜 사무소의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로 5년 연장하며, 운영실적을 매년 이사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음

❑ 프놈펜 사무소의 관리자산 15개의 평가액 대비 회수 실적이 저조하며,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캄코시티의 경우 아직 평가액 규모조차 산정되지 않아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프놈펜 사무소는 설치 이후 캄보디아 정부에 신공항부지 매각('17.6월), 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한 고속도로 부지 계약금 반환('18.6월) 등 현지상황에 맞는 매각을 통해 현재까지 관리 자산 중 759억원을 회수 완료하였음

[프놈펜 사무소 자산별 회수 현황]

(단위: 억원)

자산명		회수	주요 업무내역
회수 종결	신한크메르은행	14	• 2017.09월 지분(3.25%) 매각, 14억원 회수
	말레이시아 골프장	59	• 2018.02월 지분(76.5%) 매각, 59억원 회수
	토마토 특수은행	74	• 2018.04월 지분(62%) 매각, 68억원 우선 회수 • 2020.04월 매각종결조건 충족에 따라 유보금 6억원 추가 회수
	고속도로 부지	130	• 2018.06월 현지 토지매도인과 중재를 통해 130억원 회수
	캄코뱅크	81	• 2018.12월 지분(57%) 매각, 62억원 우선 회수 • 2020.04월 캄코뱅크 관련 소송 승소로 유보금 19억원 추가 회수
회수 진행 중	시엠립 신공항부지	399	• 2017.06월 535억원에 부지매각, 309억원 우선 회수 • 2021.11월 공동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67억원 추가 회수 • 2024.08월 공동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23억원 조기 회수
	기타	2	• 2018.04월 토마토특수은행 관련 임대료 2억원 회수
합계		759	

자료: 예금보험공사

○ 다만, 연도별 자산회수 현황을 보면, 프놈펜 사무소가 개소한 2017년 및 2018년에는 각각 300억원 이상의 자산이 회수되었으나, 2019년 이후로는 자산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2022년 2023년에는 자산 회수실적이 전무하였으며, 2020년에 25억원, 2024년에 23억원이 회수되었음

[프놈펜 사무소 연도별 회수현황]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대출액	회수액	회수 현황
2017	신공항 개발사업	1,141	309	• 캄보디아 정부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우선 회수('17.3월) 후 현지법인 청산 진행 중
	신한크메르(은행)	8	14	• 신한은행에 주식 매각('17.9월)
소계 (2건)			323	
2018	말레이시아 골프장	233	59	• 현지법인에 매각('18.2월)
	고속도로 개발사업	574	130	• 싱가포르 상사중재원 중재합의를 통한 종결('18.6월)
	TSB(토마토 특수은행)	70	68	• 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우선 회수('18.4월)
	캄코뱅크	88	62	• 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우선 회수('18.12월)
	토마토부동산	-	2	• 토마토부동산 임대료 회수('18.4월)
소계 (5건)			321	
2019	X			
2020	TSB(토마토 특수은행)	70	6	• 매각종결조건 충족에 따라 유보금 추가 회수('20.4월)
	캄코뱅크	88	19	• 캄코뱅크 관련 소송 승소로 유보금 추가 회수('20.4월)
소계 (2건)			25	
2021	시엠립 신공항부지	1,141	67	• 공동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회수('21.11월)
2022	X			
2023	X			
2024	시엠립 신공항부지	1,141	23	• 공동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기 회수('24.8월)
합계(11건)			759	

자료: 예금보험공사

○ 특히 현재 프놈펜 사무소의 관리자산 15개 중 캄코시티를 제외한 자산의 평가액 730억원 대비 399억원만이 현재까지 회수되었고, 투자 규모가 가장 컸던 캄코시티[5]의 경우 현재 평가액도 산출되지 않아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법제도상 현지 시행사 경영권 확보 없이는 정확한 자산 현황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공사는 캄보디아 국토부와의 MOU를 토대로 현지 시행사 재무정보 등 캄코시티 자산 평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다각도로 협의 중임[6]

[프놈펜 사무소 관리자산의 회수 현황]

(단위: 억원)

자산명	대출 등	평가액	현재까지 회수 금액
캄코시티	2,369 (대출·투자)	-	-
토마토저축은행 담보부동산(11개) ·동닙부지 ·노스브릿지부지 ·TSB부지 ·메콩강부지 ·선착장부지(2개) ·대로변부지(2개) ·스텅강부지(2개) ·시엠립호텔부지	520 (대출)	542 (감정평가)	-
PGCT[1] 임대사업	114 (대출·투자)	60 (매매계약)	-
(인도네시아) 발리리조트	200 (투자)	117 (감정평가)	-
시엠립 신공항부지	11 (미정산)	11 (미정산)	399
합계	**3,214**	**730**	**399**

주: 1) 프놈펜-대구경북문화통상교류센터
자료: 예금보험공사

5) 부산 계열 저축은행(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이 국내 및 캄보디아 시행사와 사업약정을 체결(2005.8월)하여 개발을 추진한 (캄)프놈펜內 신도시

6) 공사는 캄코시티 인수의향자 발굴 및 캄보디아측과의 이해관계 조율 등을 위해 2025.1.17. 입찰공고 후 매각주관사 선정 절차 진행하여 2025.2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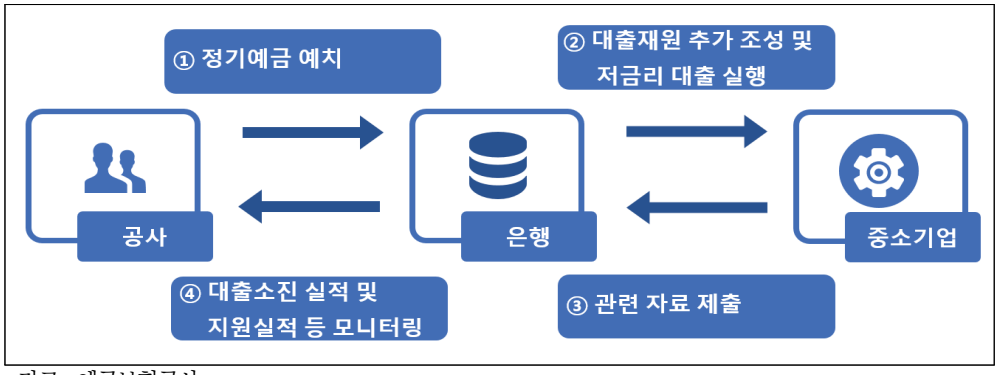
❑ 예금보험공사의 프놈펜 사무소는 2017년 개소 당시부터 가급적 5년 내에 신속히 자산 매각을 추진하여 운영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이후로 자산의 회수 실적이 저조하여 운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잔여 현지 관리 자산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출범 목적을 조속히 달성할 필요가 있음

2-6.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강화 필요 문제

가. 현 황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사가 예치한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은행이 동반성장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주요 운영방식]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2024년 말 잔액 기준으로 1,574개 기업에 총 4,569억원의 동반성장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 연도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지원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대출금액(말잔 기준)	260,174	436,120	413,234	533,628	456,932	60,891
대출기업 수	709	1,173	1,196	1,310	1,574	228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예금보험공사가 예치 정기예금의 지급이자 일부(연이율 기준 약 0.27~0.5%p)를 활용하여 대출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 역시 같은 폭의 대출금리 인하를 일부 제공하여 시중금리 대비 총 0.28~0.71%p(2025년 기준) 저렴한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이자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 2025년 현재 기준 이자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 기술 경쟁력 보유기업 또는 친환경 녹색기업 등이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10억원의 대출금액까지 이자가 지원되고 있음
- 선정기업에 있어서 별도의 지역적 제한은 없으며 전국에 걸쳐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정상금리인 12개월 기준 KORIBOR(은행간 호가금리; Korea Interbank Offered Rate)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한 비용 일부를 차감(2025년 기준 연 0.3%p 내외 수준)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위한 예금보험공사 연도별 정기예금 예치현황]

(단위: 백만원, %p)

지원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6.
예치금액	300,000	200,000	300,000	260,000	60,000
대출한도	450,000	350,000	550,000	460,000	60,000
예치금리[1] (연이율 기준)	△0.30~△0.50	△0.50	△0.30~△0.35	△0.27~△0.30	△0.30

주: 1) 정상금리인 12개월 KORIBOR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지원을 위해 차감되는 금리폭을 의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대출지원기간의 제한 없이 상당수의 지원대상 기업이 장기간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제

❑ 예금보험공사와 기업은행 간에 체결된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에 따르면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지원금리 등은 포함되고 있으나, 별도로 최대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 해당 협약서에 따르면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따른 지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예탁금 예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개별기업에 대한 대출만기일까지 지원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개별 기업당 최대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024년 예금보험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협약내용]

협약 차수 (협약월)		1차(3월)	2차(4월)	3차(6월)	4차(10월)
지원대상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	-	-	-
	친환경 녹색기업	○	○	○	-
	고용유지 기업	-	-	○	-
	기술경쟁력 보유기업	-	○	-	○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	-	○	○
전체 예치금액 (총 대출한도)		1,000억원 (2,000억원)	5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100억원 (100억원)
지원금리 (대출금리 대비)		연 0.30%p 자동감면	연 0.62%p 자동감면	연 0.28%p 자동감면	연 0.60%p 자동감면
업체당 대출한도		업체당 10억원	업체당 5억원	업체당 5억원	업체당 5억원
대출지원기간		**별도 제한 없음** *지원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은 공사의 예탁금이 인출되기 전까지 유지**되며, 예탁금이 인출되더라도 기존 대출은 **해당대출의 만기일까지 이자지원 유지**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결과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있어, 대출의 상당수가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반면 신규 대출기업의 발굴이 저조한 상황임

◦ 2024년 기준 지원을 받은 1,574개 업체 중 2024년도에 신규 대출이 개시된 기업은 26.6%인 418개 업체에 불과하며, 나머지 1,156개 업체는 2023년도 이전에 대출이 시작된 기존 대출 건임

◦ 특히 186개 업체(11.6%)는 2020년 이전에 대출이 시작되어 4년 이상 본 프로그램에 따른 이자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258개 업체(16.4%)는 2021년에 대출이 시작되어 3년 이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

[2024년 예금보험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의 기업별 개별 대출건별 대출개시연도 현황]

(단위: 개사, %)

대출개시 연도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대출)	계
기업수	186	258	179	533	418	1,574
비율	11.8	16.4	11.4	33.9	26.6	1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동반성장협력대출의 폭넓은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출의 혜택이 기존 선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규 선정업체의 발굴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동일연도 내 한 업체에 2건 이상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중복 실행된 문제

❑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중 일부는 동일연도 내 한 업체에 2건 이상의 대출이 중복 실행된 사례가 있었음

○ 2024년에 기업은행을 통해 신규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수혜기업 중 최소 9개 기업은 기업당 2건 이상의 대출을 지원받았으며, 그 결과 기업당 연간 총 대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음

[2024년 예금보험공사의 신규 동반성장협력대출 중 연내 2개 이상의 대출 수혜기업 현황 (대출약정 총액 10억원 초과)]]

(단위: 백만원)

업체명	지원형태	대출약정 연간 총액	업체명	지원형태	대출약정 연간 총액
㈜신*	일자리창출기업	1,045	㈜비*****	친환경 녹색기업	1,685
㈜다**	친환경 녹색기업	1,750	㈜동****	일자리창출기업	1,095
주식회사 대***	고용유지기업	1,400	서******(주)	친환경 녹색기업	1,500
덕*	친환경 녹색기업	1,200	하****	고용유지기업	1,400
㈜국***	고용유지기업	1,150			

주: 전체 신규대출 418건 중 업체당 대출약정금액을 제출한 392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위에서 살펴본 9개의 대출 수혜기업의 개별 대출 건은 비록 서로 다른 협약자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바,[1] 각각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아 협약에 명시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님

- 그러나 이를 합산한 금액은 해당 대출한도를 넘는바, 1건의 대출만을 받은 상당수의 타 수혜기관에 비해 대출지원이 편중된 것이라 할 수 있음

1) 2024년 기준 예금보험공사와 기업은행 간에 체결된 4건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에 따르면 각각의 개별 대출 건당 대출한도는 최대 5~10억원(단, 협약마다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음)으로, 협약자금별로 구분되어 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특정 업체에 대한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 실행은 이자지원 혜택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타 공공기관의 경우, 협약은행(기업은행)과 협약 체결 시, 금년 이전에 체결된 협약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존 수혜기업은 신규 대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중복 실행 문제를 개선하였는바, 향후 사업 운영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한국수자원공사와 IBK기업은행 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서 II]

제4조(지원대상 및 한도) ③ **[한국수자원공사와 IBK기업은행 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서I]에 의한 대출상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단, ESG 경영 추진기업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동반성장협력대출 I 이용금액 차감 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지원대상 기업이 중복되는 문제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예금보험공사 외에 타 기관에서도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바,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선정기업 중 일부는 타 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복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가스공사는 경북, 대구지역이라는 지역적 제약 하에 다시 지원유형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상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업은행을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은행으로 하고 있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지원대상 기준]

연도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2020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중 은행이 선정	코로나19 확산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2021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은행이 선정**	코로나19 확산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 및 K-뉴딜 중소기업
2022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은행이 선정**	코로나19 확산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 및 K-뉴딜 중소기업
2023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은행이 선정**	은행 ESG 자가진단 완료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9개 태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친환경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녹색중소기업
2024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은행이 선정**	은행 ESG 자가진단 완료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9개 태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친환경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녹색중소기업

자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으로 지원한 수혜업체를 비교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를 기준으로 총 98개 업체가 예금보험공사 지원업체와 중복된 것으로 분석됨

-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지원업체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24년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중복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공사추천업체	대구경북 우수기술력기업	대구경북 일자리창출기업	대구경북 코로나19피해기업	합계
업체 수	1	48	46	3	98
대출잔액	500	10,176	6,664	700	18,040

자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업은행은 32개 공공기관과 협약에서 정한 대출한도를 보다 용이하게 채우기 위해 타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업체를 중복 선정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업체가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 선정 방지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중복지원 현황 점검, 공공기관별로 지정한 지원업체 유형과 요건을 표준화 및 투명화, 다수의 혜택을 받은 기업보다 미지원, 신규 중소기업 등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은행과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복 선정 방지 시스템 구축 : 기업은행과 모든 협약 공공기관 간에 지원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지원업체 선정 시 중복 여부를 자동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형평성 확보 : 다수의 혜택을 받은 기업보다는 미지원·신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7.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적자 지속 문제

가. 현 황

❑ 예금보험공사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 · 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 증가[1]에 대응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 2020.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7.6.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 반환지원 신청대상

❶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

❷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가능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금융안심포털 사이트(fins.kdic.or.kr)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사후정산 방식)

ㅇ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제도 도입 전의 경우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 수취인(이하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착오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60만원(소액소송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 착오송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

◦ 2021.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시행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말까지 46,954건(922억원)을 신청받아 18,697건(270억원)을 대상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2,542건(156억원)을 반환 완료하였음

[연도별 신청, 계약체결, 반환 건수]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신청	건수	5,281	11,478	13,442	16,753	46,954
	금액	7,722	16,225	30,682	37,523	92,152
계약 체결	건수	2,227	5,402	5,780	5,288	18,697
	금액	3,100	7,054	9,653	7,224	27,031
반환	건수	1,299	3,744	3,887	3,612	12,542
	금액	1,640	4,404	5,171	4,373	15,588

주: 예금보험공사

나. 주요 쟁점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으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예보기금과 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공사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2021년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관련 수수료 수입은 2024년 기준 2억 3560만원 수준임

[연도별 수수료 수입]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간접비	자진반환	54,791	138,195	171,745	147,648
	법적절차	3,645	29,515	36,014	42,737
	소계	58,436	167,710	207,759	190,385
직접비		7,474	28,233	41,802	45,197
합계		65,910	195,943	249,561	235,582

주: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 관련 수수료는 공사의 착오송금수입을 구성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반환에 직접소요된 실비(직접비)와 인건비, 차입이자 등(간접비)을 송금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2)]

- ① 직접비 : 우편요금, 인지대 등 실비를 송금인에게 부과
- ② 간접비 : 인건비, 차입이자 및 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착오송금액에 비례하여 부과

[착오송금반환지원 수수료율 산정방식(공사의 착오송금수입)]

구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차입이자	충당금
자진반환 (실비+착오송금액×3.41%)	실비	착오송금액 ×2.0%	착오송금액 ×0.01%	착오송금액 ×1.4%
지급명령 (실비+착오송금액×7.1%)	실비	착오송금액 ×4.1%	착오송금액 ×0.1%	착오송금액 ×2.9%

자료: 예금보험공사

○ 다만,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연도별 손익 현황을 보면 사업을 시작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현

2) '21.6월 예금보험위원회 비용부과안 의결

재까지의 누적 손실액은 약 43.4억원 수준임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영업비용은 단기차입금 이자비용과 착오송금비용, 인건비로 구성되는데, 인건비 투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2024년 기준 86.2%)
- 착오송금비용은 착오송금수입의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크지 않으나, 영업비용에서 이 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단기차입금 이자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천원)

과목	2021	2022	2023	2024	누적
I.영업수익	65,935	196,022	249,631	235,646	747,234
예치금이자	25	79	70	64	238
착오송금수입	65,910	195,943	249,561	235,582	746,996
II.영업비용	1,081,156	1,240,325	1,360,049	1,408,928	5,090,458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61**	**28,602**	**93,827**	**139,756**	**262,246**
착오송금비용	20,241	51,407	59,219	54,449	185,316
인건비	1,060,854	1,160,316	1,207,003	1,214,723	4,642,896
III.영업이익	**△1,015,221**	**△1,044,303**	**△1,110,418**	**△1,173,282**	**△4,343,224**

주: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계정 신설('21.7월)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자본 결손을 보이고 있는바, 2024년 말 기준 자본은 △4,349백만원이고, 금융부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31백만원임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재무상태]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자산	916	1,210	2,051	1,734
부채	1932	3,271	5,224	6,083
자본	△1,015	△2,061	△3,173	△4,349
금융부채	1,880	3,196	5,158	6,031

주: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21.7월 신설
자료: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에서 적자가 계속될 경우 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업비용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인건비 등 관련 비용(50.9억원) 중 수수료 수입(7.5억원)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2024년말 기준 약 43.6억원)함에 따라 발생함
-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상반기 중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을 진행 예정이라는 입장임

❑ 2025년부터 착오송금반환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신청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적자 누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3 한국주택금융공사

3-1. 주택저당증권(MBS)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체계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1]을 양수하여 자기신탁[2]하고, 해당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는 수익증권인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이하 'MBS'라 한다)을 발행하고 있음

- MBS의 원금 및 배당수익의 지급은 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기자본의 50배 내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함[3]
- MBS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의 총 8개 종목(트렌치)으로 구성되며, 만기 7년 이상 종목에 대해서는 콜옵션이 부여됨[4]
  - 콜옵션의 부분 행사는 이자비용 절감과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증가로 인한 여유자금 재투자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MBS는 2004년 6월, 1회차 발행을 시작으로 2025년 8월[5]까지 총 488회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누적 발행액은 총 419조 1,365억원에 달함[6]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주택저당채권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미래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임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가 위탁자 겸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을 설정하여 MBS 발행 및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함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지급보증)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 ·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4) 만기가 짧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매 3개월마다 부분 콜옵션을 행사함

5) 2025.8.15. 기준

6) MBS 스왑 발행액이 포함된 수치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을 통해 ① 지급보증수수료, ②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③ 청산배당액을 포함한 청산손익을 수취함

◦ 지급보증수수료는 MBS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배당수익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율은 지급보증액에 대해 2006년 이전 연 0.25%에서 이후 연 0.20%로 운영됨

◦ 이자수익은 후순위채권 인수에 따른 것으로, 신탁 종료 시점에 잔여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지급됨

- 공사가 인수하는 후순위채권은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지급보증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후순위금리는 선순위금리보다 높게 설정됨

◦ 청산손익은 신탁종료 시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청산배당액보다 부채가 많아 잔여자산이 부족한 경우 청산손실이 발생함

- 즉, 잔여자산에서 지급보증잔액(원금과 손해금)과 후순위 원리금을 차감했을 때,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청산손실로 반영됨
- 청산배당액은 신탁종료 시점의 자산에서 신탁약관의 지급순서에 따라 모든 부채를 상환한 후 남은 자산을 의미하며, 여유자금 부족으로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환된 것으로 간주함

※ 지급순서: 제비용 → 제수수료 → 선순위 이자 → 선순위 원금 → 지급보증이행 손해금 → 지급보증이행 원금 → 후순위 이자 → 후순위 원금

❑ 2025년 8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총 488회의 MBS 중 89개의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공사의 총수익은 5,361.6억원임

◦ MBS 발행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총수익은 ① 지급보증수수료 2,725억 9,100만원, ② 후순위 이자수익 1,100억 500만원, ③ 청산손익 1,535억 6,300만원으로 구성됨

[신탁 종료 MBS 현황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관련 총수입]

구분		내용
유동화계획코드		89개
발행금액 합계액		38조 86억 3,700만원
기초자산금액 합계액		37조 5,266억 8,4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총수익		5,361억 5,900만원
	① 지급보증수수료 합계액	2,725억 9,100만원
	② 후순위 이자수익 합계액	1,100억 500만원
	③ 청산손익 합계액	1,535억 6,300만원

주: 2025.8.15. 기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MBS 발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된 총수익 중 지급보증수수료는 2,726억원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2006년 0.25%에서 0.20%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이 경매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신용위험,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수취 지연으로 공사가 MBS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지급위험의 합으로 구성됨

◦ 지급보증수수료(2,725.9억원)에서 대지급금(1,986.5억원)을 차감한 739억원이 공사에 귀속됨

- 신탁이 종료된 89개의 코드 중 46개의 코드에서 1,986억 4,600만원의 지급보증액이 발생함(신탁 종료 일자 기준)
- 신용위험은 유동화 종료 후 확정되는 측면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신탁이 종료된 MBS의 발행금액을 살펴보면, 399억원에서 1조 9,681억원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이처럼 발행규모가 다양함에도 상당 기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해외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달리 탄력적 지급보증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함

- 참고로, 미국 정부지원기관(GSEs,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의 MBS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개별 대출의 신용위험, 대출기관의 서비스 옵션, 지급주기 등에 따라 변동되어 탄력적으로 적용됨

[미국 정부지원기관 항목별 평균 지급보증수수료율]

(단위: bps, %)

구분		2022		2023	
		수수료율	비중	수수료율	비중
LTV	80이하	62	68.0	68	58.0
	80~90	59	12.0	66	16.0
	90초과	56	20.0	59	26.0
Credit Score	660이하	85	4.0	87	2.0
	660~719	71	21.0	76	16.0
	720이상	57	75.0	63	82.0

주: 1. 위 수치는 개별대출을 LTV, Credit Score 수준별로 사후적으로 분석한 평균값이며, 수수료율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2. 미국 FNMA(Fannie Mae,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HLMC(Freddie Mac,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의 평균 수수료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 시 MBS 발행비용 등 제비용이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보증수수료 차등화 및 절감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에 활용될 수 있음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 방식]

보금자리론 금리 = 손익균형금리(MBS 발행금리 + MBS 발행비용 등 제비용) + 유동화 마진

주: [MBS 발행금리=국고채 금리+MBS 스프레드] 이며, MBS 발행 시점과 금리 결정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제 MBS 발행 금리가 아닌 국고채 5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를 최근 기준에 맞춰 반영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 지급보증수수료의 산출근거인 신용위험과 대지급위험의 발생 가능성, 손실 충당 수준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MBS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의 초과담보비율 과다로 인한 기초자산 활용 저하

가. 현 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이하 'CB'라 한다)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 이하 'MBB'라 한다)[1]을 발행하고 있음

◦ CB는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와 담보자산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이중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라 함

- CB는 발행기관의 신용으로 발행되지만,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안정성이 높고, 자금조달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음[2]

❑ 2010년 7월에 1회차 발행을 시작으로 2025년 5월까지 국내외에서 총 36회의 유동화계획코드를 설정하였으며(채권 기준 총 45개), 2022년 7월부터는 '커버풀 통합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발행 중에 있음

◦ CB 발행 방식은 Stand Alone 방식과 Programme 방식이 있으며, 커버풀 통합관리 방식은 Programme 방식에 해당함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11.3.

- 커버풀 통합관리 방식은 발행구조 및 제반 발행조건을 사전에 설정한 이후 발행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권을 발행하며, Stand Alone 방식은 매 발행시마다 구조와 조건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발행절차를 진행함
- 국내 절차상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 채권의 유동화계획 등록 여부에 있음.[3] 커버풀 통합관리 방식은 매 발행 시 등록·승인이 필요한 Stand Alone 방식과 달리 최초 프로그램 설정 시 1회의 채권유동화계획 등록·승인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커버풀 통합관리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 모집) 해외 CB 시장에서는 Programme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조가 표준화되어 일관성이 높아 발행구조 파악이 용이함. 또한 반복 발행이 가능하여 다양한 조건의 투자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저변 확대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업무 효율성) 사전에 설정된 발행구조와 조건 등에 따라 발행절차가 간소화되어 발행 일정을 단축(약 2개월) 가능하며, 발행 이후에도 복수의 CB를 하나의 커버풀로 관리할 수 있음

❑ CB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담보 설정 절차는 기초자산 양수와 관련한 금융기관 협의 및 채권 양수도, 초과담보비율 준수 등에 관한 신용평가기관 협의, 금융감독원과의 채권유동화계획 변경 등의 순서로 이루어짐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총액 및 평가가액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주요 쟁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7월 이후 커버풀 통합관리방식을 적용하여 CB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 방식에 해당됨. 2025년 8월 현재 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2022년에 프로그램 설정과 관련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으며, 이후 동 프로그램 내에서 채권유동화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개별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 그 결과 하나의 통합풀을 구성하는 모든 기초자산은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와 회차별 유동화계획코드를 보유하게 됨

[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풀 통합관리방식 CB 발행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유동화계획코드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발행통화	금리
1	KHFCMB2022B-02	2022-07-19	2026-07-19	6,605	EUR	3.202
2	KHFCMB2022B-04	2022-10-14	2025-10-14	2,314	CHF	4.186
		2022-10-14	2027-10-14	2,024	CHF	4.522
3	KHFCMB2022B-03	2022-12-16	2025-11-16	2,644	USD	3.965
4	KHFCMB2023B-02	2023-02-10	2026-02-10	2,211	CHF	3.887
		2023-02-10	2028-02-10	1,340	CHF	4.079
5	KHFCMB2023B-03	2023-04-06	2026-04-06	1,740	AUD	3.669
		2023-04-06	2026-04-06	1,044	AUD	3.610
6	KHFCMB2023B-04	2023-04-11	2027-04-11	7,040	EUR	3.744
7	KHFCMB2023B-06	2023-06-22	2026-06-20	1,281	USD	3.880
8	KHFCMB2023B-08	2023-07-26	2027-04-11	2,129	EUR	3.886
9	KHFCMB2023B-05	2023-07-28	2028-07-28	1,280	USD	4.113
10	KHFCMB2023B-07	2023-08-08	2026-06-30	2,696	USD	3.900
11	KHFCMB2023B-09	2023-09-25	2027-09-25	14,190	EUR	4.407
12	KHFCMB2023B-10	2023-12-07	2027-09-25	1,428	EUR	4.215
13	KHFCMB2024B-01	2024-02-01	2027-02-01	3,096	CHF	3.494
		2024-02-01	2030-02-01	2,322	CHF	3.845
14	KHFCMB2024B-02	2024-03-18	2029-03-18	7,165	EUR	3.510
15	KHFCMB2024B-03	2024-10-02	2028-07-02	9,659	EUR	3.021
16	KHFCMB2024B-04	2024-11-29	2026-10-29	2,686	HKD	2.898
17	KHFCMB2025B-01	2025-03-05	2030-03-05	9,000	EUR	2.899
18	KHFCMB2025B-02	2025-05-28	2030-05-28	5,680	USD	2.79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CB 발행 시 신용평가사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에 대해 최소담보비율을 제시하나, 실제 발행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초과담보비율이 설정된 문제가 있음

◦ 특히, 2023년 4월에서 8월까지 발행된 유동화계획코드의 최소담보비율은 116.5%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발행 시 초과담보비율은 159.2~193.5% 수준으로 나타나, 그 차이는 42.7~77.0%p에 이르러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커버풀 통합관리방식은 기존 채권과 신규 채권에 동일한 초과담보비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2023년 4월 채권 발행 시 기초자산금액이 전회차 대비 1조 5,732억원(6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풀 통합관리방식 CB 담보 비율]

(단위: 억원, %, %p)

구분	유동화계획코드	발행일	발행금액	통합 커버풀 기초자산금액	담보비율		
					최소 (A)	발행시 (B)	차이 (B-A)
1	KHFCMB2022B-02	2022-07-19	6,605	8,769	113.0	132.8	19.8
2	KHFCMB2022B-04	2022-10-14	2,314	13,883	112.5	126.9	14.4
		2022-10-14	2,024				
3	KHFCMB2022B-03	2022-12-16	2,644	19,275		141.9	29.4
4	KHFCMB2023B-02	2023-02-10	2,211	22,826		133.2	20.7
		2023-02-10	1,340				
5	KHFCMB2023B-03	2023-04-06	1,740	38,558	116.5	193.5	77.0
		2023-04-06	1,044				
6	KHFCMB2023B-04	2023-04-11	7,040	49,115		182.1	65.6
7	KHFCMB2023B-06	2023-06-22	1,281	48,348		171.2	54.7
8	KHFCMB2023B-08	2023-07-26	2,129	48,348		159.2	42.7
9	KHFCMB2023B-05	2023-07-28	1,280	52,990		167.4	50.9
10	KHFCMB2023B-07	2023-08-08	2,696	55,046		160.3	43.8
11	KHFCMB2023B-09	2023-09-25	14,190	58,964	110.2	121.5	11.3
12	KHFCMB2023B-10	2023-12-07	1,428	65,632	110.9	131.4	20.5
13	KHFCMB2024B-01	2024-02-01	3,096	69,724		125.9	15.0
		2024-02-01	2,322				
14	KHFCMB2024B-02	2024-03-18	7,165	76,615	110.2	122.5	12.3
15	KHFCMB2024B-03	2024-10-02	9,659	92,270	108.0	127.8	19.8
16	KHFCMB2024B-04	2024-11-29	2,686	89,808		119.9	11.9
17	KHFCMB2025B-01	2025-03-05	9,000	100,888		120.3	12.3
18	KHFCMB2025B-02	2025-05-28	5,680	112,011		125.1	17.1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초과담보비율이 높을 경우 부실자산 발생 시 담보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기초자산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및 미유동화자산의 증가로 기초자산 양수를 위한 자금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커버풀에 기초자산을 추가하였으나 이후 CB의 발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CB 발행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사채 발행 등으로 양수한 기초자산을 커버풀에 추가하여 초과담보비율이 상승함
- 다만, 2024년 이후 실제 발행이 진행됨에 따라 초과담보비율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초과담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초자산이 유동화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3-3. 고유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가. 현 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유계정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이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이라 한다)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 ◦ 고유계정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등으로 조성되고, 고유사업 유지에 필요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충당된 후 잔여 여유자금은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으로 운용되고 있음
- ◦ 기금의 기본재산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등으로 조성되고 보증채무 이행 등 고유 목적달성에 필요한 용도에 지출된 후 잔여 여유자금은 기금확충을 위한 금융자산에 운용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자산운용 규모는 고유계정 6.4조원, 주신보계정 11.6조원, 주연보계정 1.5조원 규모로 나타남

[2024년말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 자산운용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고유계정	주신보계정	주연보계정
예치금	39,983	20,930	2,533
유가증권	23,605	94,662	12,38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	-
합계	63,588	115,592	14,916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유계정과 기금계정의 연평균수익률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고유계정은 0.52~4.25%, 주신보계정은 1.66~7.94%, 주연보계정은 1.94~8.23%로, 전반적으로 고유계정이 기금계정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기금계정은 중장기자산의 수익률이 전체수익률과 유사한 성과를 보이는데, 이는 고유계정과 달리 기금계정의 투자자산 대부분이 중장기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최근 5년간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 연평균수익률]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고유계정		**전체**	**1.77**	**0.52**	**0.87**	**4.25**	**4.03**
		단기	1.02	0.79	2.30	3.96	3.89
		중장기	1.96	0.50	0.39	4.57	4.2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전체**	**4.44**	**1.66**	**△2.55**	**7.94**	**6.16**
		단기	0.97	0.76	2.31	3.89	3.72
		중장기	4.45	1.66	△2.55	7.96	6.17
	주연보계정	**전체**	**4.91**	**1.94**	**△2.91**	**8.23**	**6.62**
		단기	1.03	0.79	2.32	3.90	3.72
		중장기	4.92	1.95	△2.93	8.28	6.64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회계연도 계정별 투자자산을 살펴보면, 고유계정은 기금계정에 비해 단기투자자산과 국내채권 직접운용 비중이 높으며, 국내주식·해외투자자산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자산군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음[1)]

1)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이후 MBS 지급보증에 대한 대지급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자금운용은 2025년 대지급금 발생일에 맞춰 자금을 매칭하고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해 고유동성자산 위주로 운용함에 따라 중장기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이 축소되었다고 설명함
* 대지급금 잔액(조원): ('22) 7.9, ('23) 10.4, ('24) 15.1, ('25.6.) 21.3

◦ 고유계정은 중장기투자자산 비중이 약 65.0%인 반면, 기금계정은 99.7~99.8%로 대부분 중장기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국내채권 위탁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4회계연도 계정별 투자자산의 평균잔액 및 연평균수익률]

(단위: 억원, %)

구분		고유계정		주신보계정		주연보계정	
		평균잔액	수익률	평균잔액	수익률	평균잔액	수익률
단기	요구불 등	12,015	3.86	11	3.46	1	3.46
	수익증권	7,005	3.73	255	3.73	45	3.73
	소계 (비중)	19,020 (35.0)	3.89	266 (0.2)	3.72	46 (0.3)	3.72
중장기	예치금	19,374	4.35	19,358	4.16	2,212	4.07
	국내채권	15,999	4.22	75,060	4.88	8,728	4.84
	-직접운용	15,999	4.22	24,050	4.65	2,204	4.73
	-위탁운용	-	-	51,010	4.99	6,524	4.88
	국내주식	-	-	6,312	△7.35	860	△7.21
	해외채권	-	-	1,413	11.93	189	11.93
	해외주식	-	-	8,322	33.08	1,329	33.45
	소계 (비중)	35,373 (65.0)	4.27	110,466 (99.8)	6.17	13,317 (99.7)	6.64
합계 (비중)		54,393 (100.0)	4.03	110,732 (100.0)	6.16	13,363 (100.0)	6.62

주: '요구불 등'에는 요구불예금, 예치금, 유동성예치금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의 금융자산 운용지침을 비교해 보면, 고유계정은 기금계정에 비해 투자대상이 다양하게 구성된 반면, 2025년 목표수익률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요구됨

◦ 2025년 목표수익률은 고유계정 3.44%, 기금계정 3.96~3.97%로 설정되어 있음. 이는 단기투자자산의 수익률은 2.99%로 동일하나 중장기투자자산의 수익률이 기금계정에서 더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임

◦ 고유계정은 운용지침상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나 실제 운용은 주로 안전자산 위주로 이루어져 수익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 금융자산 운용지침 비교(발췌)]

구분	고유계정 금융자산 운용지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지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포함)
투자수익률	제2절(투자정책) 제17조(투자수익률) ④ 2025년 고유계정의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단기자산: 2.99% - 중장기자산: **3.68%** - 전체: **3.44%**	제2절(투자정책) 제17조(투자수익률) ④ 2025년 주신보계정 및 주연보계정의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단기자산: 2.99%(2.99%) - 중장기자산: **3.97%(3.96%)** - 전체: **3.97%(3.96%)** * 괄호 안은 주연보계정
투자대상	제3절(자산운용기준) 제22조(투자대상) ① 공사법 제54조에 근거한 고유계정의 투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의 매입 3.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4. A-등급 이상 금융채·회사채 5. AA등급 이상 금융기관에 콜론 6. AA등급 이상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7. 연기금투자풀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및 MMF형) 8. 공사가 발행한 MBS의 매입. 단, 채권시장 수요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행물량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보유할 수 있으나, 최장 6개월 이내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제3절(자산운용기준) 제23조(투자가능상품) ① 공사법 제58조, 제5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기금의 투자 가능한 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 3. A-등급 이상 금융채·회사채 4. 연기금투자풀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및 MMF형)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유계정 금융자산 운용지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지침」

❑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유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향후 투자대상 다각화, 적극적 목표수익률 설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MBS 지급보증에 대한 대지급금 규모와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3-4. 시공사 보증한도 산정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제2항[1]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2]에 의한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행 사업자 보증 체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보증을 실행하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를 기준으로 보증 한도를 산정함

◦ 동일기업은 파산, 사업포기 등 보증사고를 판단하는 단위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인 시행사를 의미함. 2024년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5,008억원임

[한국주택금융공사 동일기업 보증한도]

(단위 :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4,084	3,958	4,332	4,449	5,008

주: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관계기업을 포함하는 건설자금보증의 경우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이고, 관계기업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금융보증의 경우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0으로 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 10억원
나. 제3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30억원
2.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한편, 202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이라고 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음[3)]

◦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시공 이익 축소 등 자구 노력을 실시한 사업장이 해당됨

◦ 주요 내용은 ① 대출금 상환 유예 등 채권 재조정, ② 공사 보증부대출에 앞서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한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③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이고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함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주요내용]

구분	기존 PF보증	특례 PF보증
보증 대상	시행사 및 시공사가 정상 기업인 사업장	공사 PF보증 이용 사업장의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
대출 한도	총사업비의 70~90%	최대 100%
보증 방법 (순차적 적용)	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	① 상환 유예 등 채권 재조정: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 분할 상환 → 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②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한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③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PF 추가보증
자금지원시기	입주자 모집공고 전	준공 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은 2025.6.30.까지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고, 추가 연장도 논의 중에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에 특례보증으로 8개 부실 사업장(시공사)에 총 9,229억원을 보증하였음. 그런데 동일기업 보증한도로 시행사에 대한 보증 규모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시공사 보증 한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시공사 특례보증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특례보증을 공급받은 T건설은 2024년 1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개시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으로 6,482억원을 공급받았는데 이는 2024년 동일기업 보증한도(시행사 기준)인 5,008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D기업	T건설	T건설	T건설	T건설	T건설	Y기업	J기업
사업장 소재지	전남 장흥군	서울 구로구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	강원 고성군	대전 중구	울산 울주군	서울 영등포구
총사업비	543	1,065	1,280	1,914	2,713	5,513	2,756	2,083
대출금	270	922	1,152	1,723	1,650	1,200	700	1,874
지급보증액	243	922	1,152	1,723	1,485	1,200	630	1,874
사업장 세대수	239세대	627세대	782세대	927세대	811세대	690세대	848세대	597세대
착공일	'22.1.19.	'21.12.30.	'21.10.1.	'22.3.31.	'22.10.1.	'24.4.1.	'21.4.1.	'22.9.1.
준공예정일	'24.10.31.	'25.11.25.	'25.9.1.	'25.10.30.	'26.3.9.	'28.5.31.	'26.10.31.	'26.4.17.
시공사 신용등급	CC+	C	C	C	C	C	BBB	BBB-
분양률	81.2	모집 전	모집 전	모집 전	100	모집전	모집전	모집전
공정률	준공완료	70.0	63.7	36.8	59.8	착공 전	42.6	7.8

주: 시공사 신용등급은 2024년 기준이고, 분양률 및 공정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건설경기 침체로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1월부터 매월 금융권 매각 추진 부동산 PF 사업장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 중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4월 말 기준 경공매 매각 추진 PF 사업장은 395개, 감정평가액은 총 14조 244억원 규모이며, 이 중 주거시설은 216개, 7조 9,06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주거시설의 경우, 2025년 1월의 매각대상 사업장은 105개(감정평가액 2.9조원), 미입찰 사업장은 34개(1.1조원)이었으나, 2025년 4월에는 매각대상 사업장이 216개(7.9조원), 미입찰 사업장이 96개(2.9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경공매 매각 추진 PF 사업장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매각대상		주거시설	
		사업장	감정평가액	사업장	감정평가액
2025.1.	매각대상	195	6,033,116	105	2,911,149
	미입찰	53	1,449,455	34	1,081,817
2025.4.	매각대상	395	14,024,352	216	7,906,839
	미입찰	168	4,675,360	96	2,939,670

자료: 금융투자협회(https://www.kofia.or.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시공사의 부실 가능성은 PF 사업장의 매각 증가 추세와 맞물려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공사 보증에 대한 한도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의 부실이 사업자 보증 사고의 증가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정 시공능력을 시공사 보증한도에 반영하는 등 시공사 보증한도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5. 신탁재산 여유자금의 동반성장대출 활용 및 특정 업체에 집중된 동반성장협력대출 문제

가. 현 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한국남부발전(주)과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한 업체에 대한 동반성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부터 'ESG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하나은행 및 한국남부발전(주)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사는 정기예금 1,500억원 내외를 예치하고, 상품 적용금리에서 연 0.1%p를 한국남부발전(주)의 협력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연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22~2024년 동안 중소기업 대출 134~206억원에 대해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함

◦ 공사는 또한 2023년부터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과 'ESG금융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은 500억원 내외의 정기예금을 6개월간 예치하며, 정기예금 적용금리에서 차감되는 연 0.1%p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추천하는 기업 대출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우대지원하며, 2023~2024년 동안 6억원의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지원함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반성장대출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하나은행	예탁금	해당없음		151,220	0	0
	대출공급액			14,245	13,829	0
우리은행	예탁금			해당없음	49,193	0
	대출공급액				600	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은경 과장 (eunkylee@assembly.go.kr, 6788-3782)

나. 주요 쟁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계정의 여유자금을 동반성장대출에 활용하고, 협약은행 주도로 선정한 업체들의 대규모 대출에 금리 혜택을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함

○ 동반성장대출 프로그램에 투입된 약 2,004억원의 예탁금은 신탁계정의 여유자금[1]으로, 공사의 ESG 사업(동반성장대출)에 활용하였음

- 공사의 「신탁규정」에 따르면, 제4조(신탁설정)수익증권(MBS)를 발행할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을 신탁하여야 하며, 제5조(신탁효력)신탁은 금융위원회에 설정사실을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수익증권의 원본 및 배당수익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까지 존속하며, 제8조(구분관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자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신탁재산의 사용범위) 신탁재산은 수익증권의 원본 및 배당수익 상환, 지급보증이행금, 그 밖의 제비용과 수수료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익증권의 원본 및 배당수익의 상환이 완료된 신탁계정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일부를 동반성장대출 지원대상업체의 금리인하에 활용함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반성장대출에 활용된 신탁계정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합계
하나은행	정기예금 또는 CD(양도성예금 증서)	151,220	0	200,413
우리은행	정기예금	0	49,193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신탁규정」
제4조(용어의 정리)
1. "수익증권"이라 함은 유동화를 위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을 말한다.
2. "신탁채권"이라 함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신탁채권으로부터 회수되어 수익증권의 원본 및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 운용되는 금전을 말한다.
4.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채권과 그 관리·운용·처분·멸실·훼손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을 말한다.

○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반성장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한국남부발전과 기술보증기금의 추천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징임

- 하나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하는 동반성장협약대출은 당초 한국남부발전 추천업체를 하나은행이 심사하는 방식이었으나, 심사 통과업체가 없어 하나은행이 직접 약 10~13개 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연장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지원대상에 대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일부 업체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한 금리 혜택을 독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은 동일기업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동일기업 지원한도를 최고 10억원으로 둠
-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서에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이 동일기업에 대해 많게는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2022년에 선정된 일부업체(유XXXX) 대한 하나은행 차입금 18.9억원 전액에 대해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0.2%p 금리지원 혜택을 제공함
- ㈜유XXXXXX의 경우, 하나은행은 대출지원한도 규정이 없는 점을 활용하여 2024년 말 기준 하나은행 차입금 17억원에 대하여 동 프로그램을 통해 0.2% 금리 인하 혜택을 자의적으로 지원함
- 특히, 2023년부터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은XXXXXXXX(주)의 대출잔액은 68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대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리 지원하는 대출액 중 가장 큰 규모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을 통하여 지원하는 기업체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실적에만 치중한 결과,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이 대출한도 없음을 이용하여 일부 업체에 특혜에 가까운 금리지원을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저금리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동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협약은행인 하나은행 선정 지원대상업체 대출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약정금액	대출잔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1	㈜에XXXXXXXX	2,000	2,000	-	-	-	-
2	㈜풍X	-	-	-	500	-	-
3	조XXX	2,000	2,000	-	-	-	-
4	㈜마XXXXX	450	450	-	450	-	240
5	㈜유XXXXXX	1,700	1,700	-	1,700	-	1,700
6	이X㈜	1,000	1,000	-	1,000	-	1,000
7	㈜효X	500	420	-	420	-	370
8	항XXX㈜	145	145	-	145	-	145
9	㈜신XXXX	350	350	-	350	-	350
10	㈜유XXXX	2,100	2,100	-	1,890	-	-
11	㈜피XX	500	500	-	500	-	500
12	주식회사 해XXXX	-	-	160	160	-	160
14	(주)프XXXXXX	1,000	1,000	-	-	-	-
15	금XXXXX 주식회사	2,000	2,000	-	-	-	-
16	㈜트XXX	-	-	2,370	2,370	-	2,270
17	㈜케XXXXXXXXXX	-	-	4,500	4,410	-	-
18	은XXXXXXXX㈜	-	-	6,800	6,799	-	6,799
합계		14,245	14,165	13,829	20,694	-	13,534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는 금리지원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해 지원된 대출업체 중 전체 이자지원 비중이 5% 이상을 차지하는 6개 업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이자지원액 63,802천원의 73.5%인 46,912천원에 달함
- 특히,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XXXXXXXX(주)의 경우, 신규발생일(2023.04.10.)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제공된 금리혜택이 총 12,656천원에 달해, 단일업체가 전체 이자지원액의 19.8%를 차지함에 따라 특혜 제공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2025년 6월 말 기준 하나은행 선정 지원대상업체 이자지원 현황]

(단위: 원, %)

구분	지원업체	신규일	대출약정금액 (백만원)	이자지원 합계	이자지원 비중
1	㈜에XXXXXXXX	2022-09-23	2,000	2,635,644	4.1
2	㈜풍X	2022-09-30	500	1,656,434	2.6
3	조XXX㈜	2022-04-28	2,000	2,101,370	3.3
4	㈜마XXXXX	2022-09-30	450	1,751,446	2.7
5	㈜유XXXXXX	2022-10-07	1,700	7,601,096	11.9
6	㈜이X	2022-10-11	1,000	4,449,315	7.0
7	㈜효X	2022-10-25	500	1,633,493	2.6
8	항XXX㈜	2022-10-25	145	634,027	1.0
9	㈜신XXXX	2022-10-24	350	1,532,329	2.4
10	㈜유XXXX	2022-11-03	2,100	7,731,471	12.1
11	㈜피XX	2022-11-18	500	2,120,548	3.3
12	(주)프XXXXXX	2022-12-14	1,000	1,755,068	2.8
13	금XXXXX 주식회사	2022-12-20	2,000	536,986	0.8
14	주식회사 해XXXX	2023-01-06	160	532,603	0.8
15	㈜트XXX	2023-03-27	2,370	7,754,525	12.2
16	㈜케XXXXXXXXXXX	2023-04-03	4,500	6,719,594	10.5
17	은XXXXXXXX㈜	2023-04-10	6,799	12,656,390	19.8
합계			28,074	63,802,339	100.0

주: 지원업체에 대한 우대금리는 0.2%이며, 이자지원 합계는 신규 발생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의 대출 약정금액에 우대금리 0.2%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리 인하액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금리 인하 지원하고자 하는 협력업체가 없음에도, 경영평가 실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이 임의로 추천한 10~13개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의 본래 취지와는 괴리가 있음

❑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계정의 여유자금을 동반성장대출 사업에 사용하여, 대출한도 없이 일부업체에 집중적으로 금리지원하는 동반성장대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

4-1. 지원대상인 '구조개선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1]에 따라 부실징후기업과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구조개선기업은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을 의미함

[부실징후기업과 구조개선기업의 정의]

부실징후기업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구조개선기업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기업 인수·합병의 알선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방식, 지급보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인수정리
마.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투자 및 제1호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
② ~ ⑦ (생 략)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특히 캠코는 2019년 부대업무 승인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한 출·투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모펀드 출·투자 부대사업 승인 내역]

시기	사업내용	사유
2019. 7.22.	**□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정·설립된 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투자** **※ (부대조건) 회생기업 자금대여, 투자기구 출·투자 업무의 경우 지원기간·방식·규모 등은 매년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캠코는 다음과 같은 사모펀드를 직접 운용하거나 출·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생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캠코의 사모펀드 현황]

펀드명	사업 내용
부실채권(NPL) 펀드	취약 금융기관 보유 담보부 부실채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및 출자 - 취약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신속 정리를 위해, 캠코가 민간 투자자와 부실채권 펀드에 공동 투자(LP)
기업지원펀드 (LP)[2]	구조조정 관련 펀드의 신속 조성을 위해 캠코가 앵커투자자(LP)로 참여하여 민간투자 유도 - 기업 필요자금 성격에 따라, 주식·메자닌(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 지분투자 방식(PEF) 또는 대출방식(PDF) 투자
기업구조혁신펀드 (GP)	모펀드 운용사로서 캠코는 재정·정책기관 출자를 바탕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운용사 선정 및 자펀드에 출자(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방식) - 자펀드 운용사는 모펀드 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자펀드 결성 및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를 집행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LP)	캠코는 앵커투자자(LP)로서 펀드 조성 및 공모를 통해 5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였고, - 선정된 운용사는 사업 재구조화,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투자 진행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캠코의 펀드 및 리츠 출·투자 목적이 구조개선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혜 기업 중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라는 캠코의 설립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캠코의 기업지원펀드의 투자 기업 중 “구조개선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실질이 구조개선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이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지원펀드 중 제이케이이에스지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펀드가 투자한 삼○○○○의 경우 “구조개선기업”에 해당하여 투자가 집행되었는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① 부채/자본 비율이 100% 미만으로 재무구조개선이 시급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해당 기업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88억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90억원을 차입하고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기업임[3)]

[제이케이이에스지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펀드의 투자기업 삼○○○○ 현황]

(단위: 원, %)

구분			금액(2024년말 기준)
부채(A)			192,452,590,662
자본(B)			243,660,317,884
부채비율(A/B)			79.0
차입금	한국산업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	28,000,000,000
		외화운전자금대출	827,691,000

2)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 펀드 투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며 주로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수행. 펀드 내 위원회를 통하여 펀드 전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으나 PEF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GP)의 본질적, 핵심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펀드 운용결정권은 갖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1 제4항)

3) 캠코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투자당시 부채비율(108.6%)이 업종별(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대비 1.5배(102.4%)를 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7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기업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단위: 원, %)

구분			금액(2024년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수출포괄금융	19,000,000,000
	ㅁㅁ은행	일반대출	9,000,000,0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둘째, 캠코는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4]에 근거하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도 출자하고 있는바, 캠코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였음[5]

[캠코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 내역]

(단위: 억원)

회사명	유형	투자시기	투자 금액	대상기간	배당실적 (회수실적)	만기일
케이원제16호분당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	'21.6.28	893	'21.6.28. ~'24.12.31.	121	'27.6.29
하나트러스트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	'21.12.15	610	'21.12.15. ~'24.12.31.	61	'25.12.22
에이치엘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	'22.8.30	1,100	'22.8.30. ~'24.12.31.	117	'29.6.17

주: 리츠만기 미도래로 원금회수는 없이 배당실적과 회수실적이 동일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라.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 기업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인수정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라.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투자

5)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위탁관리하는 부동산 물건 목록]

순번	회사명	부동산소재지	용도	자산관리회사
1	케이원제16호분당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	오피스빌딩	한국토지신탁
2	하나트러스트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	오피스빌딩	하나자산신탁
3	에이치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	오피스빌딩	HL리츠운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다만, 해당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지원 받은 기업들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개편을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6)]

- A기업의 경우 모빌리티 사업 투자를 위한 현금 확보 목적으로 2021년 한국토지신탁이 운용하는 리츠에 사옥을 S/LB(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각하였음
- B 기업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대응을 위한 단기간 자본을 확충을 위해 하나자산신탁이 운용하는 리츠에 사옥을 S/LB(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각하였음

○ 즉, 해당 기업들은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서 굳이 캠코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캠코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라는 본연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실화될 가능성(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7)]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캠코 자회사) 투자기업의 구조개선기업 해당 사유]

회사명	투자기업	구조개선기업 해당 사유
케이원제16호분당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A	· 지원기업 사업(셋톱박스 등) 매출부진으로 재무구조개선 및 사업재편(모빌리티)이 필요
하나트러스트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B	· 新 지급여력제도(K-ICS) 적용 대비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유자산 매각
에이치엘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C	· 주요사업(부품 제조·판매)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재편(내연기관→전기차 중심) 추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6)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 및 보험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당 기업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긴급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였고, 정부가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비상경제중대본, '20.6)을 발표함에 따라 공사는 정책 수행을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7)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기업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22.12월 종료되어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특히 캠코는 자체 업무방법서에서 “재무구조개선”을 “기업의 유동성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거나 부채규모를 줄이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모든 기업이 “구조개선기업”으로 분류되어 캠코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음

○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재무구조개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일반 기업들에게까지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캠코는 구조개선기업의 기준 및 범위(예: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 정량적 지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캠코의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2. 부대업무인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의 지속 수행 필요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등 업무를 수행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수의 부대사업 승인을 받아왔으며, 그 중 일부 사업(국외 부실자산정리, 선박회사 출·투자 등)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사의 업무로 반영되기도 함

[금융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대사업 승인 내역]

시기	사업내용	사유	공사법 제26조 제1항
1998. 5.23.	□ 기업보유 부동산의 매물 신고 접수 o 대상 기업체 : 상법상 회사 o 대상 부동산 : 기업소유의 부동산 및 기업에 담보를 제공한 제3자소유의 부동산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98.4월)」에 따른 기업 보유 부동산의 매각 활성화 도모	-
	□ 신고접수 부동산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매각주선 o 매물자료의 전시·상담 o pc통신 및 인터넷에 매물정보 제공		
2001. 5.15.	□ 국외에서의 부실자산정리에 관한 자문 및 업무대행	개발도상국가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요청에 부응하여 해당 기구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한 국제협력 증대 및 수익권 창출 도모	1호 사목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시기	사업내용	사유	공사법 제26조 제1항
2004. 5.3.	□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투자 및 그 회사의 업무대행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Bad Bank를 설립, 금융기관 및 KAMCO 보유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도모	4호 라·사목
2004. 12.24.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산처분시스템의 대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온비드' 서비스 제공	4호 다목
2016. 12.22.	**□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해운회사)의 신조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및 선박회사에 대한 출·투자**	「제6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16.10월)」에 따른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신조 지원	2호 마목
	□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회수관리에 관한 업무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	-
2018. 2.26.	□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를 통해 매각을 의뢰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 업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담보주택 매각 지원 목적	-
2019. 7.22.	□ 캠코의 자산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S&LB)을 이용중인 기업이 해당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 분할납부(연불매각)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
	□ 회생기업(회생종결 기업 포함)에 대한 자금대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투자 및 그 회사의 업무대행 **※ (부대조건) 회생기업 자금대여, 투자기구 출·투자 업무의 경우 지원기간·방식·규모 등은 매년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		2호 다목
	□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정·설립된 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투자 **※ (부대조건) 회생기업 자금대여, 투자기구 출·투자 업무의 경우 지원기간·방식·규모 등은 매년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		-
2022. 3.14.	□ 정부대책(「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월)」)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실시하는 자금 출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월)」에 따른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자금 출연 목적	-

시기	사업내용	사유	공사법 제26조 제1항
2022. 11.21.	□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재간접 펀드 방식*으로 운용** ※ (모펀드) 직접 투자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간접적 역할 (자펀드) 모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실제 기업에 투자하는 업무 수행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필요	-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편,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은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채 발행 시, ① 캠코가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캠코는 ② 기업이 신탁한 부동산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임

- 이는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에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회사채 발행 여력을 확대하고 캠코의 신용공여로 자체발행 대비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취지임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구조]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동 사업은 정부의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담보부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부대업무 승인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의 부대사업 승인내역]

시기	사업내용	사유	공사법 반영
2016. 12.22	□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회수관리에 관한 업무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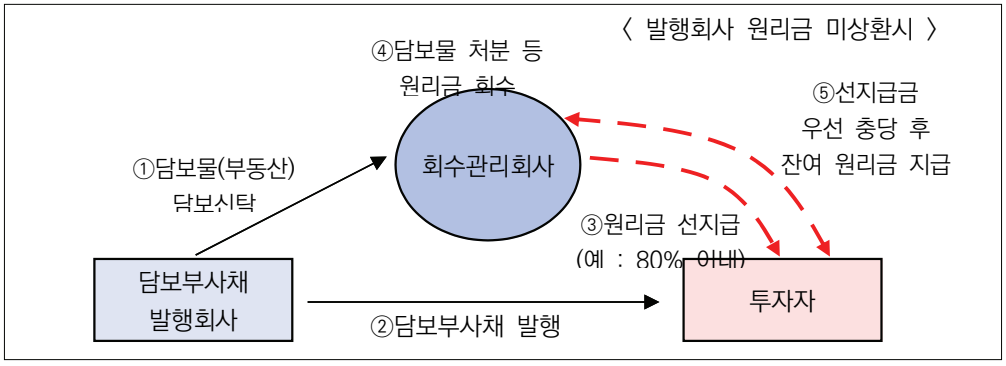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주요 쟁점

❑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은 사업 수행 기간 대비 지원 실적도 크지 않고 유동화보증을 제공하는 타 공공기관의 지원 방식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금융위원회의 부대업무 승인을 근거로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 동 사업의 추진 배경인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7월)」에 따르면 당초 캠코의 역할은 담보부사채 원리금 미상환시 담보처분 이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수관리회사"[1] 업무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었음

[회수관리회사 도입 내용]



자료: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2016년 7월

1) 회수관리회사는 사채 발행사가 원리금 미상환시 원리금의 일부(신용공여 한도 내, 최대 8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담보물 처분을 통하여 원리금 회수 및 투자자와의 사후정산(이자, 수수료, 미지급 원리금 등) 실시

◦ 그런데 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융위원회의 부대업무 승인을 받으면서 자체적인 자금지원 역할까지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캠코는 담보부사채 시장의 초기 신용공여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위 방안의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와의 내부 논의를 거쳐 부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캠코의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의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개사 기업에 대하여 총 4,876억원 신용공여를 지원하였고 이 중 12개사가 상환을 완료하였는바, 사업 수행 기간 대비 지원 기업 수 및 지원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발행규모 및 수수료]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지원기업	1	3	2	1	4	1	2	2	**16**
발행금액	500	2,200	500	230	1,650	500	1,000	795	**7,375**
신용공여	300	840	400	180	1,320	400	800	636	**4,876**
수수료	1.5	4.6	7.1	6.6	12.1	4.0	6.4	7.1	**49.4**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보증(P-CBO)[2]을 통해 저신용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보증 지원하고 있어 캠코의 담보부사채 신용공여와 지원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2000년 7월에 최초로 P-CBO가 도입된 이래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의 발행을 지원하였으며,[3]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도 신규 P-CBO 2873억원 발행해 113개 중소기업을 지원한 바 있음[4]

2)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양도받은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3)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약 50bp 절감합니다", 2025.3.13.,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4) "기보, 신규 P-CBO 2873억원 발행해 113개 중소기업 지원", 2025.06.16., 기술보증기금 보도자료

- 다만, 캠코는 유동화 보증과 달리 담보부사채 신용공여는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나아가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은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을 사업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하고 있는바,[5] 일반 기업이 아닌 부실징후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캠코의 본연의 업무 범위와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캠코의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은 ① 그간의 사업 실적을 고려할 때 수요 자체가 저조한 측면이 있고, ② 이미 타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유동화보증(P-CBO)을 통해 저신용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보증 지원하고 있다는 점, ③ 캠코의 설립 취지는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캠코가 2016년의 부대업무 승인을 근거로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사업을 지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가 요구됨

5) (제외대상)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① 금융거래 연체 중이거나 회생절차·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기업
②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③ 최근 3개년 이자보상배율 계속 1 미만인 기업
④ 금융업 영위 기업

4-3. 선박금융을 통한 신조 지원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캠코의 선박금융 사업에는 캠코의 선박자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캠코선박펀드 및 캠코신조펀드와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6]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신조지원프로그램이 있음

○ 캠코선박펀드는 중고선, 캠코신조펀드와 신조지원프로그램은 신조를 대상으로 함

[캠코의 선박금융 사업]

구분	대상	추진 배경 및 내용
캠코선박펀드	중고선	국적 해운사의 보유 선박 인수 후 재용선을 통해 유동성 공급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15년~현재) ㅇ 정부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선박펀드 조성하여 운영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14.7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월)」 등
캠코신조펀드	신조	국적 해운사의 친환경·고효율 신조선 건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동성 지원('20년~현재) ㅇ 정부의 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20.6월) 중 하나로 해운사 선박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중고선→신조선) 운영 *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계기관 합동 지원 방안 마련·의결('20.6월)
신조지원 프로그램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합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해운사의 고효율·친환경 선박 확보 지원('18년~현재) ㅇ 정부의 해운사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수행 *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15.12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21.6월)」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6)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15.12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21.6월)」

◦ 캠코의 선박금융 사업은 舊 자산관리공사법('11.5월 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정리”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보유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에 시작되었음

- 「제6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16.10월)」에 따른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부대업무 승인을 받음
- 이후 2022년 2월 시행된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투자 및 제1호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으로 캠코의 선박금융 사업이 명문화됨

❑ 캠코의 선박금융 펀드별 손익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펀드 수는 122개이며, 이 중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된 64개 펀드에서 총 1,28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 캠코선박펀드의 경우 58개의 펀드가 상환되어 1,02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캠코신조펀드에서는 조기상환된 1개 펀드에서 47억원, 신조지원프로그램에서는 5개 모두 조기상환 되어 20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캠코 선박금융 상환완료펀드의 손익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전체 펀드 수	상환완료 펀드								
		수	출투자 금액(A)	회수			잔액 (원금)	**손익 (B-A)**	**수익률** [1]	비고
				원금	배당금	합계(B)				
캠코선박펀드	109	58	8,595	8,595	1,027	9,622	-	**1,027**	**11.9**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캠코신조펀드	8	1	323	323	47	370	-	**47**	**14.6**	조기상환
신조지원 프로그램	5	5	1,471	1,471	207	1,678	-	**207**	**14.1**	조기상환
합계	122	64	10,389	10,389	1,281	11,670	0	**1,281**	**12.3**	

주: 1) 수익률: 기간 총 손익(B-A)/출투자금액(A)의 비율

1. 2024년 12월 말
2. 선박펀드 관련 비용(설립비용, 회계·법률 비용 등)은 해운사가 선박운용사(선박투자회사법) 또는 펀드운용사(자본시장법)에게 지급하는 Set-up fee, Operating fee 범위 내에서 각 운용사가 집행하며, 출·투자자 지위의 공사는 별도의 운영비용 등은 소요되지 않음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주요 쟁점

❑ 캠코의 선박금융 사업은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목적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캠코가 신조선 건조에 대하여까지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캠코는 중고선박을 인수하는 캠코선박펀드 외에 자체적으로 신규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캠코신조펀드를 2020년부터 시작하여 운용 중에 있음

- 선박금융별 사업 실적을 보면 캠코신조펀드(자체)의 지원 실적이 2024년 말 누적 기준 총 3,850억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신조지원프로그램’의 누적 지원 실적 1,47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캠코 선박금융 연도별 사업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5~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캠코선박펀드	지원	9,515	2,366	2,487	1,438	572	2,184	18,562
	회수	2,747	2,298	2,828	2,501	1,805	2,499	14,678
캠코신조펀드	**지원**	-	-	**1,447**	**667**	**1,339**	**397**	**3,850**
	회수	-	-	**4**	**151**	**270**	**645**	**1,070**
신조지원프로그램	지원	314	415	71	197	473	-	1,470
	회수	25	20	32	805	238	554	1,674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신조펀드는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 2024년까지도 신조펀드를 통한 신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캠코는 국내 해운사(구조개선기업)의 지원 대상을 신조선으로 확대하고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신조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기(최장 12년), 저금리의 달러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 비율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해운사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국적선대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캠코신조펀드 출·투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약정년도	펀드명	선박수	출·투자금액(A)	회수(B)	잔액	투자기간	손익(B-A)
1	2020	캠코신조펀드 1호	1척	738	255	615	10년	진행 중
2	2020	캠코신조펀드 2호	1척	709	250	592	10년	진행 중
3	2022	캠코신조펀드 3호	1척	323	370	-	5년	47 (조기상환)
4	2022	캠코신조펀드 4호	5척	567	54	567	12년	진행 중
5	2022	캠코신조펀드 5호	5척	565	53	565	12년	진행 중
6	2023	캠코신조펀드 6호	5척	568	56	568	12년	진행 중
7	2023	캠코신조펀드 7호	3척	382	32	382	10년	진행 중
8	2024	캠코신조펀드 8호	1척	출자前	-	-	10년	출자前

주: 2024.12월말 기준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다만,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7]에 따르면 캠코의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투자 및 지급보증은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바, 일시적인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시작한 ‘신조지원프로그램’ 외에 캠코가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신조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캠코의 선박금융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명확한 수행 근거가 요구됨

○ 특히 캠코는 자체 업무방법서[8]에서 “재무구조개선”을 “기업의 유동성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거나 부채규모를 줄이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상당히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실상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모든 기업이 구조개선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음

- 이 경우 캠코가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캠코의 업무 범위의 목적을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으로 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부실징후기업과 구조개선기업의 정의]

부실징후기업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구조개선기업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

자료: 자산관리공사법 및 캠코 업무방법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더불어, 캠코 외에도 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박금융 사업이 명확한 구분이나 기준 없이 기관 간 분산되어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공공기관 정책자금 투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9]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마.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투자 및 제1호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

8) 제26조(업무)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에 대해 캠코는 관련 정책금융기관은 주요 지원의 대상(내항·외항 해운사, 조선소, 항만, 해운물류 등)에서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고, 20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국가 해운산업 위기시 즉각적 또는 사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다층적 지원체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각 공공기관의 선박금융 지원 내용 비교]

구분	캠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양진흥공사
업무 수행 근거	▪자산관리공사법(제26조) ▪선박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산업은행법(제18조) ▪자본시장법	▪수출입은행법(제18조) ▪자본시장법	▪해양진흥공사법(제11조) ▪선박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설립 목적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산업개발·육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해운기업 선박도입 및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 서비스 제공
지원 금융형태	투자	여신+보증+투자	여신+보증+투자	투자+보증
주요 지원 대상	▪재무구조개선 도모 중견·중소 국내 외항 해운사 위주	▪(조선) 국내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 ▪(해운) 선박금융 지원(선순위 위주) ※ 신용도 높은 기업 위주	▪국내 조선소에 신조 발주한 국외 선주 위주 ※ 공적수출신용기관	▪국내 내·외항 해운사 ▪항만, 해운물류 시설 등 해운산업 전반 (항만사업자, 선박관리회사 등)
주요 사업 목적	국내 외항 해운사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지원	조선업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조선업 수출 경쟁력 강화	해운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주요 사업	**▪선박금융(중고·신조)** ※ 민간금융사의 해운사 기피에 따른 시장기능 보완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국내 조선소 이행성 보증 **▪선박금융(신조·중고 도입)**	▪국내 조선소 이행성보증 ▪운영자금·운항자금 대출 ▪선박도입 보증 ▪국내·국외 선주금융	**▪선박도입·보유선박 금융** ▪항만물류금융 ▪선주사업 ▪설비투자 금융 ▪선박도입 보증 ▪화물운송계약 이행보증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9) 캠코가 선박금융까지 수행시 해운 산업의 경기변동성에 따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 자금의 손실 발생이 가능함

◦ 이러한 점에서 캠코가 해운사의 환경규제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자체 펀드를 조성하여 해운사의 신조선 건조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캠코의 선박금융 사업 수행 목적(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을 소관하는 각 정부 부처(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도 부처 간 협의 또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선박 분야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한 정보 공유 등 통합적인 추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4.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한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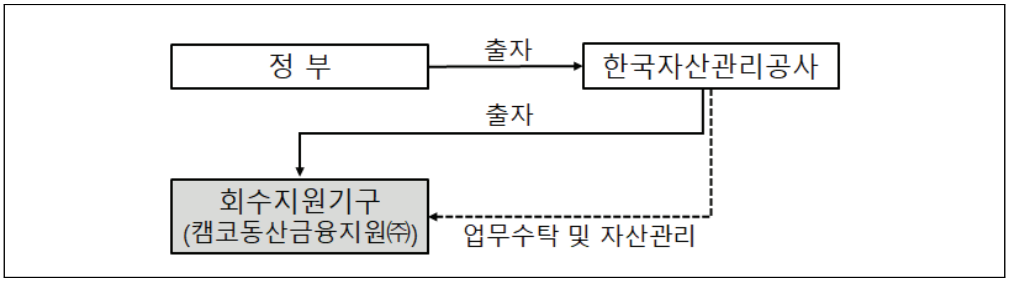
가. 현 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 출자를 받아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1] 설치하고 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을 수행 중임

○ 동 사업은 2018년 5월 발표된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2]과 2019년 3월의 '혁신금융 추진방향'[3]에 따라, 동산담보[4]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하여, 동산금융 전체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받아 캠코동산금융지원(주)에 재출자한 규모는 2020년 400억원, 2021년 119억원 등 총 519억원임

[캠코동산금융지원(주) 대한 출자 구조]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캠코동산금융지원(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로, 은행의 동산담보 회수 및 동산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①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에 따라 은행이 요청시 사전에 약정한 비율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적기 회수를 지원하는 "동산담보대출 부실채권 매입"과** ②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재임대하여 은행 회수 가능성 제고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수행하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이 있음

2)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보도자료, 2018.5.21

3)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보도자료, 2019.3.20

4) 동산담보 대출이란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기계, 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동 사업은 동산담보 회수지원을 위하여 ①부실채권 매입, ②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후 리스(S&LB)로 나누어 출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캠코동산금융지원(주)으로 재출자됨

- ①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동산담보대출의 매입대상 규모를 1.4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5%의 부실률과 50% 매입률을 감안하여 70억원의 자금 소요를 예상하였고 2021년에는 회수액을 고려하여 304억원을 예상함
- ② 직접매입 후 리스(S&LB)과 관련하여 2020년에 동산담보대출 1.4조원 중 5%가 부실화 및 50%의 매입률을 적용하는 등 총 280억원의 직접매입(S/LB)액을 계획함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 예산편성내역]

(단위: 억원)

연도	구분	금액	산출내역
2020	**직접매입 비용**	**280**	**매입대상 동산담보대출 예상액 1.4조원** × 5%[1] × 50%[2] × 80%
	부실채권 매입 비용	**70**	**매입대상 동산담보대출 예상액 1.4조원** × 5%[1] × 50%[2] × 20%
	운영비용	50	18(창고임대) + 32(인건비) = 50
	계	400	
2021	매입비용	94	**304(부실채권 매입)** - 70('20년 매입비용 절감액) - 140(부실채권 회수액) = 94
	관리 및 운영비용	25	18(동산담보물 관리비용) + 20(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비용) - 13('20년 운영비용 절감액) = 25
	계	119	

주: 1) 중소기업 정책보증사업 부실률 적용
2) 부실 동산담보대출 매입가격률 50% 가정

자료: 금융위원회

○ 캠코동산금융지원(주)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20~2021년에 정부로부터의 출자예산 총 519억원이 편성되었으며,[5] 2020~2024년에 걸쳐 총 504억원이 집행(집행률 97.1%)되었음

- 2020년에 400억원, 2021년에 119억원의 정부출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2020~202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2024년까지 출자 예산이 집행되었는바, 이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임
- 이로 인해 동 사업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①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출자 및 출자사업 집행 실적 보고 등의 조치 마련 필요 ② 실적 부진 및 미흡한 사업 준비 재발방지 필요가 지적된 바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비고
편성액	400	119	-	-	-	519	전액 정부예산
집행액	41	56	78	93	236	504	
누적 집행률	10.3	18.7	33.7	51.6	97.1	97.1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주요 쟁점

❑ 동산담보회수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동산담보대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낮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산담보물 회수지원 사업 중 부실채권 매입이 계획 미달성·초기 집행실적이 부진함

-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매입실적이 2020년도 단 1건(19.5억원)

5) 정부는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운영을 통해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을 보장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였다.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캠코가 당초 계획했던 2020~2021년 부실채권매입 규모 374억원(=70억원+304억원)에 비해 크게 미달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개 은행과 체결한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에 따라 은행이 매입을 요청할 경우 매입하게 되어 있으나, 2020년 시범사업(19개 차주 인수) 수행 후 은행의 매입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함

[부실채권 매입 실적(최근 5년)]

(단위: 건, 억원)

매입연도	차주수	담보물수	채권액	매입대금	(누적)회수액
2020	19	80	44.7	19.5	7.5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행은 다음 표와 같이 연체율이 확대되는 부실 동산담보대출을 부실채권 전문 투자기관 등에 매각하는 등, 시중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하지 않고도 부실화된 채권처리가 가능함을 시사함

[중소기업은행 동산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급 건수	2,111	1,661	1,143	940	666
공급액	5,145	3,661	2,688	2,655	1,820
연체율	1.19	1.74	2.53	4.71	6.67

자료: 중소기업은행

-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초 계획한 동산담보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출자액은 활용되지 못하고 S&LB프로그램으로 활용됨[6][7]

6) 동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1~2023년에 연 40~90억원이며, 2024년이 되어서야 229억원이 동산담보물 직접매입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2024년에 지원금액이 급증한 사유에 대하여 캠코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제도개선('24.4월) 이후 지원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산담보부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 수요가 없자 2021년부터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8]을 주력으로 동 시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보장장치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임

-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은 2015년 3,755억원 이후 2018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다 정부 정책발표 시점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급증한 후, 2021년 이후 1.5~1.7조원 수준으로 유지됨
-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2020~2024년 동안 1.5~1.7조원임에 반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근 5년간 직접매입(S&LB)을 통해 지원한 24개 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2024년 말 잔액의 1.7%에 해당하는 241억원에 불과하며, 2024년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 8,723개 기업의 0.27% 불과하여,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은 미흡한 수준임

설명하고 있지만, 지원기업 수는 한자리에 그침

7)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실적(표)

(단위: 건, 억원)

인수연도	지원기업수	담보물 수	지원금액
2020	-	-	-
2021	4	76	40
2022	4	156	72
2023	5	124	90
2024	9	824	229
합계	22	1,180	431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8) 동 사업은 ① 동산담보대출 기업 중 부실우려가 있는 기업이 보유한 동산담보물에 대해 직접매입(S&LB)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심사 후에 기업의 동산담보물을 직접매입하고, ③ 기업은 동산매각대금 중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운전자금 등에 활용함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신청기업 수]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신청기업 수	8	20	23	33	84
지원기업 수	4	4	5	9	22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현황]

(단위: 억원)

은행명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민	470	339	311	298	912
신한	286	158	115	112	361
하나	366	349	252	413	902
기업	1,110	907	672	1,931	4,976
기타	1,523	1,419	1,121	1,605	2,077
합계	3,755	3,171	2,471	4,361	9,228
은행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	1,732	2,452	2,805	2,433	2,150
신한	1,008	2,672	2,740	2,363	1,829
하나	1,736	2,205	3,198	4,240	4,012
기업	7,427	7,918	6,742	5,558	3,987
기타	2,563	2,610	2,021	2,359	2,178
합계	**14,466**	**17,857**	**17,506**	**16,953**	**14,15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S&LB프로그램을 통한 동산담보물 인수액이 해당 기업의 기존 동산담보 대출액보다 최대 113배까지 높아, 결과적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사업의 목적이 동산담보대출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유동성 지원으로 변질되는 문제도 발생함
-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 3월 은행대출액이 1천만원인 V사의 동산담보물을 11.4억원에 인수함으로써 V사는 은행대출액 1천만원을 상환하면서 11.3억원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함

[동산 S&LB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인수 연월	기업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수금액 (a)	동산담보 매각기업		비중(c/b)
				채무상환 활용액(b)	운전자금 활용추정액 (c=a-b)	
1	'21.06	A사	282	171	111	64.9%
2	'21.07	B사	182	182	0	0.0%
3	'21.07	C사	1,352	903	449	49.7%
4	'21.11	D사	2,161	1,240	921	74.3%
5	**'22.07**	**E사**	**1,705**	**100**	**1,605**	**1,605.0%**
6	'22.07	F사	2,601	2,500	101	4.0%
7	'22.10	G사	1,059	326	733	224.8%
8	'22.10	H사	1,802	952	850	89.3%
9	'23.02	I사	1,007	242	765	316.1%
10	'23.06	H사(2차)	2,878	2,435	443	18.2%
11	**'23.09**	**J사**	**1,825**	**115**	**1,710**	**1,487.0%**
12	**'23.12**	**K사**	**1,474**	**203**	**1,271**	**626.1%**
13	**'23.12**	**L사**	**1,796**	**42**	**1,754**	**4,176.2%**
14	'24.04	M사	731	504	227	45.0%
15	**'24.04**	**N사**	**1,858**	**50**	**1,808**	**3,616.0%**
16	'24.06	O사	2,581	2,372	209	8.8%
17	**'24.07**	**P사**	**4,789**	**800**	**3,989**	**498.6%**
18	**'24.08**	**Q사**	**625**	**10**	**615**	**6,150.0%**
19	'24.08	R사	2,029	500	1,529	305.8%
20	'24.08	S사	4,996	2,000	2,996	149.8%
21	'24.09	T사	344	48	296	616.7%
22	'24.12	U사	4,995	4,281	714	16.7%
23	**'25.03**	**V사**	**1,144**	**10**	**1,134**	**11,340.0%**
24	'25.05	W사	4,569	4,133	436	10.5%
합계			48,786	24,118	24,668	102.3%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부는 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이 정부 출자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민간 동산담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었으나 실제 민간 은행의 채권매입 신청 수요가 없어 부실채권 매입실적이 저조하였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LB는 민간 동산담보시장 활성화 측면에서의 기여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동산담보물 직접 매입을 통해 일부 기업에 대한 직접적 자금조달 역할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

4-5.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타 공공부문과 중복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운영 중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지원대상 기업 대출금 금리 인하에 활용됨

- 지원대상 기업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ESG경영추진기업, 친환경기업, 공사 추천기업(사회적 기업 포함)임
-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지원금리는 2021~2024년 동안 0.5% 수준임
-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협약 연장 시 총 대출기간은 최장 2년임
- 지원대상 기업은 2024년에 98개로 2021년 53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연도	협약 은행	예탁금	예탁이율	은행 대출한도	지원대상 기업수	여신잔액	자동감면 금리
2021	중소 기업 은행	10,000	12개월 KORIBOR 금리 - 연 0.2%p	10,000	53	9,559	0.5
2022		10,000		10,000	62	9,943	0.5
2023		10,000		10,000	108	9,986	0.5
2024		10,000		10,000	98	9,665	0.5

주: 자동감면 금리는 은행이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특례지원하는 금리이며,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 추가감면 가능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은경 과장 (eunkylee@assembly.go.kr, 6788-3782)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지원하는 동일 업체를 타 공공부문에서도 지원함에 따라 잠재적 수혜업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체에 간접적으로 금리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지원대상의 다양성이 중요함

○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지원하는 업체가 타 공공부문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하여 금리를 지원하는 업체 수는 총 98개이며, 이 중 16개는 예금보험공사, 10개는 한국증권금융, 8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음

[2024년 말 기준 동일업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타 공공부문 중복 지원 현황]

(단위: 개, %)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증권금융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16	1	2	8	1	1	10	4	1

주: 공사추천기업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적 기업 포함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협약의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원인을 각각 찾을 수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원 규모와 지원업체 수 등 양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관리를 소홀히 함
- 협약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신규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대출업체 부실 리스크를 줄이고자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인 동일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금리지원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일부 기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 한편, 2021년에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시작한 이후 2025년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이 전체 대출지원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2022년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어 협약서 상의 창업·벤처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함
- 또한, 공사추천업체가 2025년에는 선정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동 대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사 추천업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형태별 대출 현황]

(단위: 억원, %)

지원형태	2021	2022	2023	2024	2025.6.
창업·벤처중소기업	1,365	1,565	320	130	30
일자리 창출 기업	1,030	1,000	200	200	0
코로나19 피해기업(a)	6,864	7,079	9,466	9,335	3,540
친환경 중소기업	0	0	0	0	200
ESG경영 추진 중소기업	0	0	0	0	0
공사추천기업	300	300	0	0	0
합계(b)	9,559	9,944	9,986	9,665	3,770
코로나19피해기업/총대출	71.8	71.2	94.8	96.6	93.9

주: 공사추천기업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적 기업 포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원대상기업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는 기존의 지원대상 중 일부를 변경함(일자리 창출, 코로나19 피해기업 → 친환경기업, ESG경영 추진기업, 공사 추천 중소기업)
-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2025년 6월 대출잔액의 93.9%임

[한국자산관리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대상 업체]

(단위: 억원)

2021~2024	2025
부산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1. 창업,벤처 중소기업 2.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3.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4. 공사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포함)	부산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1. 창업,벤처 중소기업 2. 친환경기업 3. ESG경영 추진기업 4. 공사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포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취지에 맞도록 동일업체에 타 공공부문과 중복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사 추천업체를 확대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6.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면제 사업의 수익성 저조 및 투자심의회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미심의 문제

가. 현 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년부터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 및 2016년부터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 ◦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29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61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출연금 115억원 등으로 출연
- ◦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61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자체 부담함

❑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서울에 파견된 공무원의 숙소를 마련함으로써 대외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임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여의도빌딩 개발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2
부지면적	3,306㎡
건립내용	지하6층/지상23층의 공공시설(공군관사, 행정관사) 및 민간임대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0,592㎡ 규모의 민관복합개발
총사업비	729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 61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15억원)
조감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기존 국립서울병원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보건의료행정기관, 주민복지,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
부지면적	중곡동 30-80(18,190㎡)
건립내용	지하2층, 지상20층의 의료전문행정타운 및 오피스시설,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연면적 52,252㎡ 규모의 민관복합개발
총사업비	1,614억원
조감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 및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계획 대비 실적 저조 문제가 발생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중 주요 실적 저조 사업]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총사업비				누적손익		비고
		합계	공공(자체)	국고	민간	계획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1)]	729	729 (614)		-	△564.0	△647.8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1,614	1,614	-	-	△1,063.7	△1,405.1	

주: 1) 한국자산관리공사 614억원 + 국유재산관리기금 115억원
1. 기관의 토지 매입 의무가 없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국유지 용지보상비는 작성 제외함
2. 누적손익은 2024년말까지 기관 부담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동 사업은 자체 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투자심의를 면제하는 등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그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1)]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별도로 투자심의회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심의회 심의 면제 조항을 신설 적용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투자심의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ㅇ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투자심의회 심의 미실시 사업 세부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미실시 사유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	2014~2018	· 사업계획(2014.11.) 수립 당시 공사내 투자심의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미운영 → 국유재산정책심의위(통과), 사업계획 수립(2014.11월)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2015~2021	· 사업계획(2015.12.) 수립 당시 공사내 투자심의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미운영 → 국유재산정책심의위(통과), 사업계획 수립(2015.12월)

주: 사업 철회 건 제외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2024년까지의 누적 손익이 △648억원으로 계획(△564억원)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국유개발재산 임대료 감면 및 공실률의 증가에 따른 수익 저조로 인한 것임. 본 사업은 당초 4.51% 수준의 공실률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2월 현재 7.25%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음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계획	수익(A)	7.4	40.1	70.0	31.4	77.9	55.6	58.2	57.4	60.0	59.3	517.3
	비용(B)	60.5	344.2	609.6	28.0	6.6	6.6	6.6	6.6	6.6	6.6	1,081.9
	손익(A-B)	△53.2	△304.2	△539.6	3.4	71.4	49.1	51.6	50.8	54.0	52.6	**△564.0**
실제	수익(C)	5.6	16.6	38.4	57.7	21.8	44.1	47.4	50.9	54.2	51.0	387.6
	비용(D)	35.7	131.0	348.5	214.9	111.9	44.5	35.3	39.0	39.2	35.5	1,035.4
	손익(C-D)	△30.1	△114.4	△310.1	△157.2	△90.2	△0.3	12.1	12.0	15.0	15.5	**△647.8**

주: 개발사업 수행기간은 2014~2018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또한 동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 내부 투자사업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 내 투자심의회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투자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음

○ 한편,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現 보건복지행정타운)은 당초 수익이 2019년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2021~2024년간 최대 연수익이 94.4억원에 불과하여 2024년까지의 누적 손익이 당초 계획(△1,063.7억원) 대비 악화된 △1,405.1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는 사업계획 대비 사업준공이 2.5년 순연되어 사업비 회수 시작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기 때문임. 본 사업은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발주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발주 및 사업준공이 지연되었음[2)]

- 한편 사업수익 감소는 사업 초기 공실률이 높았던 점,[3)]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 정책[4)]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계획	수익(A)				140.1	104	101.4	102.9	104.4	106	658.8
	비용(B)	99.8	299.8	1,046.2	242.1	6.9	6.9	6.9	6.9	7	1,722.5
	손익(A-B)	△99.8	△299.8	△1,046.2	△102	97.1	94.5	96	97.5	99	**△1,063.7**
실제	수익(C)						64.7	94.4	86.2	88.6	333.9
	비용(D)	28.8	155.3	210.4	514.3	245.8	350	140.8	35.1	58.5	1,739
	손익(C-D)	△28.8	△155.3	△210.4	△514.3	△245.8	△285.3	△46.4	51.1	30.1	**△1,405.1**

주: 개발사업 수행기간은 2015~2021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 ① 공사 발주 지연 - 입찰방법 변경 검토(턴키->일반공사)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인한 착공 지연
② 주52시간제 시행 - 2018.7.1.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③ 지하철 출입구 설치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서울교통공사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3) 공실률: 2021년말 13.8% /2022년말 12% /2023년말 2.9% /2024년말 1.6%

4) 2020.3월 ~ 현재(2025.12.31.종료 예정)

- 또한 동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 내부 투자사업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 내 투자심의회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투자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음
- 다만, 두 사업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상의 투자심의회와는 별개로, 사업계획 승인 전 「국유재산법」 제26조[5]에 따라 총괄청에서 운영중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도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은 주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 수행 자금을 조달하는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서 손실이 발

---

5)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 ⑤ (생 략)

생할 경우 이는 기관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재무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는 투자심의회를 실시하지 않은 두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되어 기관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7. 유상증자 후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방식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주발행을 할 때 회계상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비용이 주식할인발행차금임

- ◦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1]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주식의 할인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할인발행 금액과 신주발행비[2]의 합계액 비용을 말함
-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기업이 긴급하게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증자)할 필요성이 있어, 주식을 액면가치보다 싸게 할인발행할 때 발생함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발생시 해당 비용을 이익잉여금에서 상각시키는 회계처리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에서 상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해당 주식할인발행차금 비용을 과거에 발생한 배당가능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차감·충당하고 있음을 의미함
- ◦ 반면,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하는 방식이란, 별도로 자본계정에 조정항목을 만들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을 말함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발행비란 일반적으로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증자 시에 발생하는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경우 유상증자를 하게 됨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150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당 세액은 신주발행비에 해당함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별도의 해당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별 회계처리 방식에 자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 등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법령에서는 해당 규칙 및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 IFRS")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4]
- 그런데 K-IFRS 및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처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이는 개정 전 「상법」과 다른 점임[5]
- 이에 따라 현재 민간기업에서도 주식을 할인발행할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 비용을 K-IFRS에 따라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5) 개정 전 「상법(2011.4.14. 개정에 따라 삭제)」
제454조(신주발행비용의 계상) ①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신주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공공기관들의 주식할인발행차금 처리방식]

(단위: 개)

처리방식		공공기관명
이익잉여금 상각(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상각 처리 (3)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인식 (1)	대한석탄공사
자본조정 (10)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1)	한국산업은행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 (9)	새만금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식할인발행차금 미발생 (21)		88관광개발(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게 되면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손실보전 여력을 줄이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본의 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함

○ 각 공공기관은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손실금의 보전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손실금 보전 이후 공공기관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확대할 여지도 높일 수 있음

- 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이익잉여금을 침식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회계상 기관의 손실금 보전여력을 줄이는 문제가 있음[6][7]

6) 출자받은 35개 공공기관 중 손익금 처리를 할 때 이월손실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둔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며, 특히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

○ 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자본금 조정 항목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익잉여금 및 향후 손실처리 여력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히 별도 계정을 통해 계상하는 이상 회계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기관 차원에서도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책적으로 이를 자본조정항목의 계상을 통해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의 경우, 이월손실금 보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7) 참고로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35개 공공기관들의 손익금 처리 규정의 우선순위 조항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

이익 발생시 우선순위 조항	공공기관명
이월손실금(결손금)의 보전 (26)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본금 총액 달할 때까지 이익금 적립 (4)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없음 (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88관광개발(주)



기획재정위원회

1 한국수출입은행

1-1. 동일차주 신용공여 집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의거하여 개별기업 및 계열 앞 신용공여 규모를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타 은행 대비 신용공여한도가 2배 수준임

○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며,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내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함

[한국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규정]

수은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 은행별 신용공여한도를 비교하면,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타 은행은 모두 각각 20%, 25%인데 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40%, 50%로 2배로 나타남

[은행별 신용공여한도 비교]

(단위: %)

구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시중은행
동일인(개별기업)	**40**	20	20	20
동일차주(계열)	**50**	25	25	25

주: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자본 대비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기준이 타 은행 대비 2배로 높고 일부 기업들에 대한 여신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여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

◦ 2024년 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는 36조 6,315억원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규모의 26.2%가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기업들의 여신 규모가 2020년에는 14조 6,836억원으로 전체 여신 규모의 14.6%를 차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임
- 특히 2024년 기준 상위 1~3위 기업에 대한 여신금액은 16.4조원에 달하며, 2024년에 폴란드 방산과 관련하여 3.9조원의 신규 여신이 지원되었음

[한국수출입은행 상위 10대 기업 여신잔액]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전체 여신잔액(A)	1,008,686	1,082,532	1,265,805	1,272,681	1,392,738
상위 10대기업 여신잔액(B)	146,836	153,799	242,030	293,644	366,315
비중(B/A)	14.6	14.2	19.1	23.1	26.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3.3월말 당시 舊대우조선해양㈜이 한화계열로 편입될 경우, 한화계열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4월 금융위원회의 예외 승인[1]을 통해 시행령 규정상 한도에 대한 예외적 승인을 받기도 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의 금융위원회 예외 승인내역]

구분		주요내용
조선업 지원 (2010.8월)	기간	2010. 8월 ~ 2013. 8월
	예외 인정사항	주요 조선사 및 그 계열에 대한 한도 초과 (계열별 초과 인정금액 상이)
	사유	조선업 수주 증가로 신용공여한도 소진 감안, 원활한 선박 및 플랜트 수주 지원
	근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4호
기업결합 (2023.4월)	**기간**	**2023. 4월 ~ 2033. 4월**
	예외 인정사항	**한화계열 신용공여한도 7.5조원 초과**
	사유	**한화계열·대조양 기업결합 이후에도 신규 수주 및 해외사업에 필요한 금융 적기 지원**
	근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4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23.3월말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액은 17조 4,600억원으로 시행령상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따라 한화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금액이 8조 7,300억원이었으나, 舊대우조선해양㈜이 한화계열로 편입되면 신용공여금액 합산액이 8조 9,553억원으로 2,253억원 정도 시행령상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

1)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금융위원회 예외 승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내역]

(단위: 억원)

구분		은행자본금액	신용공여 한도금액 (A)	신용공여금액 (B)	한도 초과금액 (B-A)
조선업	K계열	70,218	35,109	43,990	8,881
	L계열	70,218	35,109	43,843	8,734
기업결합	**한화계열**	**174,600**	**87,300**	**89,553***	**2,253**

주: 2023.3.31. 기준 한화 계열과 대우조선 계열 단순 합산금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현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동일인, 동일차주 여신한도 기준은 2012년, 2018년에 각각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2012년 개정 이전 수준(40%, 50%)을 회복하였음

- 2012년의 경우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2018년에는 특정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여신 편중 제한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가 다시 하향되었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의 신용공여한도 개정연혁]

시기	구분	개정 내용	개정 배경·사유
2012.9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의 40% → 60%	원활한 중장기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 등 지원 목적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의 50% → 80%	
2018.8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의 60% → 40%	특정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여신 편중 제한으로 경영 건전성 제고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의 80% → 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및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것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하여 他은행 2배 수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2018년 8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당시 특정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여신 편중 제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인·동일차주 한도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2배로 높은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 계열에 신용공여가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동일인·동일차주 여신 규모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1-2.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현황 및 개선점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에 도입됨(「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법”)

◦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도입·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함

◦ 2024년에 발행하는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이 있었으며,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원화기준 10조원)에 대하여도 국가보증이 이루어졌음[1)]

[2025년도 국가채무보증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발행액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보증액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기간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국가채무보증 승인)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 및 경쟁력 있는 금리 지원을 위해 2025년도에 발행하는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본회의 의결('24.12.26자)

1-2-1.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규모 확대 노력 필요

가. 현 황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현황

○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방식은 대출, 보증, 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구분됨

[지원 방식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승인(약정)		집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39	39,064	25	12,679
투자(간접투자)	2	1,200	1	93
합계	41	40,264	26	12,771

주: 기금 출범('24.9월) ~ '25.5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원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승인(약정)		집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제안보품목 등의 확보·도입·공급	36	33,632	23	10,809
국내외 시설투자	4	5,632	2	1,870
기술도입 개발·상용화	-	-	-	-
기타(블라인드 펀드)	1	1,000	1	93
전체	41	40,264	26	12,771

주: 기금 출범('24.9월) ~ '25.5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점 지원부문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승인(약정)				집행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비중)		금액(비중)	
첨단전략산업	12	(29.3)	18,950	(47.1)	8	(30.8)	4,081	(32.0)
자원안보	8	(19.5)	11,610	(28.8)	6	(23.1)	5,430	(42.5)
국민경제 필수재	17	(41.5)	8,201	(20.4)	11	(42.3)	3,168	(24.8)
물류 인프라·서비스	3	(7.3)	503	(1.2)	-	-	-	-
기타 (블라인드펀드)	1	(2.4)	1,000	(2.5)	1	(3.8)	93	(0.7)
전체	41	(100.0)	40,264	(100.0)	26	(100.0)	12,771	(100.0)

주: 기금 출범(2024.9월) ~ 2025.5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공급망안정화펀드 출자 및 투자 현황

○ 공급망안정화펀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선제적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됨

-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1,000억원을 출자(총 2,000억원)하여, 총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였음[2)]

○ 실제 공급망안정화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을 보면 4개 운용사 중 3개 운영사의 펀드가 결성되어 2025년 5월 기준 총 1조 6,422억원 규모가 조성되었고, 세부펀드별 투자금액 합계는 총 2,394억원 규모임

2) ① 수은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합산 약정액의 1.5배 이상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에 투자 ② 수은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합산 약정액의 1.5배 이상을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해외투자 등 해외진출 지원에 투자

[공급망안정화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원)

운용사	수은 출자	기금 출자	조성금액			결성일
			정부 · 공공[1]	민간	합계	
아이엠엠 인베	350	350	4,330	4,762	9,092	2025. 1월
한국투자 PE	350	350	1,950	3,380	5,330	2025. 3월
코스톤아시아	150	150	1,055	945	2,000	2025. 2월
파라투스 인베	150	150	-	-	-	결성 예정
합계	1,000	1,000			16,422	-

주: 1) 수은과 기금의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출자자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출자금액 합계를 기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운용사별 세부 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펀드명	결성일	존속기한	투자기간	약정금액	투자금액
페트라9호	'25. 1월	~'33. 7월	~'27. 7월	9,092	2,387
한국투자2024	'25. 3월	~'32. 12월	~'28. 12월	5,330	-
코스톤성장전략3호	'25. 2월	~'34. 12월	~'29. 12월	2,000	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주요 쟁점

❑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한도가 10조원으로 증액되었는바, 2024년도의 국가보증 규모 5조원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였고 공급망 지원 사업이 여전히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지원 실적을 확대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채무보증은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임

◦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국가보증한도는 5조원이었으나, 2024년 지원승인(약정) 규모가 2.1조원 규모로 국가채무보증 승인 규모 5조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실제 집행액의 경우 2024년 채권발행액 4,000억원 대비 1,439억원만이 집행되었음[3)4)]

◦ 한편, 2025년의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승인 규모가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2배 확대되었는바, 2025년 5월 기준 신규 승인액은 1.9조원, 실제 집행액은 1.1조원 수준임

[공급망안정화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5월
국가채무보증 승인 규모	50,000	100,000
채권발행액	4,000	10,900
승인(약정)액	21,119	19,145
실제 집행액	1,439	11,3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서 2025년도 자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추정하여 9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국가보증동의를 요청하였음

3) 2024년도 국가보증한도 대비 지원 승인(약정) 규모가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국가보증한도 승인시('24.2월)에는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24.6월)과 동시에 기금 출범을 가정하였으나, 계획 대비 늦은 2024. 9월 말부터 자금지원을 개시하여 2024년 운용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4)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승인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승인 후 기업 필요시점에 맞춰 자금 인출 권한을 부여하는 기금의 대출 구조에 기인하며, 특히 중장기성 시설자금의 경우 공정단계별로 분할 집행되는 바, 승인 이후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하며, 또한 대출 승인 후 기업의 경영상 판단, 외부 투자유치, 일정 변경 등으로 집행이 보류·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승인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임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자금수요 추정]

(단위: 조원)

지원비율	2025	
	외부 연구용역	실수요 기반
Case 1(보수적, 80%)	8.2	8.6
Case 2(적극적, 90%)	9.3	9.7
Case 3(도전적, 100%)	10.3	10.8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가채무보증 필요규모 추산]

(단위: 조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대출집행(A)[1)]	9.7	9.7	9.7	9.7	9.7	9.7
대출회수(B)	0.3	4.9	7.3	8.1	8.7	9.3
채권상환(C)	-	2.5	5.0	6.9	6.2	8.3
필요자금(D=A-B+C)	**9.4**	**7.3**	**7.4**	**8.5**	**7.2**	**8.7**
유동성대응자금[2)](E)	0.5	0.5	0.5	0.5	0.5	0.5
국가채무보증 필요규모(F=D+E)	**9.9**	**7.8**	**7.9**	**9.0**	**7.7**	**9.2**

주: 1) 과도한 국가채무보증 규모 증가 방지를 위해 기금 규모를 10조원 이내로 유지 가정
2)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자료 : 기획재정부

○ 그러나, 실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승인 및 집행 실적을 보면 2025년도는 5월 기준 1조 9,145억원이 승인되었으며, 집행금액은 1조 1,332억원에 불과한바, 기획재정부가 당초 예상한 2025년도 필요자금 규모 9.4조원 대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지원 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월별 공급망안정화기금 승인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2024	9월	1,520	-
	10월	7,860	265
	11월	4,225	416
	12월	7,514	758
2024년 합계		**21,119**	**1,439**
2025	1월	-	3,642
	2월	400	2,970
	3월	620	557
	4월	2,780	3,302
	5월	15,345	862
2025년 합계		**19,145**	**11,3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국가채무보증 규모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였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국가채무보증 규모도 2배 증가하였음에도 지원 실적이 예상 대비 저조한바, 기금 출범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2.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필요

가. 현 황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비중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공급망안정화화기금의 승인액 2조 1,119억원 중 대기업 비중이 1조 8,560억원으로 87.9%를 차지하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하여는 약 1,560억원(7.4%)이 지원되고 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승인(약정)				집행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비중)		금액(비중)	
중소기업	8	(36.4%)	759	(3.6%)	6	(35.3%)	318	(4.7%)
중견기업	3	(13.6%)	800	(3.8%)	3	(17.6%)	800	(11.8%)
대기업	**10**	**(45.5%)**	**18,560**	**(87.9%)**	**7**	**(41.2%)**	**5,591**	**(82.5%)**
기타	1	(4.5%)	1,000	(4.7%)	1	(5.9%)	72	(1.1%)
전체	22	(100%)	21,119	(100%)	17	(100%)	6,781	(100%)

주: 2025.2.14자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분석의견

❑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지원금액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저조하므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보면 승인 및 집행 모두 대기업 지원(금액) 비중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소기업

의 비중은 5% 미만으로 기금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은 충분한 사업 추진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대기업의 건별 지원금액이 중소·중견기업의 건별 지원금액 대비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지원 건수 기준으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건수가 많다는 설명임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가 선정한 "선도사업자[5]"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자체 사업발굴을 통한 기금운용심의회 인정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어 선도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6] 그런데 2025년 5월 기준 선정된 선도사업자 수 및 구성비율만으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금액을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공급망안정화기금 선도사업자의 기업규모별 비중]

(단위: 개, %)

구분	선도사업자 수	비중
대기업	27	27.3%
중견기업	30	30.3%
중소기업	42	42.4%
합계	99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중에는 인력이 부족한 소부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들도 다수라는 점에서 홍보·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5.1.23.에 시작된 중소·중견기업 대출지원을 위한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7]은 신용도가 다소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5)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6) 2024년 안정화 선도사업자 99개사가 선정되었으며 2025년 추가 선정(상·하반기 각 1회) 예정

7)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이 1,5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500억원 한도 보증을 제공하며(보증비율 85%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여 신용도를 보강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대출을 지원하는 것임. 다만, 아직 프로그램 도입 초기로 2025년 5월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자금 수요 예측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비중이 작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활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해당 보증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0.5%p까지 우대

1-3.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실적평가 개선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임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평가는 이중 소관 구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됨

○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함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소관 구조]

관리주체	평가영역	근거
기획재정부	주요사업 평가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경영관리 부문 평가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경영관리 부문(40점)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계량지표 17.5점, 비계량지표 22.5점으로 구성됨
- 주요사업 부문(60점)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계량지표(건전성 관리 지표 포함) 35점, 비계량지표 25점으로 구성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실적평가 평가배점 및 평가결과(2023년도)]

분야	세부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경영 관리 (금융 위원회)	계량 지표	고객만족도	1.0	1.0
		인권경영	1.0	1.0
		국민 소통	2.0	2.0
		1인당 부가가치	1.0	1.0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2.0	1.96
		이익목표달성도(충당금 적립전)	4.0	4.0
		ROA(총자산순이익률)	2.0	2.0
		계량관리업무비	2.0	1.87
		총인건비인상률	2.0	2.0
		정부 권장정책 대응 및 업무지원	0.5	0.5
		개량지표 소계	17.5	17.33
	비계량 지표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노력	3.0	정성적 서술
		정부 권장정책 대응 및 업무지원	2.5	
		안전 및 재난관리	2.0	
		적극적 채용관리	3.0	
		합리적 인사관리	3.0	
		내부성과평가 적정성	3.0	
		효율적 조직관리	4.0	
		보수 및 복리후생	2.0	
		비계량지표 소계	22.5	-
	경영관리부문 소계		40.0	-
주요 사업 (기획 재정부)	계량 지표	자금공급목표 달성	6.0	6.0
		자금조달목표 달성	4.0	4.0
		혁신성장산업 지원	3.0	3.0
		첨단전략산업 지원	2.0	2.0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3.0	3.0
		일자리창출 성과(Output)	4.0	4.0
		기관별 맞춤형 지원(정부 수탁기금 관리)	3.0	3.0
		계량지표 소계	25.0	25.0
	비계량 지표	국가전략산업 지원	8.0	정성적 서술
		전략시장 발굴 및 지원	5.0	
		기금 수탁업무의 효과적 수행	4.0	
		중소중견기업 지원	4.0	
		지속가능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4.0	
		비계량지표 소계	25.0	-

분야	세부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건전성 관리 지표	BIS기준자기자본비율	2.0	2.0
		연체대출채권비율	2.0	2.0
		대손충당금적립률	2.0	2.0
		외화유동성비율	2.0	2.0
		외화유동성갭비율	2.0	2.0
		건전성 관리 지표 소계	10.0	10.0
	주요사업부문 소계		60.0	-
합계			100.0	-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및 한국수출입은행「2023년도 경영평가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 경영평가의 경영관리 부문과 주요사업 부문 모두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적 기술만 제시하고 있어 평가결과 공개가 불완전함

○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실적평가의 경영관리 부문은 금융위원회의 국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주요사업 부문은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이루어짐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관리 부문 평가 결과가 포함된 「2023년도 국책금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는 총평 위주의 서술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관별 종합등급이나 총점, 세부점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평가 대상인 국책금융기관별로 계량지표의 경우 세부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나 비계량지표의 경우 "비계량지표 부문 또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정성적 기술로 대체되어 있으며, 개별 항목별로 "만점 획득" 등의 표현은 있으나 정량적 수치의 비교가 어렵게 구성됨
- 한국수출입은행 경우에도 경영관리 부문의 계량지표는 구체적인 배점과 평가결과를 수치로 명시하고 있으나, 비계량지표는 지표별 점수를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 기술로 대체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역시 비계량지표 부분이 정성적 서술로 구성되어 정량적 성과 측정의 한계를 보임

- 계량지표의 경우 평가지표 항목별로 세부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점수를 알 수 있는 총괄요약표가 부재하여 평가결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려움
- 비계량지표의 경우 정성석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지표의 당해연도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성과 개선 여부와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첫 번째 지표인 '국가전략산업 지원'[1] 중 하위 지표인 '조선·해양산업 금융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수출입은행은 수주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사 및 중소중견 협력사 앞 대출지원을 전년대비 20%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관련 RG발급 비중을 확대하여 우리 조선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국내 해운사 앞 친환경 선박 금융 비중 또한 확대하여 해운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맞춤형 선박금융을 적기 제공하는 등 국적선사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뒷받침하였다. 아울러, 해외 선주 앞 금융지원을 '14년 이래 최대 규모인 31억불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 및 분야도 다양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수출입은행 최초로 해상풍력터빈설치선 수출을 지원하는 등 해외 선주의 친환경선 도입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상 탄소중립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견인하였다고 평가된다."

○ 비계량지표의 경우 경영관리부문 22.5점, 주요사업부문 25점으로 전체 100점 중 47.5점(47.5%)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기관의 종합적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기관간 비교가 제한됨

---

1) ① 혁신성장산업 금융지원 강화, ② 건설·플랜트산업 금융지원 노력, ③ 조선·해양산업 금융지원 노력, ④ 주요 수출산업(자동차, 전기전자 등)경쟁력 강화 노력의 하위 세부지표로 구성

❑ 평가체계의 자기점검 기능이 부재함

○ 현행 평가체계는 단순히 기설정된 목표 달성 여부만 평가하고, 목표 자체의 적절성은 평가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가짐

- 이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어려움[2)]
- 참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주요사업의 평가지표(사업)별로 성과관리의 적정성과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고 있음

○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결과보고서 상에는 설정된 목표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이 목표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기관의 정책적 역할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경영실적평가결과는 인사 및 예산, 성과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중요함

○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기관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며, 등급에 따라 기관장은 기본연봉 대비 0~100%, 임원은 0~80%, 직원은 월기본급 대비 0~200%의 성과급이 차등지급됨

- 또한 평가등급은 예산·정원 승인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예산승인 등과 연계하여 위반비율에 상응한 예산삭감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기재부훈령 제 6조(평가편람의 작성)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별 성과관리의 적정성과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확인·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함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점		95점이상	95점미만 ~ 85점이상	85점미만 ~ 75점이상	75점미만 ~ 65점이상	65점미만 ~ 60점이상	60점미만
지급률	기관장 (기본연봉 대비)	100%	83%	58%	25%	0%	0%
	임원 (기본연봉 대비)	80%	72%	60%	44%	0%	0%
	직원 (월기본급 대비)	200%	180%	150%	110%	0%	0%

자료: 2023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경영평가 보고서

◦ 2023년부터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되도록 개선되었으며,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매뉴얼」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평가등급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홈페이지에 경영평가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개편 과정에서 기존 공시자료 게시판이 삭제되는 기술상의 문제 발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2025년 8월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78여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누락이 발생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평가는 성과급과 예산 승인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체 배점의 47.5%를 차지하는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적 기술로 인한 객관적 평가의 한계, 목표 설정 적절성에 대한 자기점검 기능 부재 등 경영실적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투자공사

2-1. 적정 수준의 배당 유지 필요

가. 현 황

❑ 한국투자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1]에 따라 2005년 7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됨

- ○ 정부 등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과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 중
- ○ 2024년 8월 말 원금 기준 총 1,186억 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자산 규모는 2,063억달러이며 전통자산 1,619억달러, 대체자산 444억달러 등임

[2024년 8월 말 기준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성과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순자산가치	비중	투자수익률[2]
전통자산	주식	819	39.7	6.27
	채권	661	32.0	2.60
	소계	1,619	78.5	4.98
대체자산	헤지펀드	54	2.6	5.60
	사모주식	154	7.5	9.49
	부동산·인프라	188	9.1	7.05
	소계[1]	444	21.5	7.80
합계		2,063	100.0	4.84

주: 1. 소계는 물가채권, 현금, 자산배분, 혼합형 사모채권 등 포함
2. 누적 연환산수익률을 의미
자료: 한국투자공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투자공사의 영업수익의 대부분은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수료이고, 영업비용의 대부분이 자산 운용을 위한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에 해당

◦ 한국투자공사의 영업수익의 89.23%가 수수료 수익이고, 영업비용의 97.3%가 수수료비용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함

◦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이 존재하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설립 취지상 신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적음

[한국투자공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구성내역]

(단위:백만원, %)

구분		금액	비중
영업수익	수수료수익	348,545	89.23
	외환거래이익	13,577	3.4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3,897	3.56
	이자·배당금수익	14,577	3.73
	대손충담금환입액	3	0
	합계	390,599	100
영업비용	수수료비용[1)]	120,465	53.22
	외환거래손실	6,105	2.70
	인건비[2)]	54,478	24.07
	인건비 제외 일반관리비	45,289	20.01
	합계	226,377	100

주: 1) 자산의 간접운용을 위해 외부 운용사에게 자산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2) 일반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만을 포함
자료: 한국투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투자공사의 정부배당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배당 수준을 점차 높여가는 추세임

◦ 현재와 같이 정부배당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투자공사의 운영 기능상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국투자공사의 연도별 배당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당기순이익	967	1,680	801	944	1,264
배당금	580	1,176	641	944	1,138
배당성향	60	70	80	100	90
내부유보금	387	504	160	0	126

자료: 한국투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투자공사는 인력 활용 위주로 운영되며 이익의 내부 유보를 통한 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기관임

◦ 한국투자공사의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볼 때, 실제 대부분의 투자 금액이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의 연도별 투자 현금흐름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63	1,758	1,521	1,917	3,672
예금증가	정기예금 증가	1,401	1,650	900	1,500	3,650
	양도성 예금증서 증가	-	50	600	401	-
	총합	1,401	1,700	1,500	1,901	3,650
비율		95.76	96.70	98.62	99.17	99.40

주: 비율의 경우 (예금증가 총합/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내부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한국투자공사의 금융자산을 늘리는데 활용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고유 금융자산은 크게 현금 및 예치금과 유가증권으로 구분되고, 유가증권의 대부분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서 부동산 사모펀드임

◦ 특히 해당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투자공사가 위치한 본사 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해당함[2)]

❑ 한국투자공사의 배당금은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환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배당금을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7월 설립 당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출자받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

◦ 한국투자공사의 배당은 100% 외국환평형기금으로의 환류가 이루어짐

◦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 외환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 절하)에 대응하여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하며,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절상) 시에는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

◦ 외국환평형기금이 이와 같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외화·원화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 최근에는 정부에서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

2)

(단위: 억원)

구분	투자 건물명	2024년 말			2023년 말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장부금액
이지스사모부동산 투자신탁 4-1호	신라스테이	274	284	284	281
미래에셋맵스코어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2-3호	스테이트타워 남산 (본사 거주 건물)	1,100	1,685	1,685	1,548
합계		1,374	1,969	1,969	1,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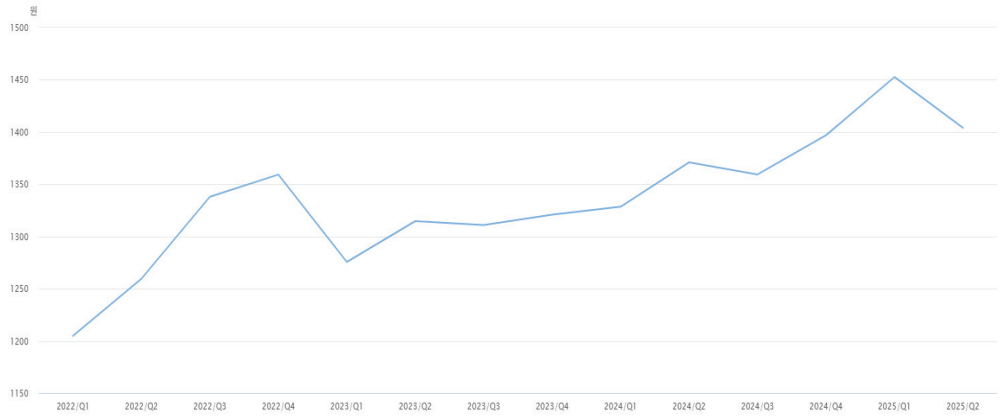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공사

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방향성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정 수준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

○ 또한 미국발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야기된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이 급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국가 채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분기별 환율변동 현황]



자료: 한국은행 ECOS

[2020~2024년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용규모	443,098	463,118	423,164	420,148	415,604
증감률	8.39	4.52	△8.63	△0.71	△1.08

주: 운용규모의 경우 결산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은행 ECOS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런 점에서 지금과 같이 90% 이상 수준의 배당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정 수준 재원 확보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음

❑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운용위탁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규모 당기순이익 발생에 대하여 향후 한국투자공사가 수취하는 운용수수료 규모 자체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2.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자금의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이를 운용하고 있음

◦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에 따라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자산 위탁에 있어서 특수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금을 위탁한 사례가 존재

◦ 2015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50억 달러를 위탁하였고, 2019년과 2021년에 친환경 해외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5억 달러 및 7억 유로 위탁

[기획재정부의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산 위탁 사례]

연도	위탁금액	목적
2015	50억 달러	해외 인수합병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공통투자에 우선 활용
2019	5억 달러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 투자에 우선 활용
2021	7억 유로	친환경적인 해외 프로젝트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5년에 해외 인수합병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공통투자에 우선 활용되도록 위탁된 50억 달러는 아직 집행되지 않음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나. 주요 쟁점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된 자금이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공동투자에 활용하도록 위탁된 50억 달러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주식, 채권에서 운용 중임

◦ 한국투자공사는 2024년 3월에 전략적 투자[1] 전담 부서인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3인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위탁자산운용규정」[2]을 개정하여 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국내기업 및 국내외 운용사들과의 미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방향성을 점검하고 잠재적 투자 파이프라인을 확보 중이라는 입장임

❑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현재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임

◦ 적절한 투자처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신속한 투자가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

- 환율변화에 따른 투자 금액의 높은 변동, 관세 변수로 인한 투자지역 설정 및 투자 타당성 재검토, 매크로/본업 불확실성에 따른 해외사업 확신의 부재 등으로 인한 대외변수로 인해 투자 의사결정이 중단되고 있음

-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높은 밸류에이션 차이도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임

---

1) 「위탁자산운용규정」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략적 투자”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공동으로 투자하는 등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자산과 별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집행되는 투자를 말한다.

2) 「위탁자산운용규정」 제6조(투자위원회) ④ 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본 규정 및 「위탁자산운용세칙」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략적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 처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다만, 한국투자공사가 10년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적절한 투자처를 모색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검토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자금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의 위탁을 해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외화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운용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반면, 해외진출기업 지원과 같은 개별 투자나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있는바, 해당 기관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조폐공사

3-1. 민간기업이 진입가능한 지역의 지역화폐 운영 축소 검토 필요

가. 현 황

❑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임[1)]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은 크게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기타매출액으로 구성됨

-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상품매출액 908억 5,500만원, 제품매출액 4,060억 8백만원, 기타매출액 551억 3,700만원임
- 상품매출액은 골드바, 면펄프 등의 판매로 발생하고 제품매출액은 은행권 및 기념주화, 특수잉크 등의 판매로 발생하며 기타매출액은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신분증 등의 사업을 통해 발생함

❑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 중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 중 총 40.55%를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2025년 5월 기준 총 217개의 지역화폐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조폐공사가 88개의 지역화폐를 운영 중임

[2025년 기준 지역화폐 운영사 현황]

(단위: 개, %)

구분	한국 조폐공사	코나 아이	비즈 플레이	한국 간편결제 진흥원	나이스 정보통신	농협 등 금융기관	기타	합계
경남	13	2	-	16	-	4	-	35
경기	2	29	-	-	-	-	-	31
강원	14	8		2	-	1	1	26
서울	-	-	26	-	-	-	-	26
경북	12	5	-	1	3	1	2	24
전남	20	2	-	-	-	-	-	22
충남	12	1		-	1	-	1	15
전북	8	-	1	-	4	-	1	14
충북	7	3	-	-	1	-	-	11
부산	-	2	-	-	-	-	1	3
대전	-	1	-	-	-	-	1	2
인천	-	1	-	-	-	-	1	2
제주	-	-	-	-	1	1	-	2
광주	-	-	-	-	-	1	-	1
대구	-	-	-	-	-	1	-	1
세종	-	-	-	-	-	-	1	1
울산	-	1	-	-	-	-	-	1
합계	88	55	27	19	10	9	9	217
비율	40.6	25.3	12.4	8.8	4.6	4.1	4.1	100.0

주: 기타는 지자체 직영, KT, 아이티에스, KIS정보통신 등으로 구성됨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현재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2015.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기능 중 민간경합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운영 중에 있음

◦ 2025년 공기업·준정비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기관의 직접적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민간경합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축소하여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3-2. 중증장애인생산품 4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가. 현 황

❑ 한국조폐공사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68%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로, 전체 공공기관 중 244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조폐공사는 미달성

[한국조폐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37개 기관	25,192,155	322,312	1.28
한국조폐공사	68,126	460	0.68

자료: 한국조폐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조폐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1년 0.64%, 2022년 0.34%, 2023년 0.82%, 2024년 0.68%로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4년간 한국조폐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74,865	479	0.64
2022	99,097	333	0.34
2023	52,218	429	0.82
2024	68,126	460	0.68

자료: 한국조폐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위원회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기금의 형태로 운영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의 주요 수입은 가입자, 학교법인, 국가가 납부하는 연금부담금과 기금의 적립금을 투자·운용하여 얻는 수익,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수입임

○ 한편, 지출은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과 같은 급여지급과 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다양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구성됨

[사학연금기금 재정구조]

항목			주요 내용
수입	자체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연금부담금)	◦ 연금부담금 - 피고용자부담금(개인) - 고용주부담금(법인) ◦ 재해보상부담금(법인) ◦ 퇴직수당부담금(법인)
		운용수익	◦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 자금운용에 따른 수입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 관유물대여료, 경상이전수입, 잡수입, 융자원금회수(국고대여학자금, 생활안정자금대여 회수)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정부내부수입		◦ 연금 및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전입금 수입
지출	사학연금급여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각종 연금 및 일시금 - 연금급여: 연금 및 일시금 등 -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 퇴직수당급여: 교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따른 퇴직수당
	기금운영비 및 기타		◦ 기금운영비와 회관건립 및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고객지원, 국고대여학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으로 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2025.8.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을 살펴보면, 2020년 6.2조 원에서 2024년 6.8조 원으로 약 10.0%의 증가율을 보임

◦ 주요 재원인 사회보장기여금은 같은 기간 3.3조원에서 3.6조원으로 9.2% 증가했고, 국가부담금도 0.9조원에서 1.0조원으로 12.9% 증가하였음

◦ 기금운용수익은 7,183억 원에서 1조 3,169억 원으로 83.3%가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사학연금기금 수입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계	62,095	75,895	72,863	66,460	68,319	6,224	10.0
사회보장기여금	33,338	34,425	35,152	36,266	36,399	3,061	9.2
개인부담금	17,800	18,175	18,371	18,861	18,894	1,094	6.1
법인부담금	15,538	16,250	16,781	17,405	17,504	1,966	12.7
기금운용수익	7,183	20,586	17,330	9,845	13,169	5,986	83.3
기타	12,615	11,477	10,504	9,449	8,639	△3,976	△31.5
정부내부수입 (국가부담금)	8,959	9,407	9,877	10,900	10,112	1,153	12.9

주: 2020~2024년 결산액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2025.8.)을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사학연금기금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2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23.6% 증가함

◦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지출의 경우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5.6조원으로 44.6% 증가하였음. 그 중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급여를 제외한 연금급여 지출이 3.2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하여 급여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같은 기간 사학연금기금 수입의 증가율이 10.0%임을 고려할 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학연금기금 지출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계	51,637	54,545	57,071	61,236	63,825	12,188	23.6
급여지출	39,049	41,812	46,831	52,189	56,461	17,412	44.6
연금급여	31,683	34,374	38,597	43,624	48,177	16,494	52.1
재해보상급여	465	448	521	525	540	75	16.1
퇴직수당급여	6,901	6,990	7,713	8,040	7,744	843	12.2
기금운영비 및 기타	12,588	12,733	10,240	9,047	7,364	△5,224	△41.5

주: 2020~2024년 결산액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2025.8.)을 바탕으로 재작성

❑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흑자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5년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흑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1.0조원에서 2021년 2.1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6조원, 2023년 0.5조원, 2024년에는 0.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데에 기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요인으로 작용함

◦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적자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적립금은 점차 감소하여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1)]

1)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2025.8., p.190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C=B-A)	증감률 (C/A)
수입	62,095	75,895	72,863	66,460	68,318	6,223	10.0
지출	51,637	54,545	57,071	61,236	63,825	12,188	23.6
수지	10,458	21,350	15,792	5,224	4,493	△5,965	△57.0
적립금	232,046	260,433	240,441	263,607	281,050	49,004	21.1

주: 1. 적립금은 각 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며 결산 기준임
2.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연금회계·퇴직수당특별회계·재해보상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5.7.

❑ 사학연금기금의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수입 확대 방안 마련 및 지출 구조의 합리적 조정 등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폐교 등으로 사립학교 교원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조기 퇴직자 및 연금 수급자 증가로 지출이 확대되어 기금의 재정 수지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단기적으로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른 기금 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급자의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사학연금기금은 연간 수입의 일부를 연금급여 등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재원을 적립하여 투자 등을 통해 기금운용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 사학연금기금은 금융기관 예치나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자금 대여,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기금 증식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됨

[사학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구분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3 제2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제3항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 제외) 6.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7.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2025.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은 채권, 주식, 대체투자, 단기자금으로 구성되며, 2014~2024년간 평균적으로 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 대체투자의 순임

◦ 채권의 비중은 연평균 40.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추이를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임

◦ 반면, 주식의 비중은 2014년 대비 2024년에 8.15%p 상승하였음. 특히 해외주식의 비중이 2014년 5.08%에서 2024년 23.19%로 늘어나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같은 기간 대체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5.38%에서 27.85%로 크게 증가하였음

[연도별·자산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2014~2024)]

(단위: %, %p)

구분			2014 (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	평균	증감 (B-A)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중장기	단기		1.92	1.98	2.18	0.69	1.49	0.77	1.95	1.48	1.58	1.38	1.04	1.50	△0.88
		채권	54.00	49.98	47.36	43.65	43.36	38.05	34.67	34.75	34.46	36.23	34.26	40.98	△19.74
		주식	28.71	32.04	34.66	39.61	35.59	39.94	42.73	42.49	39.21	37.61	36.86	37.22	8.15
		국내	23.63	23.75	24.42	26.53	21.45	21.99	22.58	19.07	17.30	16.51	13.67	20.99	△9.96
		해외	5.08	8.29	10.24	13.08	14.14	17.95	20.15	23.43	21.91	21.10	23.19	16.23	18.11
		대체투자	15.38	16.00	15.80	16.05	19.56	21.23	20.66	21.28	24.75	24.78	27.85	20.30	12.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5.

❑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2014년~2024년간 평균 6.28%의 수준이며,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 이후로 11%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임

◦ 채권의 수익률은 2014년~2024년간 평균 3.26%로 같은 기간 전체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2%p 하락하였음

◦ 주식의 2024년 수익률은 14.57%로 전년 대비 8.48%p 하락하였음. 2024년 해외주식이 31.47%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이 7.15%의 손실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주식군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옴

◦ 대체 투자의 경우 평균 9.39%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해당 기간 동안 손실 없이 운용되었으나 연도별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임

[연도별 자산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2014~2024)]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전체			2.63	3.83	3.91	9.19	△2.39	11.15	11.49	11.95	△7.75	13.46	11.63	6.28
중장기	단기		2.59	1.81	1.50	1.46	1.67	1.70	0.89	0.75	2.38	3.97	3.83	2.05
		채권	6.41	4.32	2.93	1.21	4.84	4.55	1.80	0.23	△6.02	8.65	6.93	3.26
		주식	△5.64	1.53	4.31	22.71	△14.40	19.48	24.10	16.78	△17.35	23.05	14.57	8.10
		국내	△7.50	1.41	3.43	25.63	△17.92	12.03	34.43	5.70	△22.49	22.88	△7.15	4.59
		해외	6.22	0.88	5.77	16.09	△7.66	30.43	13.89	27.12	△13.26	23.14	31.47	12.19
		대체투자	5.96	7.70	6.33	4.72	8.49	10.97	5.16	25.03	8.28	6.43	14.24	9.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5.

○ 참고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기금은 평균 6.6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사학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해외주식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13.33%)을 나타냈으며, 대체투자 또한 10.76%로 높은 수익률을 보임. 한편, 채권에서 3.05%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2024년에는 국내주식에서 유일하게 손실이 발생(△6.94%)하였음

[연도별 자산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2014~2024)]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전체			5.25	4.57	4.75	7.26	△0.92	11.31	9.70	10.77	△8.22	13.59	15.00	6.64
금융부문			5.26	4.58	4.76	7.28	△0.93	11.33	9.72	10.79	△8.24	13.61	15.02	6.65
	단기		1.48	1.62	2.02	0.35	2.43	1.46	△0.06	1.10	△0.86	4.23	6.43	1.84
	중장기	채권	6.95	4.16	1.98	0.48	4.80	4.30	1.39	△0.16	△5.45	7.65	7.50	3.05
		주식	△0.06	2.98	7.79	18.70	△11.88	21.91	21.36	19.22	△16.32	23.30	21.48	9.86
		국내	△5.50	1.34	5.59	25.88	△16.77	12.58	34.89	6.73	△22.76	22.12	△6.94	5.20
		해외	9.45	5.37	10.63	10.62	△6.19	30.63	10.76	29.48	△12.34	23.89	34.32	13.33
		대체투자	12.27	12.19	9.91	4.53	11.80	9.62	2.38	23.80	8.94	5.80	17.09	10.76
복지부문			△1.68	△2.08	△1.35	△1.65	△1.52	△1.08	△2.90	△2.19	△0.27	0.94	1.06	△1.16
기타부문			1.41	0.72	0.63	0.61	0.95	1.11	0.63	0.46	1.15	2.09	2.14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5.

❑ 사학연금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자산별·연도별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산군별 전략적 배분 및 위험관리 체계 강화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률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장학재단

2-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필요

가. 현 황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대학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학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함

❑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지원구간[1]이 9구간까지 확대됨

  ○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주요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B학점(80점) 이상
  - (지원규모) 총 2조 9,674억원
  - (지원금액) 지원구간별 상이(연간 100만원~등록금 전액)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맞춤형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미혼자: 학생+부친+모친/기혼자: 학생+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을 10개로 분류하여 결정한 값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세부현황]

구분	현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연령 무관, 전학년
성적기준	· 신 · 편입생, 재입학생: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백분위 80/100점(B학점) 이상 - 기초 · 차상위는 백분위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 이수학점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미적용 ※ 1~3구간은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 적용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지원규모, 범위	· 2,967,387백만원 /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수업료)만 지원
지원기간	· 신청학기 ※ 최대 수혜 가능 횟수(개인별·학제별 한도) 범위 내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며, 연간 지원단가는 기초 · 차상위 구간은 등록금 전액에서 9구간은 100만원까지의 범위로 설정됨

○ 기초 · 차상위 구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하 가구인 경우 해당됨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자격 기준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9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경곗값		-	182.9	304.9	426.8	548.8	609.8	792.7	914.7	1,219.6	1,829.3
지원 단가	1학기	등록금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100
	2학기		600	600	600	440	440	440	360	360	100

주: 1.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분됨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300% 초과는 10구간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5년부터 신규 지원을 확대한 9구간의 월 소득인정액[2]은 1,221~1,82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초과 300% 이하 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 1,219.6만원 초과 1,829.3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됨

◦ 9구간에 대한 신규 지원은 2022년 이후 8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지원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 8구간의 연간 지원단가는 2021년까지 67.5만원이었으나, 2022년부터 2025년 1학기까지 3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25년 2학기부터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2) 월 소득인정액은 월 기준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에서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①+②-③)임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① 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③ 형제·자매 수 공제액
소득-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4.17%/3 자 동 차 : 4.17%/3 금융재산 :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2) ×1인당 공제액(40만 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곗값 및 연도별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2025년 기준 경곗값	연도별 지원단가(연간)				
			2018~	2022~	2024	2025 1학기	2025 2학기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520	700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30% 이하	183	520	520	570	570	600
2구간	50% 이하	305					
3구간	70% 이하	427					
4구간	90% 이하	549	390	390	420	420	440
5구간	100% 이하	610	368				
6구간	130% 이하	793					
7구간	150% 이하	915	120	350	350	350	360
8구간	200% 이하	1,220	67.5				
9구간	300% 이하	1,829	-	-	-	100	100
10구간	300% 초과	초과	-	-	-	-	-

주: 2022~2023년 기초·차상위 구간의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됨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규로 지원하는 9구간의 수혜자는 17.3만명 가량으로 전체 인원의 16.9%를 차지하여 향후 재정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25학년도 1학기 수혜인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수혜학생 102.5만명 중 9구간 대상자는 약 17.3만명으로 16.9%를 차지하여, 2025년 9구간까지 지원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인원]

(단위: 명, %)

구분		합계	기초 차상위	1~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자격 기준	30~70% 이하	9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2024	수혜자	944,504	110,946	311,709	97,997	49,839	143,740	88,889	184,450	-
	비율	100.0	11.2	31.6	9.9	5.0	14.6	9.0	18.7	-
2025 1학기	수혜자	1,024,524	98,460	272,373	84,458	41,932	124,450	75,156	154,288	173,407
	비율	100.0	9.6	26.6	8.2	4.1	12.1	7.3	15.1	16.9

주: 1. 2025.8.31. 기준
2. 위 표의 수혜자 합계에는 다자녀장학금 수혜 인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기별 구간 변동으로 인한 중복 인원을 제거한 순인원 기준으로 구간별 대상자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2025년 1학기 수치는 추후 변동 가능함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확대와 대학 등록금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구간별 지원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9구간은 대상자가 많아 지원 단가의 상승이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장학금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등을 포함한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수혜 인원 확대 필요

가. 현 황

❑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며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지원기준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로 소득수준 등 우선선발 기준을 반영한 자체 심사를 통해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함

◦ 기본요건은 성적기준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2025년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table>
<tr><td colspan="5">기본 요건</td></tr>
<tr><td>성적</td><td colspan="4">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td></tr>
<tr><td>소득</td><td colspan="4">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1)]</td></tr>
<tr><td colspan="5">우선선발 요건[2)]</td></tr>
<tr><td rowspan="2">경제적 수준</td><td>1순위</td><td colspan="2">2순위</td><td>3순위</td></tr>
<tr><td>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td><td colspan="2">5구간 이상~6구간 이하</td><td>7구간 이상~9구간 이하</td></tr>
<tr><td>우선선발</td><td colspan="4">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학생, 다문화 · 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td></tr>
</table>

주: 1)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2)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근로학생은 우선선발 요건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장학재단

◦ 2025년 기준, 국가근로장학금의 주요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원단가) 장학금 시급 단가(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시급 20% 이상, 교외: 대학 자율
- (최대근로시간) 일(8시간), 주(방학, 40시간), 월(학기, 80시간), 학기(640시간)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나. 주요 쟁점

❑ 2015년 대비 2024년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77.5%에서 62.7%로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근로장학금 수혜자 중 저소득층(기초·차상위에서 4구간까지)의 비율은 2015년 77.5%(84,870명)에서 2024년 62.7%(91,646명)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7구간에서 9구간까지)의 비율은 3.4%(3,741명)에서 16.2%(23,866명)로 증가함

[근로장학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합계	기준중위소득 기초·차상위~4구간	5~6구간	7~9구간	기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자격기준 ~90% 이하	~130% 이하	~300% 이하	10구간	미산정
'15	인원	109,571	84,870	4,077	3,741	1,134	15,749
	비율	100.0	77.5	3.7	3.4	1.0	14.4
'20	인원	119,468	84,783	11,524	11,727	1,376	10,058
	비율	100.0	71.0	9.5	9.9	1.2	8.4
'24	인원	146,397	91,646	17,874	23,866	1,215	11,796
	비율	100.0	62.7	12.2	16.2	0.8	8.1

주: 1. 학자금 지원구간 예외(긴급 경제적 위기 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은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여 10구간에도 대상자가 있음
2. 인원은 1,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상자의 단순 합계임(2024년은 미확정으로 변동 가능)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근로장학생 선발 절차상 기본요건(성적·소득)을 충족한 학생을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은 동 사업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 기회 제공과 학업 여건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별 선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함

◦ 동 제도는 2020년 1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고, 학자금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400만원 한도)로 구분됨

[등록금 대출 총한도]

구분		총한도
학부		한도없음
석사	일반 · 특수/전문기술	6,000만원
	전문/의 · 치의 · 한의계열	9,000만원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일반 · 특수	9,000만원
	전문/의 · 치의 · 한의계열	1억 2,000만원

자료: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 대출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898만원(2025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대상자로 분류되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함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5항[1]에 따라 결정하여 학기별로 연 2회 고시함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에 상환율(20% 또는 25%) 적용한 금액을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소득 유형별 의무상환액 산출기준]

소득유형	의무상환액
종합 · 근로 · 연금· 양도	(연간소득금액[1] – 상환기준소득)×상환율[2]
퇴직	퇴직소득금액×상환율[2]
상속 · 증여	상속 · 증여세 과세표준×상환율[2]

주: 1)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연금소득: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액
2) 상환율: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최근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동시에 상환유예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미상환비율(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13.8%에서 2024년 1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는 2024년 기준, 상환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100명 중 약 16.5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연도별 의무상환대상자 상환실적 추이]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상환비율		미상환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0	259,219	309,492	222,983	266,841	86.0	86.2	14.0	13.8
2021	273,322	333,696	233,977	285,581	85.6	85.6	14.4	14.4
2022	291,830	356,886	247,614	301,696	84.8	84.5	15.2	15.5
2023	318,395	403,693	267,279	337,548	83.9	83.6	16.1	16.4
2024	328,539	427,469	274,298	353,435	83.5	82.7	16.5	17.3

주: 각 연도 자료에는 전년도 미상환(체납)분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참고

○ 대학생 또는 실직·폐업 및 육아휴직 등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의무상환대상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데,[2] 상환유예 대상 인원 및 금액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상환유예자 현황을 보면, 대학생은 2,338명으로 2020년(1,07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사유자는 11,753명으로 2020년(6,731명) 대비 74.6% 증가함

[연도별 상환유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0	1,071	1,375	6,731	9,445
2021	1,053	1,436	6,628	9,378
2022	1,133	1,698	7,892	12,272
2023	1,950	3,335	10,067	15,937
2024	2,338	4,189	11,753	19,0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참고

❑ 한편, 2025년 기준 총급여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월 237.5만원으로,[3] 이는 최저임금 월 209.6만원[4]보다 23.9만원(13.3%) 가량 높은 수준임

○ 「최저임금법」 제1조[5]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임

2) 유예기간: 대학생 4년,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2년

3) 2025년 상환기준소득은 연간 1,898만원으로 이를 총급여로 환산하면 연간 2,851만원으로 산출됨

4)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4.7.12.

5)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총급여액 환산기준) 및 최저임금 비교]

상환기준소득(월) (A)	최저임금(월) (B)	차이	
		금액 (C=A-B)	비율 (C/B)
2,375,830원	2,096,270원	279,560원	13.3%

주: 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저소득 청년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 상향 및 상환율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사학진흥재단

3-1. 사학진흥기금의 사립학교 미수채권 관리 강화

가. 현 황

❑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2개 기금에서 미수채권을 보유 중임

◦ 2024년 말 기준으로 구성된 미수채권은 1,193억원이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305억원을 차감한 장부가액은 888억원임

◦ 2024년 말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5.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음

[교육부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금 설정률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단기	미수채권(A)	912	865	979	1,193	1,166	254
	대손충당금(B)	194	185	187	241	279	86
	대손충당금설정률(B/A)	21.3	21.3	19.1	20.2	24.0	2.7
	장부가액	718	681	792	951	886	168
장기	미수채권(A)	25	26	26	26	27	2
	대손충당금(B)	25	25	25	25	25	0
	대손충당금설정률(B/A)	100.0	94.8	97.0	97.0	92.4	△7.6
	장부가액	0	1	1	1	2	2
합계	미수채권(A)	937	892	1,005	1,218	1,193	256
	대손충당금(B)	219	210	212	266	305	86
	대손충당금설정률(B/A)	23.4	23.5	21.1	21.9	25.5	2.2
	장부가액	718	682	792	952	888	170

주: 미수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자료: 교육부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일부 사립학교가 최근 경영난과 폐교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수채권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의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수행 중이며, 융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여금 계정에서 미수채권(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계정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동 미수채권 규모는 2020년 253억원 이후 2022년까지는 소폭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3년에 100억원을 융자한 사립학교 중 1개교가 폐교됨에 미수채권(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으로 전환하였고, 동 융자금에 대하여 1차년도(2023년)에 50%, 2차년도(2024년)에 나머지 5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에 대손충당금이 급증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0년 23.9%에서 2024년에는 46.9%까지 확대되었음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미수채권(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및 대손충당금 설정률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미수채권(A)	253	213	215	305	290	37
대손충당금(B)	60	50	47	93	136	76
대손충당금설정률(B/A)	23.9	23.5	21.7	30.4	46.9	23.0
장부가액	192	163	169	212	154	△38

주: 미수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자료: 교육부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현재 교육부는 기금관리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2024년도부터 미수채권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청렴감사실)를 배치하고, 미수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상환능력심사 지표 강화 및 정기적

재평가 등 미수채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 경영난 등 재정 악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미수채권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1 한국방송공사(KBS)

1-1.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 약화 문제

가. 현 황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기관으로,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는 「방송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기관으로,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방송광고, 콘텐츠 유통수익, 협찬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시청 행태의 다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공영방송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KBS의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5개년(2020~2024회계연도) KBS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무 규모와 수익성 모두 하락세임

◦ 자산총계는 2020년 1조 2,727억원에서 2024년 1조 1,679억원으로 8.2%(1,048억원) 감소

◦ 자본총계는 2020년 7,216억원에서 2024년 6,380억원으로 11.6%(836억원) 감소

◦ 당기순손익은 2020년 327억원 흑자에서 2024년 735억원 적자로 전환되어, 1,062억원이 감소

-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한국방송공사 재무 및 손익 현황(2020~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자산총계	12,727	13,541	13,952	12,784	11,679	△1,048 (△8.2)
부채총계	5,511	5,773	6,291	5,774	5,299	△212 (△3.9)
자본총계	7,216	7,768	7,662	7,010	6,380	△836 (△11.6)
매출액	13,622	14,580	14,825	13,865	12,974	△648 (△4.8)
영업이익	△140	△71	△90	△645	△881	△741 (△529.3)
당기순손익	327	393	△118	△553	△735	△1,062 (△324.9)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무비율 측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됨

-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020년 4.53%에서 2024년 △11.52%로 하락
- EBITDA는 2022년 439억원에서 2023년 △40억원, 2024년 △317억원으로 변화하여 영업활동 기반의 현금창출력이 2023년부터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2020~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주요 재무비율]

(단위: %, %p, 억원)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자기자본수익률(ROE)	4.53	5.06	△1.54	△7.90	△11.52	△16.05 (354.3)
부채비율	76.4	74.3	82.1	82.4	83.1	6.7 (8.8)
EBITDA	371	448	439	△40	△317	△688 (△185.4)

주: ( )안은 증감률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KBS의 수익구조는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등 3대 수입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이들 모든 수입원이 감소 추세를 보임

◦ 2024년 기준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항목이 전체 매출액(1조 2,974억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이러한 주요 수입원이 모두 감소 추세를 보임

◦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91억원(△6.4%) 감소했으며, 이는 주요 수입원인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의 감소에 따른 것임

[2020~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매출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매출액(a)	13,622 (100.0)	14,580 (100.0)	14,825 (100.0)	13,865 (100.0)	12,974 (100.0)	△891 (△6.4)
수신료수입(b)	6,790 (49.8)	6,863 (47.1)	6,934 (46.8)	6,851 (49.4)	6,516 (50.2)	△335 (△4.9)
방송광고수입(c)	2,319 (17.0)	2,705 (18.6)	2,642 (17.8)	1,967 (14.2)	1,677 (12.9)	△290 (△14.7)
기타방송사업수입	4,253 (31.2)	4,765 (32.7)	4,934 (33.3)	4,748 (34.2)	4,513 (34.8)	△235 (△4.9)
콘텐츠 판매수입(d)	3,326 (24.4)	3,777 (25.9)	3,872 (26.1)	3,780 (27.3)	3,471 (26.8)	△309 (△8.2)
기타	927 (6.8)	988 (6.8)	1,063 (7.2)	968 (7.0)	1,042 (8.0)	74 (7.6)
시청자사업수입	100 (0.7)	110 (0.8)	133 (0.9)	180 (1.3)	160 (1.2)	△20 (△11.1)
기타수입[1)]	160 (1.2)	137 (0.9)	182 (1.2)	130 (0.9)	108 (0.8)	△22 (△16.9)
주요수입원의 매출액 대비 비중 (b+c+d)/a	91.3	91.5	90.7	90.9	89.9	△1.0

주: 1) 기타수입은 국고금 수입과 전파료 수입으로 구성됨

1. ( )안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수입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 및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KBS는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등 핵심 수입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KBS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 주요 원인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분리고지 제도의 도입으로, 이로 인해 30년 이상 지속된 전기요금과의 통합징수 방식이 종료되면서 강제징수 효과가 사라짐

◦ 2023년 수신료 수입은 전년 대비 83억원 감소한 6,851억원을 기록했으며, 실제 분리고지가 시행된 2024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전년 대비 335억원(4.9%) 감소한 6,516억원으로 집계됨

- 징수율 하락과 함께 2024년부터는 징수수수료 243억원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입 감소 효과가 가중됨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수입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연도	수신료 수입	증감액(증감률)	매출액 대비 비중
2020	6,790	-	49.9
2021	6,863	73(1.1)	47.1
2022	6,934	71(1.0)	46.8
2023	6,851	△83(△1.2)	49.4
2024	6,516	△335(△4.9)	50.2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결산서 바탕으로 재작성

❑ 방송광고 수입의 급감과 지상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KBS 매출의 약 13%(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방송광고 수입은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

- 2021년 2,705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1,6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원(14.8%) 감소함

○ 시장 위축 속에서도 MBC의 경우 절대적 광고수입은 소폭 증가하여 시장 점유율이 2023년 21.9%에서 2024년 24.7%로 상승한 반면, KBS는 21.2%에서 20.1%로 점유율이 하락함

- 이는 동일한 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방송사별 경쟁력과 시청자 확보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지상파 사업자별 광고매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액 (C=B-A)	증감률 (C/A)
전체	27,172	31,486	30,830	24,983	22,964	△2,019	△8.1
지상파	10,013 (100.0)	12,071 (100.0)	12,090 (100.0)	9,273 (100.0)	8,354 (100.0)	△919	△9.9
KBS (점유율)	2,319 (23.2)	2,705 (22.4)	2,642 (21.9)	1,967 (21.2)	1,676 (20.1)	△291	△14.8
MBC (점유율)	2,253 (22.5)	2,715 (22.5)	2,760 (22.8)	2,028 (21.9)	2,064 (24.7)	36	1.8
SBS (점유율)	2,767 (27.6)	3,536 (29.3)	3,701 (30.6)	2,900 (31.3)	2,415 (28.9)	△485	△16.7

주: 1. 지상파는 EBS 및 지역MBC, 지역민방을 제외함
2. 점유율은 지상파 광고매출 중 각 지상파 사업자의 광고매출 비중임
자료: 연도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콘텐츠 판매수입의 구조적 감소와 해외 수익 창출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 KBS 매출의 약 27%(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콘텐츠 판매수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됨

○ 특히 2024년 해외 판매수입이 597억원에서 387억원으로 210억원(35.2%) 급감

[한국방송공사 콘텐츠 판매수입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연도	콘텐츠 판매수입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대비 비중
	국내	해외	합계		
2020	2,915	411	3,326	-	24.4
2021	3,305	472	3,777	451(13.6)	25.9
2022	3,416	455	3,872	95(2.5)	26.1
2023	3,183	597	3,780	△92(△2.4)	27.3
2024	3,085	387	3,472	△309(△8.2)	26.8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

❑ KBS의 영업활동 기반 현금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현금창출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EBITDA가 2020~2022년까지 370~45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에는 △40억원, 2024년에는 △317억원으로 감소함

- 이는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등 주요 수입원의 감소가 영업활동 기반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임

○ KBS는 분석 대상 기간(2020~2024년) 동안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500억원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BITDA의 적자 전환은 KBS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방송공사 EBITDA 및 영업현금흐름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연도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EBITDA
2020	△140	511	371
2021	△71	519	448
2022	△90	529	439
2023	△645	605	△40
2024	△881	564	△317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KBS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KBS는 수신료,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등 핵심 수입원의 구조적 감소와 EBITDA 적자 심화라는 재무구조 변화를 겪고 있음.

◦ 2025년 4월「방송법」개정에 따라 수신료 징수 방식의 재변경으로 수신료 수입의 안정성 회복이 기대되나, 방송광고 수입의 급감과 콘텐츠 기반 수익 창출 한계 등 수익구조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1-2. 시설투자 여력 약화 문제

가. 현 황

❑ KBS는 방송산업의 기술 진화와 시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요구되나, 최근 5개년간 투자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KSB는 방송장비, 송출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산업 특성상 기술 진화와 시청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분야로 설비투자 수준 유지가 요구됨

◦ 설비투자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자산(건물,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새로 구매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이는 지출을 의미함

- 본 분석에서는 유형자산 취득액과 무형자산 증가액의 합계로 정의함

◦ 설비투자와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유지 및 대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영업현금흐름과 함께 분석하면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 KBS의 설비투자는 2020년 358억원에서 2022년 77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2023년 436억원, 2024년 18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

- 같은 기간 동안 유형자산은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감가상각비는 매년 약 500~6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됨

◦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영업현금흐름)은 2021년 1,585억원에서 2022년 △222억원으로 하락한 뒤, 2023년 350억원, 2024년 386억원으로 회복되었으나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한국방송공사 설비투자 및 영업현금 흐름 추이(2020~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

연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설비투자			영업현금흐름
			유형자산 취득액[1)]	무형자산 증가액	총 설비투자액	
2020	5,332.2	510.6 (9.6)	354.8	3.1	357.9	727.3
2021	5,245.0	519.5 (9.9)	491.1	3.1	494.2	1,585.2
2022	5,483.1	529.4 (9.6)	770.6	2.7	773.3	△221.5
2023	5,287.0	604.6 (11.4)	420.5	15.4	435.9	350.2
2024	4,908.8	564.2 (11.5)	184.1	2.0	186.1	385.8

주: 1) 유형자산취득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의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이 포함
1. ( )는 유형자산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을 의미함
2. 유형자산 항목은 누적 개념으로, 매년 신규 설비투자와 감가상각이 반영된 결과이며, 해당 연도의 순수 신규투자 금액과는 구분됨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KBS의 설비투자는 감가상각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설비와 인프라 자산의 유지·대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와 감가상각비 간의 비율은 기존 자산이 노후화되는 만큼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 이 비율이 100%일 경우 감가상각되는 자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100%를 초과하면 자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100% 미만이면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함

◦ KBS의 감가상각비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146.1%(2022년)에서 72.1%(2023년), 33.0%(2024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된 자산의 약 33%만 새로 투자되고 있고 나머지 67%는 대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한국방송공사의 감가상각비 대비 설비투자 비율(2020~2024)]

(단위: 억원, %)

연도	설비투자액	감가상각비	설비투자/감가상각비 비율
2020	358.0	510.6	70.1
2021	494.2	519.5	95.1
2022	773.3	529.4	146.1
2023	435.9	604.6	72.1
2024	186.1	564.2	33.0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설비투자 부족으로 인한 유형자산 규모의 지속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유형자산은 2022년(5,483억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4,909억원까지 줄었음
-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유형자산은 574억원(10.5%) 감소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설비투자 규모가 감가상각비를 하회한 결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기존 자산의 감소와 함께 방송설비 및 인프라의 노후화 진행 가능성을 보여주며, 중장기적으로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

❑ 영업활동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영업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영업활동만으로 설비투자 자금을 모두 조달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부족분을 차입이나 자산매각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함

- KBS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2020년 203%, 2021년 321%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29%로 하락하여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설비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음을 보여줌

- 2023년에는 이 비율이 80%로 여전히 100% 미만이었으며, 2024년에는 207%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설비투자 규모 자체가 186억원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됨

[한국방송공사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 비율(2020~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

연도	영업현금흐름	설비투자	영업현금흐름/설비투자 비율
2020	727.3	357.9	203.2
2021	1,585.2	494.2	320.8
2022	△221.5	773.3	△28.6
2023	350.2	435.9	80.3
2024	385.8	186.1	207.3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설비투자 위축이 방송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방송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노후 자산을 새로 교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은 향후 서비스 품질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KBS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 수립과 함께 설비의 계획적 유지·보수를 병행하여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3. 매출채권 관리 필요

가. 현 황

❑ KBS는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등 다양한 외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음

◦ 방송광고, 콘텐츠 판매 등 다양한 외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매출채권이 발생

- 특히 재송신 거래업체와의 외상거래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처의 재무건전성이 KBS의 채권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매출채권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핵심 자산 중 하나로,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설정 수준은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

- 특히 방송산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거래처의 재무상황 악화는 채권 회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매출채권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256억원에서 2022년 2,89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1,385억원으로 2022년 대비 52.2% 감소

◦ 장기미수금은 2020년 245억원에서 2024년 4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손상각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107억원으로 급증함

[한국방송공사 매출채권 현황(2020~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연도	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대손상각비
2020	2,256	245	1
2021	1,678	194	1
2022	2,898	159	1
2023	2,056	104	1
2024	1,385	48	107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주요 쟁점

❑ KBS의 2024년 대손상각비가 전년 대비 100배 이상 급증하여,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채권 관리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2024년 KBS의 대손상각비는 107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억원 수준을 유지해 온 것과 비교해 전년 대비 수치상으로 현저한 증가를 보임

- 이러한 대손상각비 급증은 주로 대손충당금 설정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특정 재송신 거래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매출채권 총액 1,497억원 중 대손충당금 112억원을 차감한 순액은 1,385억원이며,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7.5%로 2023년의 0.3% 대비 현저히 높아진 수치임

[한국방송공사 매출채권 현황(2023~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

연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순액)
2023	2,062	5.9 (0.3)	2,056
2024	1,497	112.4 (7.5)	1,385

주: ( ) 안은 대손충당금 설정률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IPTV 서비스 확산과 OTT 플랫폼 성장으로 인한 케이블TV 시장 축소가 재송신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가 방송사들의 채권 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음

◦ 매출채권은 2022년 2,898억원에서 2024년 1,385억원으로, 장기미수금은 같은 기간 159억원에서 48억원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전체 채권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 이와 함께 대손 관련 비용이 증가한 점은 케이블TV 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특정 거래처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과거 보유 채권 중 일부가 회수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이러한 변화는 방송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할 때 예견 가능했던 구조적 변화로, 기존 대손충당금 설정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실제 회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이 전체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 공시가 제한적임

◦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채권 1,385억원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436억원으로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24.3%)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채권이 발생한 주요 특수관계자는 KBS미디어 305억원, KBS비즈니스 91억원, 케이비에스엔 71억원 등임

◦ 감사보고서에는 이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연령분석이나 회수 예정기일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시되어 있지 않음

- 이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나,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회수 지연 여부나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임

[한국방송공사의 관계기업 등 매출채권 현황(2020~2024회계연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종속기업	㈜KBS비즈니스	53	-	78	110	91
	KBS미디어(주)	33,617	24,505	59,250	41,891	30,511
	㈜이케이비에스	-	-	-	-	-
	㈜KBS아트비전	153	298	265	403	173
	㈜케이비에스시큐리티	30	440	31	30	7
	KBS JAPAN	1,514	1,534	1,417	1,346	1,378
	KBS AMERICA, INC	370	266	271	231	355
	㈜케이비에스엔	6,672	3,593	4,544	4,241	7,067
	㈜케이비에스미디어텍	3	1	3	3	3
	㈜몬스터유니온	-	-	-	-	-
관계기업	KOREA CONTENT PLATFORM, LLC	1,007	1,780	1,197	1,570	3,839
	(주)연합뉴스	110	7	110	220	220
	콘텐츠웨이브(주)	-	14,080	-	-	-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소계(a)		43,529	46,504	67,166	50,045	43,644
전체 매출채권(b)		225,596	167,773	289,772	205,640	138,494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비중(a/b)		19.3	27.7	23.2	24.3	31.5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방송광고 및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가 채권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광고주 매체 선택의 변화 등 산업 구조 변화는 계열사의 재무상황과 채권 회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방송통신 환경 변화와 거래처 리스크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특히 전체 채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 채권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하에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4. 지속적 경영악화 중인 KBS 출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가. 현 황

❑ KBS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 광고사업 및 뉴미디어 전략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복수의 자회사와 관계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일부 출자기관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KBS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 광고사업 및 뉴미디어 전략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복수의 자회사와 관계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 주요 투자 대상은 (주)KBS비즈니스, KBS미디어(주), (주)이케이비에스, (주)KBS아트비전, 콘텐츠웨이브(주), wavve Americas, (주)연합뉴스 등이며, 대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상 투자주식으로 반영되고 있음[1)]

○ 2024년 말 기준 KBS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총 3,371억원이며, 이 중 KBS미디어(1,102억원), 이케이비에스(1,321억원), KBS비즈니스(220억원), 연합뉴스(448억원) 등의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KBS가 지분법을 적용 중인 주요 피투자기업의 2024년 기준 지분율은 KBS비즈니스(100%), 이케이비에스(100%), KBS아트비전(100%), KBS미디어(88.84%), 연합뉴스(27.77%), wavve Americas(15.20%), 콘텐츠웨이브(주)(1.88%) 등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콘텐츠웨이브(주)는 OTT 플랫폼 'Wavve'를 운영하는 관계기업으로, 2023년과 2024년 연속하여 △1,195억원, △1,497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장부금액이 0원으로 반영되었고, 지분법 회계 적용도 중단된 상태임
- 이 밖에도 ㈜이케이비에스는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일부 투자기업의 재무성과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비례하여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임. 이를 통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경영성과를 자신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음

[한국방송공사 지분투자 현황(2020~2024회계연도)]

(단위: %,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KBS비즈니스	지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취득원가	9.0	9.0	9.0	9.0	9.0
	장부금액	153.48	168.44	174.86	204.27	220.33
KBS미디어	지분율	86.18	88.84	88.84	88.84	88.84
	취득원가	66.8	66.02	66.02	66.8	66.8
	장부금액	885.49	954.16	1,009.08	1,041.18	1,101.69
㈜이케이비에스	지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취득원가	291.63	755.38	755.38	755.38	755.38
	장부금액	874.38	915.45	1,324.02	1,260.83	1,320.98
㈜KBS아트비전	지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취득원가	52.0	52.0	52.0	52.0	52.0
	장부금액	130.13	133.87	138.68	142.84	146.2
(유)케이지씨에스 문전사	지분율	40.0	40.0	40.0	40.0	40.0
	취득원가	40.0	40.0	40.0	40.0	40.0
	장부금액	46.25	47.55	49.72	51.96	50.12
㈜케이비에스 시큐리티	지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취득원가	15.0	15.0	15.0	15.0	15.0
	장부금액	51.83	60.1	68.31	71.16	71.15
㈜연합뉴스	지분율	27.77	27.77	27.77	27.77	27.77
	취득원가	5.51	5.51	5.51	5.51	5.51
	장부금액	362.03	389.97	401.26	437.94	448.34
wavve Americas	지분율	33.33	26.67	15.2	15.2	15.2
	취득원가	48.96	47.42	22.96	22.66	22.66
	장부금액	7.72	9.99	12.51	15.05	12.09
콘텐츠웨이브(주)	지분율	-	-	1.92	1.88	1.88
	취득원가	-	-	35.23	35.23	35.23
	장부금액	0	0	11.37	0	0
합계	취득원가	629	627	1,001	1,002	1,002
	장부금액	2,582	2,749	3,190	3,225	3,371

주: wavve Americas, ㈜연합뉴스, 콘텐츠웨이브(주)는 관계기업, 나머지는 종속기업임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KBS의 일부 출자기관은 반복적인 손실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치는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KBS가 출자한 일부 종속관계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손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자산가치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5년간 주요 손실 발생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케이비에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 연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누적 손실 규모는 약 339억원임

[주요 지분법손실 발생기업 손익현황(2020~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기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이케이비에스	△24.1	△89.3	△139.7	△54.1	△31.8	△339
콘텐츠웨이브(주)	-	-	-	△1,194.6	△1,497.3	△2,691.9
wavve Americas	△21.2	12	45.2	5.6	△35.8	5.8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이케이비에스의 경우 5년 연속 손실에도 불구하고 장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케이비에스는 2024년에도 약 3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장부상 투자주식 가액은 전년 대비 약 60억원 증가한 1,321억원으로 평가되었음

- 이와 같은 장부금액 증가는 당기순손익이 아닌 '지분법 자본변동' 항목에 의한 것으로, 해당 연도에 약 112억원의 자본항목 증가가 회계상 반영된 것임
- 이는 유상증자,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의 회계상 자본 항목이 증가하면서 장부금액에 반영된 결과로, 실제로 이익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

계 기준에 따라 장부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 경우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장부에 표시된 자산가치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케이비에스의 취득원가는 약 755억원이나, 2024년 기준 장부금액은 약 1,32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실현되지 않은 자본변동이 장부가액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실제 회수 가능성이나 수익창출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KBS의 (주)이케이비에스 투자현황 및 손익개요(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

기관명	2023~2024년 누적 손실규모	장부금액	지분율
㈜이케이비에스	△339	1,321	100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콘텐츠웨이브(주)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며, OTT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음

○ 콘텐츠웨이브(주)는 OTT 플랫폼 'Wavve'를 운영하는 관계회사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1,194억원, △1,49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지분법상 장부가액은 이미 0원으로 처리되었고, 현재는 지분법 적용도 중지된 상태임

- KBS의 지분율은 1.88%로 낮은 수준이나, 손실 규모는 관계기업 투자 중 가장 큰 수준으로, 회계처리상 투자자산 전액 손실 인식이 이루어진 사례임[2)]

[KBS의 콘텐츠웨이브(주) 투자현황 및 손익개요 (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

기관명	2년간(2023~2024) 손실규모	장부금액	지분율
콘텐츠웨이브(주)	△2,692	0 (지분법 중지)	1.88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2) 콘텐츠웨이브(주)에 대한 지분율은 1.88%로 일반적인 관계기업 기준(20% 이상)에 미달하나, KB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분율 20% 미만이나 당사의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 및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지분법을 적용

❑ wavve Americas는 손익 변동성이 큰 특성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wavve Americas는 미국 콘텐츠 유통 및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설립된 관계기업으로, 손익 변동성이 비교적 큰 출자기관임

- 2020년과 2024년에는 각각 △21억원, △36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2022년에는 45억원의 이익을 기록하는 등 연도별 실적 편차가 큰 특징을 보임
- 2024년 현재 장부금액은 12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로 분석됨

[KBS의 Wavve Americas 투자현황 및 손익개요(2024회계연도)]

(단위: 억원, %)

기관명	5년간(2020~2024) 손실규모	장부금액	지분율
wavve Americas	△56.9	12.1	15.20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지속적 손실 기관에 대한 투자 가치 평가와 경영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KBS의 일부 출자기관에서는 반복적인 손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지분법 회계처리로 인해 장부상 투자가치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회계상으로는 적법한 처리이지만, 실질적 가치평가와 투자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손실이 반복되는 기관의 경우 투자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1-5. 인력운영 개선 필요

가. 현 황

❑ KBS는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익의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인건비 절감과 신규 채용 억제를 지속해 왔으나, 이로 인해 정원과 현원 간 괴리가 점차 확대되어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KBS는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익의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인건비 절감과 신규 채용 억제를 지속해 왔음

- 이로 인해 정원 대비 실제 근무인원(현원)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1)]
- KBS의 정원과 현원 간 괴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왔는데, 2000년에는 정원 5,576명 중 5,168명이 근무해 충원률은 92.7% 수준이었으나, 이후 충원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정원 5,560명 대비 현원은 4,973명으로 약 89.4% 수준, 2020년에는 4,550명으로 약 81.8%에 그쳤음
- 2024년에는 정원 수가 5,346명으로 소폭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3,795명에 불과해 정원 대비 약 29.0%가 결원된 상태임
- 이는 1,551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약 71.0% 수준으로 집계됨
- 정원과 현원 간 괴리 규모는 수치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이 장기간 제한된 결과로 해석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정원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제도적 인력 기준이며, 현원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수를 의미함. 원과 현원 간 차이는 조직의 인력 운용 현황과 충원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KBS 정원과 현원 변화를 통해 인력 충원 현황을 분석하고, 채용과 퇴직 현황을 통해 인력 감소 원인을 점검하였음

[KBS 정/현원 현황(2000~2024)]

(단위: 명, %)

연도	정원(A)	현원(B)	정/현원차이 (A-B)	정원 대비 현원 (A/B)
2000	5,576	5,168	408	92.7
2010	5,560	4,973	587	89.4
2020	5,560	4,550	1,010	81.8
2024	5,346	3,795	1,551	71.0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2020년 5,462명 정원 중 4,489명(82.2%)이 충원되었으나, 2024년에는 5,248명 정원 중 3,756명(71.6%)만이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력 감소가 확인됨

[KBS 정/현원 세부 현황(2000~2024)]

(단위: 명, %)

직급	2000		2010		2020		2024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집행기관	12	10	12	9	12	9	12	7
일반직	4,522	4,214	5,516	4,883	5,462	4,489	5,248	3,756
촉탁직	32	31	32	20	32	14	32	3
기능직	410	287	-	-	-	-	-	-
업무직	272	271	-	-	-	-	-	-
청경직	328	212	-	-	-	-	-	-
방송음악직	-	-	-	-	54	38	54	28
예비사원	-	143	-	61	-	-	-	1
합계	5,576	5,168	5,560	4,973	5,560	4,550	5,346	3,795

주: 기능직, 업무직, 청경직은 과거 인력 분류체계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후 폐지 및 통합되어 2020년 이후에는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KBS는 최근 수년간 정원과 현원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2024년 기준 KBS의 법정 정원은 5,346명, 현원은 3,795명으로,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1,551명에 이름

- 이는 2000년(408명), 2010년(587명), 2020년(1,010명)과 비교해 가장 큰 수치이며, 정원 대비 충원률은 2000년 92.7%에서 2024년 71.0%로 약 22%p 하락하였음

◦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최근 5년간(2020~2024) 현원은 4,550명에서 3,795명으로 755명(16.6%)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정원은 5,560명에서 5,346명으로 214명(3.8%) 감소하였으나, 현원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신규 채용의 급격한 감소와 지속적인 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급 부족이 현원 감소의 주요 원인임

◦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채용과 퇴직 현황을 보면, 신규 공개채용은 2019년 219명에서 2024년 1명으로 급감하였음

- 특별채용은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2021년 및 2023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4년 15명이 전환되었음
- 반면 같은 기간(2019~2024년) 퇴직자는 연평균 약 257명 수준으로 유지되어, 채용 축소와 퇴직 증가의 결과로 전체 현원 감소가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됨

◦ 충원율 지표로 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인력 보충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신규채용자 수(공개채용 + 특별채용)를 퇴직자 수로 나눈 충원율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172.9%로 퇴직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했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24년에는 6.1%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이 충원율은 해당 연도에 퇴직한 인원을 얼마나 새롭게 보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미만일 경우 현원이 순감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KBS의 경우 최근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퇴직자보다 신규채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특정 직군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업무 기능에 미치는 영향 점검이 필요함

- 촉탁직은 단기계약직 인력으로서 2000년부터 정원이 32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20년에는 14명, 2024년에는 3명만이 실제 근무 중으로 나타나, 과거 대비 현원 감소폭이 특히 크게 나타난 직군임
- 방송 편성 관련 전문인력인 방송음악직의 경우, 정원은 54명으로 유지되어 있으나, 2024년 기준 현원은 28명으로 집계되어 정원 대비 51.9% 수준에 그치고 있음

[KBS 연차별 채용 및 퇴직 현황(2019~2024)]

(단위: 명, %)

연도	공개채용(a)	특별채용(b)	퇴직자(c)	충원율(a+b)/c
2019	219	227[1)]	258	172.9
2020	48	37[2)]	260	32.7
2021	83	0	253	32.8
2022	14	25[3)]	267	14.6
2023	132	0	243	54.3
2024	1	15[4)]	262	6.1

주: 1) 2019년 비일반직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등
2) 2020년 무기연봉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등
3) 2022년 연봉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4) 2024년 연봉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1. 공개채용은 임용일 기준, 특별채용은 일반직 전환일 기준임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장기간 지속되는 정원과 현원 간 괴리로 인한 정원 설정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 현원이 지속적으로 정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현행 정원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정원은 조직의 기능 기준에 따라 설정되는 제도적 지표이므로, 단기적인 충원율만으로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 그러나 현재처럼 채용이 억제되고 현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조직 기능별 인력 수요를 재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원 규모의 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1. 수익성 악화 문제

가. 현 황

❑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1)]

❑ EBS의 최근 5개년(2020~2024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산·자본·수입 전반에 걸쳐 감소 추세가 뚜렷하며, 수익기반 약화로 재무건전성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특히 2021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시현하며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음

◦ 자산 측면에서는 2020년 2,601억원에서 연평균 △3.9%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 2,216억원으로 384억원 줄어들었음

◦ 부채 총계는 같은 기간 연평균 2.6% 증가하여 1,015억원에서 1,125억원까지 증가함

◦ 자본 규모는 2024년 1,092억원으로 2020년 대비 494억원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8.9% 감소함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EBS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BS(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EBS 재무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자산	260,084	257,110	254,249	223,061	221,635	△38,449	△3.9
부채	101,538	104,855	128,365	115,487	112,477	10,939	2.6
자본	158,546	152,256	125,883	107,575	109,158	△49,388	△8.9

자료: EBS

❑ EBS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절감 노력이 매출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매출은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매출 3,060억원에서 2024년 3,057억원으로 2020~2024년 연평균 매출이 0.03% 감소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는 각각 연평균 1.0% 증가, 4.4% 감소
-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시현하고 있으며, 누적 영업손실은 480억원
- 최근 5년 중 2020년과 2024년을 제외한 3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상기 자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부채비율이 2020년 64.0%에서 2024년에는 103.0%로 39%p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EBS 손익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누적	연평균 증감률
매출	306,031	344,399	280,071	277,631	305,680	1,513,812	△0.03
매출원가	262,496	312,035	268,751	263,922	273,496	1,380,700	1.0
매출총이익	43,535	32,364	11,320	13,708	32,184	133,111	△7.3
판매비와 관리비	38,678	39,555	37,003	33,500	32,350	181,086	△4.4
영업이익	4,857	△7,191	△25,683	△19,792	△166	△47,975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6,445	△6,291	△25,586	△18,309	1,584	8,029	△29.6
부채비율	64.0	68.9	102.0	107.4	103.0	-	-

자료: EBS

나. 주요 쟁점

❑ EBS는 방송사업과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방송광고수입, 출판사업 등의 부대사업 매출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부문에서는 매출원가가 매출을 초과하여 손실이 매년 353~417억원 규모로 발생

◦ 부대사업부문에서는 매출이 매출원가를 초과하여 이익이 매년 527~806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즉, EBS는 방송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대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BS 손익 세부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방송사업	매출(a)	144,008	175,934	122,462	120,077	141,884	△0.4
	매출원가(b)	181,059	215,122	164,200	159,142	177,207	△0.5
	매출총이익 (c=a-b)	△37,051	△39,188	△41,738	△39,065	△35,323	△1.2
부대사업	매출(d)	162,023	168,465	157,609	157,554	163,796	0.3
	매출원가(e)	81,437	96,913	104,551	104,780	96,289	4.3
	매출총이익 (f=d-e)	80,586	71,552	53,058	52,774	67,507	△4.3

자료: EBS

❑ 방송사업부문 매출은 2020년 1,440억원에서 2024년 1,419억원으로 21억원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4% 감소하고 있음

◦ 방송사업 수입 중 수신료수입, 방송통신발전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 공적 수입이 방송사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0%이며, 상업적 수입인 방송광고수입 등은 20% 수준임

[EBS 방송사업 부문 매출 세부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공적 수입	수신료	19,003	19,206	19,405	19,174	17,738	△1.7
	방송통신발전기금	30,271	32,857	31,740	33,825	34,153	3.1
	국고보조금	64,161	89,331	37,260	35,986	61,478	△1.1
	소계(a)	113,435	141,394	88,405	88,985	113,369	0.0
	비중	78.8	80.4	72.2	74.1	79.9	-
상업적 수입	방송광고	22,192	26,061	25,621	22,194	20,012	△2.6
	방송사업기타	8,381	8,479	8,436	8,898	8,503	0.4
방송사업부문 매출 합계(b)		144,008	175,934	122,462	120,077	141,884	△0.4

자료: EBS

❑ EBS 수신료 매출은 2020년 190억원에서 2024년 178억원으로 감소 추세임

◦ 2024년 기준 전체 수신료는 KBS 6,517억원, 한국전력공사 367억원, EBS 178억원 규모로 배분되었으며 EBS의 수신료 매출 비중은 2.9%임

[KBS와 EBS의 수신료 매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KBS 징수 수신료 매출(A)	6,790	6,863	6,933	6,850	6,517	△1
한전 위탁징수비(B)	458	463	467	462	367	△5.4
KBS 수신료 순매출(A-B)	6,332	6,400	6,466	6,388	6,150	△0.7
EBS 수신료 매출(C)	190	192	194	192	178	△1.6
비중(C/(A-B))	3	3	3	3	2.9	-

자료: 2024년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상업적 수익인 방송광고수입은 감소하여 2020년 222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으로 22억원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2.6% 감소하고 있음

○ 유아 어린이 광고 부문에서 연평균 15.9% 감소하여 타 부문에 비해 감소폭이 큼

[한국교육방송공사 연도별 방송사업수입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방송광고수입		222	261	257	222	200	△22	△2.6
	유아 어린이	64	57	54	33	32	△32	△15.9
	성인방송	158	204	203	189	168	10	1.5
	간접광고	0.2	0.4	0.4	7.1	12.8	12.6	182.8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 방송광고수입 감소는 광고주의 수요가 온라인, 유튜브, 소셜 미디어, 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시청률 기반 지상파 광고 수요가 구조적으로 축소됨에 기인함

- 「2024년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2024년 방송사업자 광고매출은 2023년 2조 4,983억원에서 2024년 2조 2,964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음
- 지상파 광고 매출도 전년 대비 919억원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매체별 광고매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액 (B-A)	증감률 [(B-A) /A]
전체		27,172	31,486	30,830	24,983	22,964	△2,019	△8.1
지상파		10,013	12,071	12,090	9,273	8,354	△919	△9.9
	KBS	2,319	2,705	2,642	1,967	1,676	△291	△14.8
	MBC	2,253	2,715	2,760	2,028	2,064	36	1.8
	SBS	2,767	3,536	3,701	2,900	2,415	△485	△16.7
	EBS	222	261	256	222	200	△22	△9.9
종편		4,344	5,171	4,665	4,021	3,481	△540	△13.4

주: 지상파(KBS, MBC, SBS, EBS, 지역MBC 등), SO, 위성, IPTV, PP, CP, 지상파DMB 포함
자료: 2024년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부대사업 수입은 2020년 1,620억원에서 2024년 1,638억원으로 18억원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3% 증가하고 있음

- ○ 출판사업 수입이 2020년 906억원에서 2024년 933억원으로 27억원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7% 증가하고 있음
- ○ 부대사업 기타수입은 8.4% 증가함

[EBS 부대사업부문 매출 세부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출판사업수입	90,584	91,806	85,596	85,701	93,262	0.7
문화콘텐츠부대사업수입	19,518	11,784	11,642	10,103	11,128	△13.1
콘텐츠사업수입	28,089	29,536	28,985	26,881	26,448	△1.5
부대사업기타수입	23,832	35,339	31,387	34,868	32,958	8.4
부대사업 매출 합계	162,023	168,465	157,609	157,554	163,796	0.3

자료: EBS

❑ EBS 수익구조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경영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수익 개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방송광고수입과 부대사업에서 매출을 확대하지 못할 경우, 현재와 같은 영업손실이 지속화되고, 자본감소에 따른 부채비율이 확대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 따라서, 방송광고수입, 출판사업 등의 부대사업 매출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2-2.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증가 문제

가. 현 황

❑ EBS는 방송장비와 기계장치 노후화가 심화되어 장비 교체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임

◦ EBS는 2017년 일산 디지털통합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교체한 방송 장비와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신사옥 이전 후 8년이 지난 현재, 교체한 장비의 내용추정연수 상한에 도달[1)]

◦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방송장비의 잔존가치는 85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3억원 감소하였으며,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2,400만원으로 장비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방송장비 및 기계장치 자산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액 (B-A)
방송장비(a)	102,468	104,839	104,510	106,848	105,699	3,231
감가상각누계액(b)	79,573	86,512	89,727	96,433	97,152	17,579
방송장비 장부가액 (a-b)	22,895	18,327	14,783	10,415	8,547	**△14,348**
기계장치(c)	34,491	10,117	8,906	8,906	6,809	△27,682
감가상각누계액(d)	34,368	10,098	8,864	8,876	6,785	△27,583
기계장치 장부가액 (c-d)	123	19	42	30	24	**△99**

자료: EBS 감사보고서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EBS의 유형자산 내용추정연수에 따르면 방송장비는 6년, 기계장치는 4년

나. 주요 쟁점

❑ EBS는 신규 유형자산 투자 감소로 인한 장비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주요 방송설비 투자 부진과 현대화 지연에 따른 기술 인프라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EBS는 방송장비와 기계장치의 잔존가치가 전년 대비 2021년 47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 44억원, 2024년 19억원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금흐름표 상 유형자산 취득 항목에 따르면 매년 유형자산 취득 규모는 2021년 15억원, 2022년 24억원, 2023년 7억원, 2024년 14억원으로 잔존가치 감소분만큼의 유형자산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내용연수상한이 도래한 장치를 폐기하지 않고 수리 후 계속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자산의 진부화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방송장비 및 기계장치 자산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방송장비 장부가액(A)	22,895	18,327	14,783	10,415	8,547
기계장치 장부가액(B)	123	19	42	30	24
장부가액 합계(C=A+B)	23,018	18,346	14,825	10,445	8,571
전년 대비 장부가액 감소분	-	△4,672	△3,521	△4,380	△1,874

자료: EBS 감사보고서

[EBS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020~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액 (B-A)
유형자산의 취득	439	1,502	2,353	651	1,415	976

자료: EBS 감사보고서

❑ 또한 재무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장비 및 기계장치 투자 여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020년 396억원에서 2024년 178억원으로 2020년 대비 218억원 감소

◦ 당기순이익도 2020년 64억원에서 2024년 16억원으로 2020년 대비 48억원 감소하여 유형자산 투자를 수행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

[EBS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및 당기순이익(2020~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액 (B-A)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582	4,450	1,937	△39,265	17,804	△21,778
당기순이익	6,445	△6,291	△25,586	△18,309	1,584	△4,861

자료: EBS 감사보고서

❑ EBS는 방송 인프라 질적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재무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장비 투자 여력을 확충해야 함

◦ EBS는 중장기적으로 설비 경쟁력 유지와 기술 기반 확보의 구조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음

◦ 공영방송으로서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물적 기반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 방송 인프라 질적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재무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장비 투자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3. 출판 재고 관리 필요

가. 현 황

❑ EBS의 출판사업 매출액 규모는 2024년 933억원이며, 2020년 대비 연평균 0.7% 증가 추세

◦ 매출원가(출판사업비)는 2024년 529억원으로 2020년 대비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총이익은 2020년 426억원에서 2024년 404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출판사업은 매출원가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매출총이익률은 2024년 43.3%으로 EBS 사업 중 핵심 수익원이며, 방송사업부문 등의 손실을 출판사업부문의 높은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출판사업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매출(A)	90,584	91,806	85,596	85,701	93,262	0.7
매출원가(B)	47,968	47,983	56,371	54,179	52,884	2.5
매출총이익(C=B-A)	42,616	43,823	29,225	31,522	40,378	△1.3
매출총이익률(C/A)	47.0	47.7	34.1	36.8	43.3	-

주: 매출원가는 출판사업비임
자료: EBS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EBS의 출판 사업 규모는 2020년 575만부에서 2024년 1,216만부로 증가하였음

◦ 기말재고 규모는 2020년 174만부에서 2024년 기준 314만부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출고 대비 재고 비중은 2020년 30.3%로 높게 나타나다 이후 22.4%~26.6%를 유지하고 있음

◦ 고교 부문 기말재고는 2020년 90만부, 2021년 164만부, 2022년 162만부, 2023년 117만부, 2024년 149만부로 전체 기말재고 중 비중이 높음

◦ 단행본의 경우 2024년 출고 대비 재고 비중이 89.3% 수준으로 출판 사업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부문 평균(25.8%)에 비해 높은데, 누적된 단행본 재고로 인해 단행본 제작은 2022년 78.6만부에서 2024년 28만부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출판사업 재고 현황]

(단위: 천 부, %)

구분		재고현황						
		이월 재고	제작 입고	출고(A)	기말재고			재고 비중 [D/A]
					절판재고 (B)	연속판매 재고(C)	재고 (D=B+C)	
2020	합계	1,200	6,386	5,747	152	1,591	1,743	30.3
	초등	173	2,342	1,972	10	349	359	18.2
	중학	299	1,256	1,201	24	358	382	31.8
	고교	606	2,279	2,031	103	796	899	44.3
	단행본	22	73	61	7	35	42	68.9
	강의노트	99	437	483	8	53	61	12.6
2021	합계	1,595	15,201	13,977	927	2,205	3,132	22.4
	초등	349	2,411	2,011	214	493	707	35.2
	중학	361	1,256	1,116	15	501	516	46.2
	고교	796	10,813	10,310	656	983	1,639	15.9
	단행본	35	230	118	9	139	148	125.4
	강의노트	53	492	423	33	89	122	28.8
2022	합계	2,205	13,807	12,726	807	2,575	3,382	26.6
	초등	493	2,093	1,840	64	482	546	29.7
	중학	501	1,146	1,038	14	624	638	61.5
	고교	983	9,469	9,096	696	924	1,620	17.8
	단행본	139	786	501	3	429	432	86.2
	강의노트	89	313	251	30	115	145	57.8
2023	합계	2,574	12,200	11,845	344	2,665	3,009	25.4
	초등	482	2,026	1,762	90	610	700	39.7
	중학	624	847	850	14	629	643	75.6
	고교	923	8,788	8,646	195	974	1,169	13.5
	단행본	429	376	388	22	399	421	108.5
	강의노트	115	162	199	23	53	76	38.7
2024	합계	2,665	12,352	12,162	615	2,524	3,139	25.8
	초등	610	1,808	1,737	92	625	717	41.3
	중학	629	775	924	88	449	537	58.1
	고교	974	9,231	8,900	396	1,094	1,490	16.7
	단행본	399	280	366	7	320	327	89.3
	강의노트	53	258	235	32	36	68	28.9

주: 재고비중은 출고량 대비 재고량임
자료: EBS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EBS 출판사업 재고자산회전율 효율성 제고 필요

❑ EBS는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출판사업 재고자산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고자산회전율(재고자산/매출원가)은 재고자산이 현금으로 변화되는 속도를 나타내며, 재고자산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는지 과다하게 재고로 남아있는지 파악이 용이함
- EBS의 재고자산은 모두 출판사업 부문 재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출판 부문 매출원가(출판사업비) 규모와 함께, 출판사업 부문 재고자산회전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고가 출고되기까지 창고에 머무는 시간(재고자산회수기간)을 파악할 수 있어 출판 재고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음
- EBS 출판사업 재고자산회전율은 2020년 14.1에서 2024년 7.2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회수기간은 2020년 평균 25.9일에서 2024년 50.4일로 증가함
- EBS는 출판산업 재고자산회전율을 높여 재고가 현금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판매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출판사업 재고자산회전율]

(단위: 백만원, 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초재고자산(A)	3,429	3,366	5,292	7,597	7,647
기말재고자산(B)	3,367	5,292	7,597	7,647	6,955
평균재고자산(C=[A+B]/2)	3,398	4,323	6,445	7,622	7,301
매출원가(D)	47,968	47,983	56,371	54,179	52,884
출판사업 재고자산회전율 (E=D/C)	14.1	11.1	8.7	7.1	7.2
재고자산회수기간 (365/E)	25.9	32.9	41.7	51.3	50.4

주: 매출원가는 출판사업비임
자료: EBS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EBS 절판대상교재 수요예측 강화 및 재고 관리 필요

❑ EBS 전체 기말재고 중 절판대상교재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므로, 추후 절판대상 교재 수요예측 강화 및 재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출판사업의 기말재고의 경우 절판대상 교재와 연속판매 대상 교재로 구분
- ◦ 절판대상 교재는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차년도에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교재이므로 매출원가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차년도에 활용되는 연속판매 대상교재보다 엄격한 수요예측과 재고 관리가 필요
- ◦ 전체 기말재고 중 절판대상 교재의 비중은 2024년의 경우 19.6%로 2023년 11.4%에 비해 8.2%p 증가함
  - 고교 부문에서 절판대상교재는 2023년 19.5만부에서 2024년 39.6만부로 증가하였고, 중학 부문에서도 2023년 1.4만부에서 2024년 8.8만부로 증가하였으므로 고교 및 중학 부문 절판대상 교재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출판사업 재고 현황]

(단위: 천 부, %)

구분		기말재고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합계
절판대상 교재(A)	합계(a)	152	927	807	344	615	2,845
	초등	10	214	64	90	92	470
	중학	24	15	14	14	88	155
	고교	103	656	696	195	396	2,046
	단행본	7	9	3	22	7	48
	강의노트	8	33	30	23	32	126
연속판매 대상교재 (B)	합계	1,591	2,205	2,575	2,665	2,524	11,560
	초등	349	493	482	610	625	2,559
	중학	358	501	624	629	449	2,561
	고교	796	983	924	974	1,094	4,771
	단행본	35	139	429	399	320	1,322
	강의노트	53	89	115	53	36	346

(단위: 천 부, %)

구분		기말재고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합계
총합계 (C=A+B)	합계(b)	1,743	3,132	3,382	3,008	3,139	14,404
	초등	359	707	547	700	717	3,030
	중학	382	516	638	643	537	2,716
	고교	899	1,638	1,620	1,169	1,490	6,816
	단행본	42	148	432	421	327	1,370
	강의노트	61	122	145	77	68	473
기말재고 중 절판대상 교재 비중(a/b)		8.7	29.6	23.9	11.4	19.6	19.8

자료: EBS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차년도에 교재 내용이 변경되어 절판된 교재의 기말재고 손실은 2020년 5억원에서 2024년 13억원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합계 43억원이 교재 절판에 따른 손실로 계상됨

[최근 5년간 연도별 출판사업 절판대상교재 기말재고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처리	기말재고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합계
절판대상교재(A)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519	739	837	954	1,281	4,330

주: EBS 교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 기준
전부진부화: 절판 혹은 발간 후 3년이상 보유 재고는 '전액' 충당금 설정
부분진부화: 과 3개년 교재 폐기율 반영하여 '일부'만 충당금 설정
진부화 제외: 당해연도 발간 교재는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판매 가치 有)
자료: EBS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간 출간에 따른 출고된 교재 폐기 손실은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자원 낭비 사례에 해당하므로 EBS는 철저한 수요 예측에 따른 관리를 통해 기말재고 중 절판대상 교재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음

2-4. 증정용 연구 교재 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 EBS는 학습용 교재를 제작하면서 판매용 교재와 구분하여 연구용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및 수업 계획 수립 등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참고 자료로 제공

◦ EBS는 판매용 교재 출간 시 총판 수요조사와 전년도 사용 부수, 판매 추이 등을 반영하여 연구용 교재를 제작한 후 판매용 교재와 함께 배부

- 연구용 교재 중 서책의 경우 지역 규모, 총판 수요, 해당 서책 제작 부수 등을 고려하여 총판에 배부하고 있음
- eBook의 경우 신청한 교사 중 1년에 5권 EBS eBook 무료 구매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EBS eBook 앱을 태블릿에 설치하면 전자책을 종이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EBS의 연구용 교재 출고 현황은 2020년 89.7만부에서 2024년 73.3만부로 감소하였으며, 기말재고 규모는 2020년 15.7만부에서 2024년 19.3만부로 증가함

◦ 전체 출고 대비 재고 비중은 2020년 17.5%에서 2024년 26.3%로 증가

◦ 고교 부문 기말재고는 2020년 9.4만부, 2021년 7.3만부, 2022년 7.3만부, 2023년 11.8만부, 2024년 12.5만부로 전체 기말재고 중 비중이 높음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연도별 연구용 교재현황]

(단위: 천 부, %)

구분		재고현황						
		이월 재고	제작 입고	출고(A)	기말재고			재고 비중 [D/A]
					절판재고 (B)	연속판매 재고(C)	재고 (D=B+C)	
2020	합계	121	934	897	23	134	157	17.5
	초등	15	127	110	3	29	32	29.1
	중학	24	64	60	5	23	28	46.7
	고교	78	741	725	15	79	94	13.0
	단행본	4	3	2	0	4	4	200.0
2021	합계	134	903	880	25	133	158	18.0
	초등	29	74	68	6	29	35	51.5
	중학	23	74	54	4	40	44	81.5
	고교	79	751	756	15	58	73	9.7
	단행본	4	4	1	0	6	6	600.0
2022	합계	133	981	953	14	152	166	17.4
	초등	29	73	74	4	21	25	33.8
	중학	40	86	71	1	54	55	77.5
	고교	58	775	767	9	64	73	9.5
	단행본	6	47	41	0	12	12	29.3
2023	합계	152	773	736	24	172	196	26.6
	초등	21	74	65	7	25	32	49.2
	중학	54	34	53	0	35	35	66.0
	고교	64	655	606	13	105	118	19.5
	단행본	12	11	12	4	7	11	91.7
2024	합계	172	755	733	43	150	193	26.3
	초등	25	57	51	9	22	31	60.8
	중학	35	45	48	7	24	31	64.6
	고교	105	651	632	27	98	125	19.8
	단행본	7	2	2	0	6	6	300.0

주: 재고비중은 출고량 대비 재고량임
자료: EBS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ebook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2024년 기준으로 ebook 서비스로 제공된 ebook은 2만 8,089건임

[연도별 연구용 교재(ebook) 신청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ebook	-	9,775	28,089

자료: EB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총판 중심의 연구용 교재 수요예측 지양 필요

❑ EBS는 총판 중심의 연구용 교재 수요예측을 지양하고 교사에게 제공되는 연구용 교재 서책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예측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EBS 학습교재는 겨울방학, 신학기 등 특정 시기에 판매용 교재는 물론 연구용 교재 수요가 증가하며 판매용 교재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일시에 수요가 증가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EBS는 판매용 교재 출간 시 총판 수요조사와 전년도 사용 부수, 판매 추이 등을 반영하여 연구용 교재를 제작하고 있음
- ○ 현재 연구용 교재를 학교 교사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총판에 배본하기 때문에 총판을 거점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교사들의 연구용 교재 수요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총판 중심의 수요 파악은 개별 교사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수요예측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구용 교재 이월이 발생
  - 실제로 3년간 연구용 교재 이월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 12.1만부가 이월되었지만 2024년 17.2만부가 이월되어 연구용 교재 이월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 연구용 교재 이월분 현황]

(단위: 천 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월재고	121	134	133	152	172
초등	15	29	29	21	25
중학	24	23	40	54	35
고교	78	79	58	64	105
단행본	4	4	6	12	7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연구용 교재는 연구 및 홍보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 오류는 EBS 출판사업 부문 매출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EBS는 연구용 교재 수요를 총판 중심이 아닌 최종수요자인 교사 중심으로 파악하여 예측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교사에게 연구용 교재가 아닌 판매용 교재 제공 지양 필요

❑ EBS는 교사에게 연구용이 아닌 판매용을 제공하여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EBS는 총판에게 연구용 교재 중 일부를 증정용 연구용 교재를 제공하고 있음

- 총판이 증정용 연구용 교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EBS 출판관리시스템에 주문요청을 하고, 증정용 연구용 교재의 재고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고 있으며 증정용 연구용 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판매용 교재를 증정용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음

◦ EBS는 총판에서 홍보 목적으로 증정용 연구용 교재를 요청할 경우에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증정용 연구용 교재를 우선 제공하여야 함에도 다년간 총판에 판매용 교재를 증정용으로 제공함

- 2022년 말 EBS는 증정용 연구용 재고 353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매용 교재로 총 795부를 제공하여 증정용 연구용 교재 353부를 판매용에 우선하여 제공하지 않음

- 2023년 말에도 증정용 연구용 재고를 533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매용 교재는 총 978부 제공되어 증정용 연구용 교재 533부를 우선 제공하지 않고 판매용 교재가 제공되었음
- 2024년에는 증정용으로 제공한 판매용 교재는 2,716부로 이 중 증정용 연구용 교재 937부가 우선 제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판매용 교재를 증정용으로 제공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4년 증정용으로 제공한 판매용 교재는 2022년 대비 1,921부 증가

[총판에게 증정용으로 제공한 판매용·연구용 교재 현황]

(단위: 부)

구분	2022(A)	2023	2024(B)	증가분(B-A)
판매용 교재	795	978	2,716	1,921
연구용 교재	353	533	937	584

자료: EB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해당 사안은 2018년 감사원 감사[1]를 통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용 교재가 총판 증정용으로 무상 제공되어 보관 중인 증정용 연구용 교재를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지 못하였음

❑ 추후 EBS는 학교 교사에게 증정되는 목적으로 제작된 연구용 교재가 판매용 교재보다 우선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1) 「EBS 출판유통 관리실태」. 감사원. 2018.7. 30p.
"....EBS는 유상으로 공급되어야 할 판매용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보관 중인 연구용 교재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하 중략)"

2-5.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의 규정에 의거해 매년 경영평가 수행

○ 경영평가 목적은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공적책임을 다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EBS 설립목적 구현에 충실한 경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경영평가단은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부문별 각 1인), 공사의 비상임 이사·직원중 2인 및 공사의 감사 1인 등 총 7인을 이사회가 위촉

○ 평가부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1항에 명기된 ①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② 예산집행의 효율성, ③ 인사 · 조직 등 경영관리 제도, ④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 ⑤ 기타 EBS 발전과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EBS 업무와 연관시켜 경영, 방송, 교육, 기술 4개 부문으로 구성

[EBS 경영평가제도 법적 근거]

구분	법령
실시 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 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구분	법령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한국교육방송공사정관」 제13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경영평가단 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 2. 공사의 비상임이사·직원 중 2인 3. 공사의 감사
평가 부문 및 평가 항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 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나. 주요 쟁점

(1) 경영평가 외부위원 자격요건 검토 필요

❑ EBS는 경영평가단 중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위원이 선출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1]에 따라 EBS 이사회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매년 경영, 방송, 교육, 기술 관련 전문가 각 1인, 비상임 이사·직원중 2인 및 EBS 상임감사 1인 등 총 7인을 경영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 경영, 방송, 교육, 기술 관련 전문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①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②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EBS에서 제출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경영평가 외부 위원 경력에 따르면 해당 자격요건(방송 경력)이 부재한 위원은 총 18명으로 전체 외부 평가위원 36명 중 50%가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2024년의 경우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위원은 전체 외부위원 4명 중 2명

---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
2. 공사의 비상임이사 – 직원중 2인
3. 공사의 감사

[연도별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위원 경력사항]

(단위: 명, %)

연도	교육	경영	기술	외부 위원	시행령 미부합	비중
2016	교육평가 박사 사범대학 교수	-	-	4	1	25
2017	교육학 박사 교장/ 부교육감/ 대학교 총장	경영정보학 박사 경영학과 교수	-	4	2	50
2018	교육학과 박사 교육학과 교수	-	-	4	1	25
2019	교육행정 석사 중학교 교사 경력 30년	경영학 석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경영학/공학 박사/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4	3	75
2020	교육사회학 박사 중등교사 교장/ 교육연구원장	경영학 석사 경영컨설턴트	-	4	2	50
2021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박사/ 중등교사/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경영학 석사 경영컨설턴트 기술	전기공학 박사 전기, 컴퓨터 공학과 교수	4	3	75
2022	물리교육 학사 중등교사/ 영재고 교장	경영학 석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전자공학 박사 전자공학부 교수	4	3	75
2023	컴퓨터교육 석사 초등교사 교장	-	-	4	1	25
2024	교육학 석사 초등교사 교장	경영학 박사 경영학과 교수	-	4	2	50
합계	9	6	3	36	18	50

자료: EBS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KBS의 경우 경영평가단 요건[2]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평가위원 구성이 EBS에 비해 용이하므로, 관련 법령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법」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EBS는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특정하고 있어 요건을 만족하는 평가위원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EBS·KBS 경영평가단 구성(2024) 및 관련 법령]

구분	EBS	KBS
평가단 구성	경영 1인, 방송 1인, 기술 1인, 교육 1인, 내부 비상임이사 2인 및 감사 1인	경영 부문 2인, 방송 부문 2인, 기술·뉴미디어 부문 2인, 내부 감사 1인
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	「방송법」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EBS는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특정하지 않거나, 부문별로 교육, 경영, 기술, 방송 분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방식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EBS 경영·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평가위원 비중 축소 필요

❑ EBS 경영평가단 중 이사회 구성원[3] 및 임원진[4] 중 ① 공사의 비상임이사·직원 중 2인 ② 공사의 감사 포함 총 3명이 경영평가단에 참여하고 있음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 2명[5], 임원진 중 감사 1명으로 구성됨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EBS는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참고하여 이사회 구성원, 임원진 등 EBS 경영·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평가위원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사회 구성원, 임직원 등이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외부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경영평가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당연 배제함.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6] 사례를 보면,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공모 받은 인력풀을 활용
- 각 평가단장 간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7]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각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공기업 경영평가단(37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53명)을 구성함

◦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임원진인 감사를 제외하고 외부위원 6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음

- 2024년 수행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에 의해 의결한 외부 전문가 6인(방송 부문 2명, 기술·뉴미디어 부문 2명, 경영 부문 2명)과 KBS 감사를 위촉하여 외부위원 비중이 EBS에 비해 높음

---

5) 평가위원은 공사의 비상임이사·직원중 2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내부직원은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음

6) 2024년 평가가 수행됨

7)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24.8.

[경영평가별 평가위원 구성 비교]

평가대상	평가위원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진	외부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無	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53명(2024)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1명	6명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감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4명

○ 따라서 EBS는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 임원진 등 EBS 경영·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평가위원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연구재단

3-1. 예탁 출연금 낮은 예탁이자율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 통합 Ezbaro 시스템은 국가R&D 예산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1]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이며, 한국연구재단은 통합Ez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자금을 예탁·운영하고 있음

○ 통합 Ezbaro 시스템은 범부처 연구비 통계 분석·제공으로 연구비 정보를 공유하며, 범부처 연구비 집행정보 통합관리 체계구축 및 서비스 제공하며 연구비 부당집행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통합 구축되었음

- 통합 Ezbaro 시스템은 2025년 기준 중앙부처 17곳, 다부처 3곳, 전문기관[2] 34곳에서 사용하고 있음

[통합 Ezbaro 시스템 참여 부처 및 전문기관(2025)]

부처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나노종합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기상청(2)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교육부(2)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2)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자력안전위원회(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전문기관은 통합 Ezbaro 시스템에 R&D 자금을 예탁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부처	전문기관
경찰청 (1)	과학치안진흥센터
국가유산청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무조정실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림청 (1)	한국임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우주항공청 (1)	우주항공청
조달청 (1)	한국조달연구원
행정안전부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부처 (3)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주: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복 참여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한국연구재단[3]은 통합 Ezbaro 참여 전문기관 재정자금예탁을 위해 전담은행[4]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함

- ○ 각 전문기관별 출연금('통합Ezbaro 시스템 R&D자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 Ezbaro 시스템 계좌로 예탁되며, 금리 및 별도의 협약조건(대출 등)은 전담은행과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체결함
- ○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한 협약 조건은 통합 Ezbaro 참여 전문기관에 일괄 적용됨

❑ 재정자금예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탁 이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5]을 준용하여 통합 Ezbaro 참여 전문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담은행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선정됨

개발비 이자를 국고로 납입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되거나,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있음

❑ 전담은행과 협약 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설정하게 되면, 국고로 납입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되거나,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야 할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전담은행과 협약 체결 시 시중금리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Ezbaro 시스템 R&D자금' 전담은행의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연구재단은 전담은행과 이자율 및 별도 협약 조건 체결
  - 이자율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업MMDA 금리(△0.65%~0.06%) 조건임
  - 2020년부터 5년 간 통합 Ezbaro 시스템 운영비 지원(156억원 규모) 등 협약 체결
- ○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연구재단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 추가 협약 조건은 없음
  - 한국재정정보원은 매년 예탁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예탁금리를 결정하며 2024년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1%p를 예탁금리로 결정하였음[6]

---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예탁자금 협약 조건]

예탁기관	연원	예탁자금 이자율 조건	협약 조건
한국연구재단	2019~2024	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업 MMDA 금리 (△0.65%~0.06%)	통합 Ezbaro 시스템 운영비 지원 (5년 156억원) 등
한국재정정보원	2020.1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無
	2020.2 ~ 2021	한국은행 기준금리 △0.3%p	
	2022	한국은행 기준금리 △0.15%p	
	2023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4	한국은행 기준금리 +0.1%p	
	2025	한국은행 기준금리 +0.15%p	

자료: 한국연구재단, 한국재정정보원

❑ 예탁계좌 평균이자율은 한국재정정보원의 평균이자율이 한국연구재단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음

◦ 한국연구재단의 예탁자금이자율은 2021년 0.2%, 2022년 0.4%에서 2023년 1.98%, 2024년 2.32%임

◦ 반면, 연도별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 평균이자율은 2021년 0.31%, 2022년 1.82%, 2023년 3.48%, 2024년 3.54%로 '통합Ezbaro 시스템 R&D자금' 전담은행 예탁계좌 평균이자율보다 높음[7)]

◦ 2024년의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이자율이 '통합Ezbaro 시스템 R&D자금' 전담은행 예탁계좌 이자율보다 1.22%p 높음

◦ 2024년 예탁 규모(평균잔액 기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11조 3,252억원이며, '통합Ezbaro 시스템 R&D자금' 전담은행은 9,294억원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예탁 규모가 높음

6) 예탁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예탁금리 결정(10월 중) ▸ 참여 중인 예탁은행 대상으로 예탁금리 통보 및 참여 여부 확인(11월 중) ▸ 업무계약(1년 단기) 체결(12월)·예탁금리 적용(1월, 수시)

7)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보조금 예치 전담 기관으로 은행과 예탁 조건 협의 시 금리 조건으로 기관별 경쟁을 도입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 0.15%p(변동가능)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부여받고 있음

[한국연구재단·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규모·이자금액·평균이자율 현황]

(단위: 억원, %, %p)

은행예탁계좌		2021	2022	2023	2024
한국연구재단	평균잔액(A)	13,072	13,537	11,190	9,294
	이자금액(B)	26	54	221	215
	평균이자율(C=B/A)	0.2	0.4	1.98	2.32
한국재정정보원	평균잔액(D)	92,934	99,534	101,136	113,252
	이자금액(E)	274	1,820	3,503	4,064
	평균이자율(F=E/D)	0.31	1.82	3.48	3.54
이자율 차이(F-C)		0.11	1.42	1.5	1.22

자료: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재정정보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MMDA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협약의 기준금리 간 차이가 발생함

◦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연평균 0.61%, 2022년 2.03%, 2023년 3.49%, 2024년 3.42%로 창업지원사업 자금 전담은행 예탁금 금리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연평균 이자율 간 비교]

(단위: %)

유형	2021	2022	2023	2024
한국은행 기준금리	0.61	2.03	3.49	3.42
통합Ezbaro 시스템 R&D 자금 예탁 금리(MMDA)	0.2	0.4	1.98	2.32

주: 통합Ezbaro 시스템 R&D자금 예탁금리는 평균이자율임
자료: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재정정보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은 타 기관의 협약조건 및 예탁이자율 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예탁금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연구재단은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확보하여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 Ezbaro 시스템 지원(5년 156억원 규모) 등과 같은 별도 협약 조건 없이 이자수익을 늘리는 것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에 부합함[8)]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4 한국과학창의재단

4-1. EBS 출연금 교부 법적 근거 등 보완 필요

가. 현 황

❑ 한국과학창의재단[1]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08년 설립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법인으로 설립됨[2]

❑ 2024년 기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기타사업수입(2,185억원) 및 정부출연금(622억원) 수입으로 운영되며, 지출은 사업비 2,635억원, 인건비 136억원 등임

○ 기타사업수입은 대부분 수시수탁사업이며, 사업비 지출은 2024년 기준 정부지정수탁사업 462억원 및 수시수탁 1,691억원 등 수탁수입으로 구성됨

[한국과학창의재단 수입·지출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출연금	81,895	91,459	98,896	96,608	62,233
	보조금	6,165	5,645	176	176	167
	기타사업수입	20,808	23,525	163,448	134,121	218,479
	기타	479	190	28	184	636
	수입합계	109,347	120,819	262,548	231,089	281,515
지출	인건비	11,499	12,224	12,959	13,740	13,602
	경상운영비	4,350	4,073	4,063	3,807	3,991
	사업비	93,418	104,463	245,351	213,249	263,493
	기타	80	59	175	293	429
	지출합계	109,347	120,819	262,548	231,089	281,51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되며, EBS에 '민간위탁사업비' 형태로 재교부되고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사업[3]은 디지털대전환 시대 SW·AI 등 디지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및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EBS-SW플랫폼 구축·운영, 미래세대 SW·AI교육 활성화, 예비교원 SW역량 강화, 특성화고 SW·AI교육 강화 사업과 같은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EBS-SW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별도로 EBS가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해당 사업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내역사업의 출연금 형태로 교부[4]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EBS-SW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명목으로 EBS에 민간위탁사업비 형태로 재교부[5]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BS 순지원 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지원유형	내역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보통신 진흥기금	출연금 (한국과학창의재단) ↓ 민간위탁사업비 (EBS)	EBS-SW 플랫폼 구축·운영	1,091	1,111	1,159	857	860

주: 2021~2024년은 결산, 2025년은 예산
자료: EBS

3)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2232-326

4) (비목) 민간이전 - (세목) 민간위탁사업비 형태

5)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출연받은 9억원 중 8.6억원이 EBS로 교부되며, 4,000만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업관리비로 활용(사업평가 및 인력 예산 등)

[2024회계연도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한국과학창의재단)	6,175	6,175	-	-	-	6,175	6,175	-	-
EBS-SW 플랫폼 구축·운영 (EBS)	900	900	-	-	-	900	900	-	-
미래세대 SW·AI 교육 활성화	5,000	5,000	-	-	-	5,000	5,000	-	-
예비교원 SW역량 강화	175	175	-	-	-	175	175	-	-
특성화고 SW·AI 교육 강화	100	100	-	-	-	100	100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나. 주요 쟁점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에 따르면 EBS에 대한 재원 충당 방식 중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항목이 없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위탁 사업을 발주하여 EBS에 수주하는 방식으로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에 따르면 공사의 경비는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②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일부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④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⑤ 그 밖의 수입금[6]으로 재원(財源)을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사업수입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민간위탁사업비' 방식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EBS에 사업발주[7]를 통해 재교부하고 있으며 출연금 중 일부가 사업관리비로 활용되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이 EBS에 직접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법적 근거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비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형태로 직접 지원이 어려워,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재교부하면서, 예산 중 일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관리비로 활용되고 있음[8]

○ 따라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예산 전액을 EBS에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 등을 장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 필요

---

7) EBS 사업수입으로 계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사업수입

8)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적 품질과 전문적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EBS를 용역수행사업자로 정책 지정 위탁한 사업임

5 시청자미디어재단

5-1. EBS 보조금 교부 법적 근거 보완 필요

가. 현 황

❑ 시청자미디어재단[1]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되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2]으로 설립됨

❑ 2024년 기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대부분 정부보조금(441억원) 수입으로 운영되며, 지출은 사업비 292억원, 인건비 152억원 등임

◦ 수입·지출 합계는 2024년 기준 538억원으로 2020년 431억원에 비해 107억원 증가하였으며, 정부보조금은 2020년 378억원에서 2024년 441억원으로 63억원 증가하였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수입·지출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보조금	37,807	35,924	44,528	47,847	44,089
	기타	5,332	6,220	5,811	5,494	9,460
	수입합계	43,139	42,144	50,339	53,341	53,783
지출	인건비	12,452	13,526	14,028	14,521	15,182
	경상운영비	5,509	6,159	5,983	6,255	7,376
	사업비	25,178	22,459	24,037	30,653	29,156
	기타	-	-	6,291	1,912	2,069
	지출합계	43,139	42,144	50,339	53,341	53,78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2)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중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으로 교부되며, EBS에 '간접보조금'[3] 형태로 재교부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4]은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과 같은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해당 사업 관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201.76억원) 중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되는 예산은 178.30억원이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명목으로 KBS 등 59개사에 '간접보조금'[5] 형태로 교부하고 그 중 EBS에 1.63억원을 배정함

[방송통신위원회 EBS 순지원 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지원유형	내역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방송통신 발전기금	보조금 (시청자미디어재단) ↓ 보조금 (EBS)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182	197	167	163	173

주: 2021~2024년은 결산, 2025년은 예산
자료: EBS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4)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3132-308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024회계연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방송통신위원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0,176	20,176	-	-	-	20,176	20,176	-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8,130**	**8,130**	**-**	**-**	**-**	**8,130**	**8,130**	**-**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9,000	9,000	-	-	-	9,000	9,000	-	-
시청각장애인 방송 서비스 기반 구축	646	646	-	-	-	646	646	-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700	1,700	-	-	-	1,700	1,700	-	-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700	700	-	-	-	700	700	-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주요 쟁점

❑ 시청자미디어재단은「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19조제3항에 명시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므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EBS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간접보조금' 방식으로 EBS에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방식은「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기관이 EBS에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6]에 따르면 EBS

6)「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방송법」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 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는 보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을 수 없음

- 여기서 국가의 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해당 법에 따라 국가로 규정할 수 있어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법인[7]으로 국가라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EBS에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8]

❑ 법인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EBS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법적 근거 등 보완 필요[9]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같은 법인으로부터 EBS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국가가 직접 EBS에 보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7)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급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보조금의 구체적 지급 사무까지 반드시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재단은 「방송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 사무를 처리해왔으며, 이로써 지급된 보조금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보조금의 지급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간접보조방식이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1. 중증장애인생산품 5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가. 현 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29%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로, 전체 공공기관 중 244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달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37개 기관	25,192,155	322,312	1.2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12,970	1,200	0.29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0.16%, 2021년 0.24%, 2022년 0.07%, 2023년 0.2%, 2024년 0.29%로 5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585,463	949	0.16
2021	446,893	1,088	0.24
2022	503,133	353	0.07
2023	429,026	864	0.2
2024	412,970	1,200	0.29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인공지능·데이터·네트워크 등 국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체 구매액의 87.6%가 관련 용역이며 '24년 주요 구매 물품은 무선통신장치(307억원, 60%), SW·HW(119억원, 23%) 등임. 이러한 기관 업무 특성과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구매 가능한 관련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며, 24년 기준 목표비율(1%) 달성을 위해서는 약 41억원을 구매해야 하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능한 항목(인쇄·홍보물·소모품 등)의 예산은 총 19억원(46%)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구매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또한 인쇄 등으로 제한적이므로 기관별 구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구매액 기준 변경(SW사업 제외 등) 등 구매비율 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1 한국농어촌공사

1-1. 농지보전부담금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가. 현 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이 동 기금의 주된 조성재원임[1)]

○ 최근 3년간 농지관리기금의 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6~30.6% 수준임

[최근 3년간 농지관리기금 수입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기금)	여유자금 회수	총계
	농지보전부담금		융자원금 회수	재산수입	기타	소계			
2022	10,598	30.6	4,604	1,459	243	16,903	12,459	5,307	34,669
2023	8,059	25.6	3,375	1,169	690	13,292	14,343	3,898	31,533
2024	7,473	26.1	3,010	1,161	224	11,868	14,497	2,317	28,6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6. 9., 2018. 3. 20.〉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농지법」제38조제1항[2]에 근거하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으로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임

○ 부과기준: 전용농지면적× 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다음의 율

- 농지진흥지역 외: 100분의 20, 농지진흥지역 내: 100분의 30(상한금액: 5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체계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

② 지자체는 전용 예정 농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결정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③ 공사는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

④ 지자체는 공사로부터 신청인의 부담금 납부 확인 후, 농지전용허가 승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체계]

업무 절차		처리자
①	농지전용허가 신청	신청인→허가권자(관할청)
②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통보	허가권자(관할청)→신청인, 공사
③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	공사→신청인
④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신청인→공사
	부담금 납부 확인 후 농지전용허가, 주 인·허가 및 승인 등	허가권자(관할청)
5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 발생 시 부과 취소 결정 및 농지 원상회복 등 확인	허가권자(관할청)
6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허가권자(관할청)→신청인, 공사
7	환급 신청, 환급 검토 및 환급	신청인→공사, 공사→신청인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2023. 8. 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분할 납부를 신청한 후 연체된 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36억원으로 798억원(51.9%)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률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미수채권(A)	1,538	1,583	2,454	2,371	2,336	798
대손충당금(B)	8	9	11	16	18	10
대손충당률(B/A)	0.5	0.6	0.4	0.7	0.8	0.3
장부가액	1,530	1,574	2,443	2,355	2,318	788

주: 미수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농지법」 제38조[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4]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함

3)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4) 「농지법 시행령」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

-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5]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만을 대행한다는 입장이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

○ 연체채권 394억원 중 253억원(64.2%)은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농지법 시행령」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미수부담금수익) 연체채권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미수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한 도래 (연체채권)	착공	49	12.4
	미착공	253	64.2
	체납해소	72	18.3
	현지조사 예정	20	5.1
	소계	394	100.0
납입기한 미도래		1,942	
합 계		2,336	

주: 1. 2025.6.19. 기준
2. '체납해소'에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체납이 해소된 채권과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 청구 예정 채권이 포함됨
3. '현지조사 예정'은 2024년 발생한 체납 건 중 2025년에 현지 조사가 예정된 채권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회계연도 대차대조표상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하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부담금수익은 2,336억원이나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0.8%)에 불과하며, 미착공 상태로 연체 중인 채권이 253억원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임

-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착공 연체 채권은 농지전용 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취소로 해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명함

○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해서는 채권의 규모, 성격 및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임

❑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농지보전부담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국가 수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1-2. 동반성장협력대출 동일업체 중복지원에 따른 정책혜택 편중 문제 발생

가. 현 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100~120억 원을 기업은행에 예치[1]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지원대상 기업 대출금 금리 인하에 활용됨

- 지원대상 기업은 ① 광주, 전남 지역소재 중소기업, ② 창업기업, ③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④ 공사 추천기업이며, 대출한도는 2~5억원임
- 협력업체는 2020년 55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47개까지 확대됨
- 지원금리는 2020~2024년 동안 1.27%에 추가감면 1.4% 가능함

[한국농어촌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연도	협약 은행	예탁금	예탁이율	은행 대출한도	협력 업체 수	여신잔액	자동감면 금리
2020	기업 은행	10,000	0.94	10,000	55	9,992	1.40
2021		10,000	2.42	10,000	60	9,910	1.27
2022		10,000	3.76	10,000	67	10,000	2.70
2023		12,000	3.76	12,000	114	11,998	4.15
2024		12,000	3.7	12,000	147	13,255	4.00

주: 자동감면 금리는 은행이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특례지원하는 금리이며,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 추가감면 가능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은경 과장 (eunkylee@assembly.go.kr, 6788-3782)

1) 예탁금 예치단위는 1년이며, 대출한도 중 대출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예탁이율의 이자정산이 이루어짐

나. 주요 쟁점

❑ 현재 실적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2022년 동안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대상 업체를 ① 광주, 전남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총 40억원, 동일인당 최대 5억원, ② 창업기업의 경우 총한도 30억원, 동일인당 최대 2억원, ③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한도 30억원, 동일인당 최대 2억원으로 정함

[한국농어촌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 지원대상별 한도 및 여신 잔액]

(단위: 억원)

지원대상 유형	2020		2021		2022	
	총한도	동일인당 한도	총한도	동일인당 한도	총한도	동일인당 한도
광주, 전남 지역소재 중소기업	40	5	40	5	40	5
창업기업	30	2	30	2	30	2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30	2	30	2	30	2
합계	100	-	100	-	100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는 광주, 전남 지역소재업체에 대한 총 지원한도액 40억원 중 87.5%인 35억원이 2020~2022년 동안 동일한 업체에 지원된 사례가 있음

- 동 프로그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약은행에 제공하고,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구조에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2020년에 선정된 업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부 업체만이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간접적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이 대출액 규모와 참여 기업 수 등 정량적 실적 달성에 치중함으로써 수혜기업이

일부에 편중되고 있음에도, 공사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자금지원이 발생하는 데서 비롯됨

[한국농어촌공사 광주, 전남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출 현황]

업체명	대출잔액	2020	2021	2022
대XXX(주)	300	○	○	○
한XXX(주)	400	○	○	○
완XXXXXXXXX	500	○	○	○
(주)씨XXXXXX	200	○	○	○
(주)이XXX	300	○	○	○
주식회사 경XXX	200	○	○	○
주식회사 로XXXX	200	○	○	○
코XXXXXXX(주)	300	○	○	○
(주)대XXXXX	500	○	○	○
(주)엠XXXXX	100	○	○	○
(주)삼XXXX	200	○	○	○
(주)중XXX	200	○	○	○
3개년도 중복 소계	3,500			
(주)우XXX	100	-	○	○
(주)은X	200	○	○	-
(유)기XXXXXX	100	○	-	-
주식회사 태X	200	-	-	○
합계	4,0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약서 상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기간 한도가 없어, 많은 기업이 3~4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음

- 2023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천하는 업체가 협약서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상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선정한 업체로 구성되었으며, 동일업체가 최장 4년간 혜택을 받는 등 금리지원 효과의 수혜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2020~2022년간 3년 연속으로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은 87~100%이며, 2023년에는 3년 연속 지원비율이 과거연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4년과 중복되는 업체가 16개로, 사실상 대부분이 전년도 혹은 다음연도와 중복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전체 43개 업체 중 23개만 신규업체이며, 16개는 2023년, 4개 업체는 3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한 업체임

[한국농어촌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중 3년 이상 연속 창업기업 대출 지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3년 이상 중복업체 수(a)	20	26	30	11	4
창업기업 대출업체 수(b)	23	26	32	28	43
비중(a/b)	87.0	100.0	93.8	39.3	9.3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에는 광주·전남 지역 기업, 창업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 포함되나,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한 창업기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 추천업체는 대출공급액의 11.9%에 그쳐 정책효과의 극대화에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00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지원도 2020~2022년 동안 창업기업 유형으로 지원받음
- 공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2024년부터 공사가 추천하는 기업을 협약서에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15.75억원의 대출을 공급받았으나, 전체 대출공급액 132.5억원의 11.9%에 불과함

[한국농어촌공사 광주, 전남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광주전남소재기업	4,000	4,000	4,000	4,000	6,169
창업기업	2,992	2,910	2,910	3,000	2,136
코로나19피해기업	3,000	3,000	3,000	3,000	3,375
공사 추천기업	0	0	0	0	1,575
합계	9,992	9,910	9,910	10,000	13,255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추천업체를 확대하고, 대출 수혜기업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재선정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지원규모의 일정비율(예: 30% 이상)을 신규 참여 기업에 배정하고, 동일업체 지원기간 한도 등을 설정하여 정책금융 혜택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한국농어촌공사는 정책금융의 효과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서 나아가 선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해양진흥공사

2-1.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의 해양산업 금융 업무 중복 우려

가. 현 황

❑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이라 한다)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1]에 따라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등 지원을 통해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 같은 법 제11조[2]는 해진공의 주요 업무로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 등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 정책금융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증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13. (생 략)

❑ 한편, 해양산업 관련 정책금융 업무는 해진공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유사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해양산업금융본부[3]를 설치하여 해운, 조선, 항만, 조선기자재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대출·투자·보증 등 종합적인 정책금융을 수행하고 있음

[해양산업 관련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사업 개요]

구분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지원대상	조선을 제외한 해운, 항만·물류기업, 선박 벙커링 등 국내 해양산업 전반	해운, 조선, 항만 등 해양산업 전반
지원제도	투자 및 보증, 정보제공, 컨설팅	대출, 투자, 보증, 수신, 외국환 등 금융지원
협력분야	선박금융, 구조조정 지원 등	선박금융, 구조조정 지원 등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중견·중소 외항 해운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조선소에 신조를 발주한 외국 선주를 중심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3) 한국산업은행은 2014년 9월 해양산업금융본부를 설치한 이후, 2023년 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여 조직을 1본부 2실 체계로 확대 개편하였음

나. 주요 쟁점

❑ 해진공과 산은의 해양산업금융본부는 모두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 간 사업영역이 유사하고,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지원 대상과 방식 등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제공이라는 점에서 중첩되며, 선박·항만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보증 등 금융업무는 실질적 기능이 유사함
- ○ 투자 부문에서는 양 기관 모두 선박 및 항만 인프라 사업에 펀드투자 방식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증 부문에서는 해진공이 산은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여 이 경우 동일한 사업에 두 기관이 모두 관여하게 되는 구조임
  - 대출의 경우, 산은은 조선, 조선기자재, 해운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여신을 집행하는 반면, 해진공은 직접적인 대출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SPC 형태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함
  - 보증의 경우, 산은은 중소·중견 조선기자재 업체, 계열 조선소(삼성중공업)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반면, 해진공은 해운선사 및 항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함

[2024년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해양산업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은 해양산업금융본부
대출	-	8,937
투자	27,670	1,366
보증	26,249	833
합계	53,919	11,136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 다수의 기관이 동일 사업영역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구조는 정책 목적과 역할 분담의 혼선, 정책금융 자원 및 기능의 중복, 업무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관리·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해진공이 산은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공동펀드에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는 협업 방식은 결국 동일한 프로젝트에 두 기관이 중복적으로 관여하게 됨. 이는 정책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자원의 분산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다만, 해양산업에 대한 현재의 금융지원 구조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리스크 분산, 자금 조달의 유연성 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관 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업종 균형 고려

가. 현 황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2년부터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1] 동 프로그램은 중·대형선사에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 · 외항선사이며, 지원 내용은 금융 지원, 기타 금융 지원, 비금융 지원으로 구분됨
- ◦ 일반 지원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① 할인된 투자·보증요율 적용, ② LTV 최대 80% 지원 및 최대 3년 거치기간 부여, ③ 일반 지원 프로그램 기준 외 재무기준 등 추가 기준 요구 등임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 · 외항선사
금융 지원	선박	투자	- 선박도입: 신조선 및 투자종료일 기준 20년 이내 중고선 - 보유선박(S&LB): 투자종료일 기준 25년 이내
		보증	- 신 · 중고선 도입 및 보유선박 담보부 대출 보증
	사업예산		- 2023~2027년까지 5년간 총 5,000억원(2024년 1,000억원) ※ 사업예산의 20%는 영세선사(내부 기준 적용) 우선 배정
기타 금융 지원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 지원		- 선박 1척에 대해 건별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예산) '22년 0.5억원, '23년 0.3억원, '24년 0.8억원, '25년 0.7억원
	해양환경 규제대응 지원 바우처 사업		- 공사 선박금융 지원 중소선사 선박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이용 지원으로 중소선사 탈탄소 규제 대응 경쟁력 강화 도모 - 2024년 시범사업 추진, 10개사 23척 선박 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 공사의 추천을 받은 중소선사가 협약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 시 연 2% 한도로 이자비용 지원 - 선박을 도입하는 중소선사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 및 국적선대 확보 촉진
비금융 지원			- 권역별 설명회, CEO·실무자 간담회, 재무·홍보 컨설팅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2022년 3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사회 의결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계획 승인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중소선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증대[2]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1차 개정 (2022. 10.)	· 지원항목 확대(S&LB) · 보증한도(1척당 최대 50억, 보증기간) 및 지원기준(선박운항실적 3년 이상) 삭제
운영기준 개정 (2023. 1.)	· 선정기준 보강 - 재무기준 신규 반영(부채비율 5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 이상) - 프로젝트 평가 55점 이상, 사업성 비중 강화(배점 조정)
2차 개정 (2023. 12.)	· 지원대상 내항선사까지 확대 · 선사 상황에 적합한 금융조건으로 개선(상환구조, 금융기간 등) · 신용등급별 LTV, 금융규모 기준 신설(최소 50%~최대 80%) · 대출이자 지원 신설: 중소·연안선사 대상(사업예산 300억원)
운영기준 개정 (2024. 3.)	· 연안여객선 선박금융 지원 강화: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까지 사업성 평가에 반영
운영기준 개정 (2024. 8.)	· 대출이자 지원: 공사 추천 중소선사가 운전자금 대출 시 연 2% 한도 이자비용 지원
3차 개정 (2024. 12.)	· 대출이자 지원: ESG 경영 우수 중소선사를 지원대상에 포함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나. 주요 쟁점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 선박금융 지원사업은, ① 선박 도입 투자지원, ② 보유 선박 투자지원(매각 후 재임대, Sale & Lease Back), ③ 선박 도입·보유 선박 보증지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2) 중소·연안선사 지원 관련 주요 정책
- 2022. 7. 섬 주민 이동권 증진(120대 국정과제) 발표: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등 포함
- 2024. 4.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중소선사 지원 강화 명시 등

◦ 선박 도입 투자지원: 선사가 매입하는 신조선 또는 중고선박을 「선박투자회사법」[3]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 구조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

◦ 보유선박 투자지원: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하여 선사에 재임대하는 방식

◦ 선박 도입 · 보유 선박 보증지원: 선사가 신규 선박 도입 또는 보유선박 재금융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채무를 보증함

❑ 선박금융 지원사업은 중소선사가 제출하는 투자 및 보증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금융 조건 협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부심사와 투자·보증심의위원회[4]의 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됨

◦ 최소 선정기준: 중소기업 여부,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공사 익스포져 및 내규, 재무기준(직전연도 부채비율 500% 이하, 최근 3개년 단순평균 이자보상배수 '1' 이상)

◦ 업체별 투자 및 보증 한도는 최대 220억원이며, 회계연도 내 1회 지원이 원칙이나, 하반기 이후 잔여 예산 범위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함

❑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선박금융 지원은 총 15건으로, 누적 지원금액은 총 2,650억원임. 선종[5]별로는 케미컬탱커선 8건, 벌크선 3건, 중량물운반선 2건, 크루즈페리선 1건 및 여객선 1건을 지원하였으며, 케미컬탱커선 등 화물 운송 선박이 전체 지원의 약 87%에 해당함

---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3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함

5) 〈선종별 주요 특징〉
- 케미컬탱커선(Chemical Tanker): 산, 알코올, 액상 화학물질 등 화학제품을 운송하는 특수 탱커선
- 벌크선(Bulk Carrier): 석탄, 철광석, 곡물 등 규격화된 대량 건화물을 선창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
- 중량물운반선(Heavy Lift Vessel): 조선 기자재 등 초대형·고중량 비정형 화물 운송용 특수 선박
- 크루즈페리선(Cruise Ferry): 여객과 차량·화물을 동시에 수송 가능한 복합형 여객선
- 여객선(Passenger Ferry): 단순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 교통수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선박금융 지원 현황]

(단위: 건, kUSD, 억원)

연도	구분	선종	선박 수	선가	지원금액
2022	도입투자	케미컬탱커선	1	11,000	114
		중량물운반선	2	33,000	309
		벌크선	1	15,000	135
	도입보증 (보증비율 95%)	크루즈페리선	1	70,500	684
2023	S&LB	벌크선	1	22,000	175
	도입투자	벌크선	1	21,300	197
		케미컬탱커선	1	12,750	119
2024	S&LB	케미컬탱커선	2	24,090	218
	도입투자	케미컬탱커선	3	68,650	524
		여객선	1	10,732	126
	재금융	케미컬탱커선	1	13,950	49
합계			15	302,972	2,650

주: 2025년 3월 기준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 선박금융 지원사업은 선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 조건,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중소선사가 화물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화물 운송 선박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해상교통 기능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화물·여객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선사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2-3. HMM 지분 보유 관련 문제

가. 현 황

❑ 2025년 5월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구 현대상선)의 지분 35.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36.0%)과 합산하여 전체 지분의 71.7%를 차지함

[HMM 지분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기타	합계
지분율	35.7	36.0	28.3	100.0

주: 2025년 5월 기준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 정부는 2016년 HMM이 해운업 불황,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약 7.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였음

- ○ 이 과정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증자 참여, 영구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S&LB 및 컨테이너박스 투자 등을 통해 지분을 확대함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한국해양진흥공사의 HMM 지분 취득 경과]

(단위: 억원, 백만주)

구분	발행	인수	전환시기	금액	주식 수
기보유주식	-	2017.5.	-	-	14
191회 CB	2017.3.9.	2017.3.9.	2021.10.26.	6,000	84
192회 CB	2018.10.25.	2019.3.29.	2023.10.19.	2,000	40
193회 BW	2018.10.25.	2019.3.29.	2023.10.19.	3,000	60
194회 CB	2019.5.24.	2020.5.24.	2024.5.20.	500	10
195회 CB	2019.6.27.	2020.6.28.	2024.6.21.	1,000	20
196회 CB	2019.10.28.	2020.10.29.	2024.10.22.	3,300	66
197회 CB	2020.4.23.	2020.4.23.	2025.4.23.	3,600	72
합계				19,400	366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 2024년 말 기준, HMM의 매출액은 11.7조원, 영업이익은 3.5조원, 자산은 33.8조원임

[HMM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50,280	52,221	55,131	64,133	137,941	185,828	84,009	117,002
영업이익	△4,068	△5,587	△2,997	9,808	73,775	99,494	5,848	35,128
당기순이익	△11,907	△7,906	△5,898	1,240	53,372	101,172	9,687	37,807
자 산	36,024	41,214	71,602	93,734	178,761	260,667	257,134	338,486
부 채	27,055	30,818	60,699	76,848	75,178	52,856	42,726	59,724
자 본	8,969	10,396	10,903	16,885	103,583	207,811	214,408	278,762
부채비율	301.7	296.4	556.7	455.1	72.6	25.5	19.9	21.4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은 2023년 HMM 지분 약 38.9%(399백만주)를 공동 매각 추진하였으나, 팬오션-JKL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무산된 바 있음

나. 주요 쟁점

❑ 2025년 4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마지막 전환 대상인 제197회 영구전환사채(CB) 전환을 완료하여 HMM 지분율이 35.7%로 상승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도 36.0%로 확대되어 두 기관의 지분율 합계는 71.7% 수준임

◦ 두 기관이 보유한 HMM 지분 가치는 총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국내 대표 해운사 지분의 과반 이상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구조임

❑ HMM의 경영정상화 이후에도 공공기관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 구조는 향후 매각 과정에서 민간 인수자의 자금 부담과 경영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HMM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경영체제로의 전환 여부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향후 HMM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현재 HMM 재매각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과 구체적인 논의를 재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재매각 방법과 시기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3 해양환경공단

3-1. 정부 예산사업 과다 이월 문제

가. 현 황

❑ 해양환경공단은 여러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임

○ 해양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중인 정부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갯벌 및 하구복원 440억 3,6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 210억 6,400만원, 청항폐유 사업 172억원 등으로 나타남

[해양환경공단의 2025년 정부사업의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예산(A)	지출예산(D=B+C)		
		손익예산(B)	자본예산(C)	소계(D)
갯벌 및 하구복원	44,036	42,183	-	42,183
해양폐기물 정화	21,064	19,570	-	19,570
청항폐유	17,200	18,737	-	18,737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17,016	16,093	-	16,093
해양생태계조사 및 관리	10,292	9,423	-	9,423
기타 정부사업	52,732	49,163	839	50,047
합계	162,340	155,169	839	156,008

주: 해당 5개 사업은 2025년 정부사업별 수입예산 기준 상위 5개 사업임
자료: 해양환경공단

나. 주요 쟁점

❑ 해양환경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때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1])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의 예외임

- 예산의 이월은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에 위반됨
- 기본적으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2]가 있음
-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의 경우 갯벌 및 하구복원 사업의 집행률이 2024년 기준 35.5%, 침몰선박관리 사업의 경우 58.8%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해양환경공단 주요사업의 이월 내역]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갯벌 및 하구 복원	2020	2,840	-	-	2,840	2,840	-	-	100.0
	2021	6,152	-	-	6,152	6,152	-	-	100.0
	2022	10,599	-	-	10,599	10,599	-	-	100.0
	2023	21,231	-	-	21,231	9,715	11,516	-	45.8
	2024	18,131	-	-	29,647	10,522	19,125	-	35.5
노후 폐유수용 시설 현대화	2020	-	-	-	-	-	-	-	-
	2021	900	-	-	900	615	285	-	68.3
	2022	18,000	-	-	18,285	1,268	17,017	-	6.9
	2023	11,918	-	-	28,935	21,784	7,151	-	75.3
	2024	5,445	-	-	12,596	9,998	2,231	367	79.4
침몰 선박 관리	2020	3,724	-	-	3,724	3,724	-	-	100.0
	2021	3,724	-	-	3,724	3,713	-	11	99.7
	2022	6,680	-	-	6,680	6,638	-	42	99.4
	2023	8,195	-	-	8,195	6,213	604	1,378	75.8
	2024	10,860	-	-	11,464	6,743	4,721	-	58.8

자료: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25.1.

❑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제시

- ○ 법 개정에 따른 설계·공사 추진 순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 외부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음
- ○ 이에 따라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점차 사업의 이월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 ○ 다만 주요 이월 사유들을 볼 때 적합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설계기간, 외부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한다다는 점에서 전망이 타당한지 의문

[사업의 주요 이월 사유]

사업명	주요 이월 사유
갯벌 및 하구복원	해양 환경 조사 및 현장 적합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설계 기간 소요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항만법 개정에 따른 설계·공사 추진 순연 공사 착공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침몰선박관리	잔존유 제거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 이월

자료: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공단은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소관 부처의 경우에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3-2.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해양환경공단은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운영 중

◦ 엔담호는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으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해양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해양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에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개선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대형방제선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건조 작업이 이루어짐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기능, 강이나 운하, 항만 등의 바닥에 있는 흙, 모래, 광물 등을 파내는 준설기능, 해상부유물 및 장애물 수거·긴급 예인 등의 기타 공적기능을 수행함

❑ 엔담호는 평시에도 출항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이 발생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07.12)와 같은 악천후·외해에서의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기에 상시 관리 필요

◦ 운영비의 경우 다목적 대형방제선 선박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유지보수비, 보험료(선체, P&I[1], 선원) 등 필수 소요경비를 의미함

◦ 2022년 5월 건조 이후 2024년까지 총 130억 6,300백만원의 운영비 발생

- 엔담호를 건조하는데 소요된 751억 7,600만원을 합산하면 2024년까지 총 882억 3,900만원이 소요됨[2]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해상보험의 일종인 선주상호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을 의미함. 일반 선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선주들이 상호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상호보험임

2)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비 및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건조비	2,200	19,428	13,551	15,999	23,998	-	-	75,176
운영비	-	-	-	-	2,901	4,944	5,218	13,063
합계	2,200	19,428	13,551	15,999	26,899	4,944	5,218	88,239

나. 주요 쟁점

❑ 본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음

- ◦ 엔담호 건조사업의 경우 당초부터 「해양환경관리법」[3]에 따라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건조 이후 운영·유지에 있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환경공단의 전신)이 평상시 준설, 해양 폐기물 수거 등 복합적 업무 수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4]
-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5]에서는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직접 준설작업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준설선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 그러나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고자 한 당초의 계획과 달리 건조 이후 준설선을 임대한 실적이 1건에 불과하고, 그 실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2억 9,200만원에 불과함
  - 엔담호의 탱크용량은 총 5,195㎥로 방제전용 1,000㎥, 준설겸용 4,195㎥의 용량이 할당됨
  - 해당 탱크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용량이 10,000㎥가 넘는 민간 준설사업선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떨어짐
  - 이에 따라 엔담호를 임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3)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준설·폐기물 수거 겸용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엔담호 활용 준설작업 임대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기간	사업	계약업자	수주금액
2024.4.14. ~ 5.10.	광양 제2LNG터미널 건설공사 준설시범사업	포스코이엔씨	292

자료: 해양환경공단

◦ 2024년까지 발생한 운영비 130억 6,300만원 중 준설작업 수주를 통해 얻은 2억 9,200만원을 제외한 127억 7,100만원이 국고보조로 이루어졌고, 2025년 운영비 52억 1,800만원 역시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될 예정

❑ 엔담호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차이가 존재함

◦ 해양환경공단의 엔담호 운영은 일본의 준설겸용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이쇼마루(海翔丸), 세이류마루(清龍丸), 하쿠산(白山) 등 총 3척의 다목적 방제선을 벤치마킹한 것

◦ 일본은 「항만법」 제52조[6]에서 국토교통성 소속 다목적방제선은 해양수송망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직접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7]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고, 여전히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6) 「항만법」 제52조(직할공사) ① 국제전략항만, 국제거점항만 또는 중요항만에서 일반교통의 편리 증진, 공해의 발생방지 또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고, 피난항에서 일반교통의 편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와 항만관리자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국토교통대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항만공사를 직접할 수 있다.
1. 국제전략항만이 장거리 국제해상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국제해상화물수송망의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류시설로서 국토교통성으로 정하는 것 및 이에 부대하는 하역지의 항만공사
2. 국제전략항만, 국제거점항만 또는 중요항만이 해양수송망의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전호에서 규정한 계류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임항교통시설로서 국토교통성으로 정하는 것의 항만공사

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557호,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은 엔담호가 자체적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중증장애인생산품 4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가. 현 황

❑ 해양환경공단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64%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로, 전체 공공기관 중 244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해양환경공단은 미달성

[해양환경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37개 기관	25,192,155	322,312	1.28
해양환경공단	78,971	504	0.64

자료: 해양환경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요 쟁점

❑ 해양환경공단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양환경공단의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1년 0.92%, 2022년 0.77%, 2023년 0.67%, 2024년 0.64%로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4년간 해양환경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70,584	650	0.92
2022	77,572	601	0.77
2023	86,543	580	0.67
2024	78,971	504	0.64

자료: 해양환경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부산항만공사

4-1. 부채비율 급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필요

가. 현 황

❑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임

◦ 부산항만공사의 주요 사업은 항만시설 개발 및 관리·운영, 배후단지 조성 및 관리, 항만 재개발, 물류시설 운영 등임

❑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대규모 항만개발 및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부차입 등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부채 및 부채비율이 증가 중임

◦ 자산총계는 2020년 6조 4,780억원에서 2024년 8조 502억원으로 24.3% 증가했으나, 부채증가율(57.5%)이 자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부산항만공사의 금융부채는 2020년 2조 1,589억원에서 2024년 3조 9,375억원으로 82.4% 증가하여, 동 기간 자산 증가율(24.3%) 대비 3.4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임

◦ 부채총계는 2020년 2조 5,524억원에서 2024년 4조 192억원으로 57.5% 급증하여 최근 5년간 부채가 대폭 확대

◦ 부채비율은 2020년 65.0%에서 2024년 99.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거의 100% 수준에 도달

◦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5억원에서 2024년 49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066억원에서 1,285억원으로 20.5% 증가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부산항만공사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액(B-A)
자산총계	64,780	70,365	74,839	78,586	80,502	15,722 (24.3)
부채총계	25,524	30,883	35,073	38,591	40,192	14,668 (57.5)
자본총계	39,255	39,482	39,766	39,995	40,309	1,054 (2.7)
금융부채	21,589	26,664	31,201	36,334	39,375	17,786 (82.4)
부채비율	65.0	78.2	88.2	96.5	99.7	34.7 (53.4)
매출액	3,969	5,653	3,421	3,552	3,796	△173 (△4.4)
영업이익	1,066	1,012	1,090	1,339	1,285	219 (20.5)
당기순이익	445	408	421	349	499	54 (12.1)

주: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부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부산항만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와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부채증가 속도가 수익 창출 능력을 크게 상회하여 재무건전성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부산항만공사의 총 금융부채는 2020년 2조 1,589억원에서 2024년 3조 9,375억원으로 82.4% 증가하여 증가율이 동기간 자산 증가율 24.3% 대비 약 3.4배 수준에 해당함

- 5년간 지속적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2024년 3조 9,375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48.9%에 달함

◦ 부채 증가 속도가 수익 창출 능력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5년간 금융부채 증가율 82.4%에 비해 매출 증가율은 △4.4%로 오히려 감소하여 투자확대가 매출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임
- 차입금의존도가 2020년 33.3%에서 2024년 48.9%로 15.6%p 상승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4년 33.9% 수준으로 양호하나, 금융부채 증가율(82.4%)이 매출 증가율(△4.4%)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부산항만공사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율 ((A/B)/A)
금융부채	21,589	26,664	31,201	36,334	39,375	82.4
자산총계	64,780	70,365	74,839	78,586	80,502	24.3
차입금의존도	33.3	37.9	41.7	46.2	48.9	15.6
매출액	3,969	5,653	3,421	3,552	3,796	△4.4
영업이익[1)]	1,066	1,012	1,090	1,339	1,285	20.5
매출액영업이익률[2)]	26.9	17.9	31.9	37.7	33.9	7.0

주: 1) 차입금의존도(%) = (금융부채 ÷ 자산총계) ×100
2)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100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부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부산항만공사의 대규모 항만개발 및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금 투입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임

◦ 주요 투자사업들의 총사업비는 약 7.3조원 규모에 달하며,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예상됨

- 총 8개의 주요 투자사업과 기타 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가 72,829억원이며, 이 중 2024년까지 이미 22,064억원(약 30.3%)이 투입되었으며, 2025년에는 6,266억원, 2026년 이후에는 44,499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

-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사업비의 61.1%에 해당하는 44,499억원이 2026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향후 부산항만공사의 부채규모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진해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으로 총 17,183억원이 투입되며, 부산항 북항 1단계 및 2단계 재개발사업도 각각 15,494억원, 13,41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됨

[부산항만공사 주요 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4년까지 사업비	'25년 사업비	'26년 이후 사업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08~'27	15,494	12,531	1,275	1,688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23~'30	13,410	14	42	13,354
진해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22~'30	17,183	62	914	16,207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13~'27	6,248	2,672	1,044	2,532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13~'26	978	741	48	189
부산항 신항 남'컨'항만배후단지	'15~'25	2,885	2,466	414	5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항만배후단지	'22~'34	7,211	1,232	521	5,458
기타 주요 투자사업	-	9,421	2,347	2,008	5,066
총계	-	72,829	22,064	6,266	44,499

자료: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의 유동성 지표 악화로 단기 지급 능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유동비율이 2020년 24.0%에서 2024년 11.4%로 지속적으로 악화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 일반적으로 유동비율 200% 이상이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부산항만공사는 11.4%로 낮은 수준
- 유동자산 999억원 대비 유동부채 8,800억원으로 단기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 현금및현금성자산이 2020년 1,056억원에서 2024년 737억원으로 감소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자금이 제한적임

[부산항만공사 유동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동자산	1,494	4,476	4,503	5,421	999
유동부채	6,222	3,851	7,000	7,588	8,800
유동비율	24.0	116.2	64.3	71.4	11.4
현금및현금성자산	1,056	886	334	725	737

주: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부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 재작성

❑ 부산항만공사는 부채증가로 인한 유동성 악화와 이자비용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채비율(99.7%)과 차입금의존도(48.9%) 역시 높은 수준으로 단기 유동성 관리 및 자금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함

4-2.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추진 지연 및 투자비 회수 문제

가. 현 황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1~4부두, 중앙부두) 일원을 국제관문 및 해양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대형 도시재생 사업임

- ○ 부산 신항의 개장과 국제여객터미널 통합 필요, 원도심 연계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7년까지로 예정됨
- ○ 총사업비는 2조 9,928억원으로 부산항만공사, 정부, 부산시가 분담하는 구조
  - 부산항만공사 2조 3,216억원(7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3,595억원, 부산시 3,117억원을 각각 부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현황]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8~2027년
총사업비	2조 9,928억원
	부산항만공사 23,216억원(77.5%), 정부 3,595억원(12.0%), 부산시 3,117억원(10.5%)
전체면적	1,552,830㎡

자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13회 변경) 고시('25.7.29.)

- ○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 투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사업수지표 기준)]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197	1,308	3,017	495	897	1,253	1,553	814	326	361	450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사업비	
978	2,980	2,942	2,550	1,719	1,235	912	912	912	26,811	

주: 상부시설(부산시)을 제외한 기반시설(부산항만공사+정부)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임
자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13회 변경) 고시('25.7.29.)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상업업무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지구별 개발 현황 총 5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 계획을 수립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지구별 개발 계획]

(단위: m^2, %)

구분	면적	주요 도입시설
상업업무지구	46,005.5	복합상업: 쇼핑센터, 위락시설 업무지원: 국제업무, 국제회의장, 호텔
IT영상전시지구	56,569.4	문화전시: 공연장, 전시장, 스튜디오 복합사업: IT 쇼핑몰, 업무시설
해양문화지구(랜드마크)	113,285.6	레저휴양: 리조트, 호텔, 워터파크, 수족관, 불허용도외 모든 용도 허용
해양문화지구(기타)	58,455	레저휴양: 호텔, 놀이공간, 해양콘도 상업기능: 백화점, 쇼핑센터, 업무시설
복합도심지구	27,021.8	휴식휴양: 관광호텔, 서비스레지던스 상업판매: 복합쇼핑몰, 테마레스토랑 주거기능: 공동주택, 아파트(주상복합)
복합항만지구	161,577.2	여객기능: 국제여객·크루즈터미널 공공관광: 옥상광장, 컨벤션센터, 면세점
합계	462,914.5	-

주: 2025년 1월 기준
자료: 부산시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토지 매각 실적 부진으로 투자비 회수에 우려가 제기됨

○ 전체면적은 155만㎡이며, 이 중 수로 및 해수면(42만㎡)을 제외한 육지부의 면적은 113만㎡임

- 육지부 면적 113만㎡ 중 공원(19만㎡), 철도(2만㎡), 도로(18만㎡), 마리나(4만㎡) 등의 공공시설(83만㎡)를 제외한 실제 매각 대상부지는 약 30만㎡(27%)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매각 대상부지 현황]

(단위: 만m^2, %)

구분	면적	비율
유치시설용지	30	19
공공시설 용지	83	54
항만시설	16	10
복합항만지구	16	10
공원	20	14
기타(철도, 도로, 마리나 등)	31	20
해수면	42	27
전체면적	155	100

자료: 부산항만공사

○ 매각대상 30만m^2 중 현재까지 13만 4,986m^2(45%)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55%에 해당하는 16만 2,516m^2이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음

- 분양 완료된 부지는 주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계약되었으며, 최근 분양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 분양완료 부지의 총 매각액은 4,942억원이며, 평균 분양단가는 m^2당 458만원 수준임
- 복합도심지구 A-4 블록(27,022m^2)은 GS컨소시엄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미매각 상태인 잔여부지는 162,516m^2로, 주요 대상은 해양문화지구 Z블록(142,174m^2)과 IT영상전시지구 B-1, B-2-1 블록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분양 현황]

(단위: m^2, 억원)

구분			면적	매각 대상	계약시기	매각금액
분양완료	상업업무지구	D-1	16,540	협성르네상스	2012.12.	638
		D-2	16,224	동원개발	2018.12.	1,323
		D-3	13,241	부산오션파크	2018.12.	833
	IT영상전시지구	B-2-2	5,972	불교방송	2015.12.	209
		B-3	16,667	부산일보	2015.12.	551
		B-4	13,605	부산MBC	2015.12.	413
	환승센터	C-1	25,715	피큐건설	2016.12..	974
	복합도심지구	A-4	27,022	GS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부지	(계약시점 감정가격)
	소계		134,986	-	-	4,942
잔여부지	해양문화지구	Z	142,174	공개경쟁입찰	-	-
	IT영상전시지구	B-1	14,655	〃	미정	-
		B-2-1	5,671	〃	미정	-
	소계		162,516	-	미정	-

주: 해양기관클러스터 조성부지[복합항만지구(E-1-1, 80,445㎡)], 공공부지[공공포괄용지(H블록, 14,202.8㎡)]는 공공분양예정(국가 귀속)

자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분양 현황]



자료: 부산항만공사

◦ 더욱이 랜드마크 부지(해양문화지구 Z블록, 113,286m^2) 매각 공모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유찰됨

- 랜드마크지구는 동 사업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으로 지역 활성화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랜드마크 기능을 계획
- 랜드마크 부지 매각 공모의 연속 유찰로 인한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

[랜드마크 부지 매각 공모 현황]

구분		공급면적	입찰결과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지구)	Z-1-2	113,285.60m^2	1차(2023.03.16.) 유찰(1개사 참여)
			2차(2024.03.28.) 유찰(무응찰)

자료: 부산항만공사

❑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으로 인한 매각 면적 제한과 핵심 부지 연속 유찰로 인해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

◦ 부산항만공사는 총사업비(2조 9,928억원) 중 부산항만공사 보전사업비인 1조 8,807억원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여건임

◦ 2023년 3월 토지감정 평가에 따르면[1] 조성 토지가치를 약 2조 8,351억원으로 평가하였음

1) 토지감정평가 결과(2023년 3월)

지구	블록명	면적(㎡)	감정가격(억원)	비중(%)
해양문화지구	Z	171,740.6	9,207	32.5
복합항만지구	E	223,047.8	6,363	22.5
상업업무지구	D	46,005.5	3,980	14.0
IT영상전시지구	B	56,569.4	3,522	12.4
복함도심지구	A	27,021.8	2,112	7.4
환승센터	C	25,714.5	1,292	4.6
기타	K,I,H,M,F	60,277.1	1,875	6.6
합계	-	610,376.7	28,351	100.0

자료: 부산항만공사

- 감정평가 대상은 총 610,376.7㎡(약 61만㎡)로 실제 매각 대상 부지(약 30만㎡)의 2배에 달하며, 감정가격에는 매각이 불가능한 공공시설, 항만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특히 감정가격의 32.5%를 차지하는 해양문화지구 Z블록(9,207억원)은 2023년과 2024년 연속 유찰되었으며, 복합항만지구(E블록, 6,363억원), 항만시설(K블록), 공공포괄용지(H블록) 등은 매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음
- 이미 분양 완료된 부지(13.5만㎡)의 실제 매각가는 4,942억원으로, ㎡당 평균 366만원 수준인 반면 동일 부지의 감정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감정가격과 실제 시장가격 간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함
- 더욱이 전체 사업면적의 70%가 공원 등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분양 가능 면적이 극히 제한적이고, 실제 시장 반응을 고려할 때 투자비 완전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1월 기준 매각 대상 30만m^2 중 55%가 미매각 상태이고 이 중 가장 핵심 부지인 랜드마크지구(14.2만m^2)는 연속적으로 유찰됨에 따라 향후 매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임

❑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분양 부진으로 인한 투자비 회수 지연은 부산항만공사의 유동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잔여 사업비 투자와 분양 부진이 계속될 경우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4-3. 해외물류센터 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1]에 따라 부산항의 환적 우수성 및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부산항 연계 해외물류거점 확장을 위해 해외물류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

○ 부산항만공사는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해외 내륙 물류센터 부족 해소를 위해서 해외물류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LA/LB 등 4개 지역에서 5개소의 해외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투자금액은 475억원에 달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정부는 2024년 11월 글로벌 환적 거점항만으로서 부산항의 위상 유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부산항 경쟁력 강화)」을 수립

[부산항만공사(BPA) 해외물류센터 현황]

구분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2)	미국LA/LB
위치	로테르담 항만 배후단지 마스블락트 서측	바르셀로나항 ZalPort Container Terminal 배후	프로볼링고항, 수라바야항 배후	미국 LA/LB 항만 인근 Carson지역
회사명	Busan Port Authority B.V.	B2B LOGISTICS	PT.Probolinggo Logistics Center	BNJ Globla Inc
BPA 출자액	23,578백만원	346백만원	1,326백만원	22,245백만원
지분	BPA 100%	BPA 51%	BPA 24.5%,	BPA 40%,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49%	KIND 24.5%	주성씨앤에어 60%
		-	코린도그룹 계열사 PK 51%	-
출자일	2021. 3. 9.	2021. 10. 22.	2021. 6. 4.	2024. 6. 21.
운영개시	2022. 1.~	2022. 6.~	2021. 10.~	2024. 9.~
임대현황	삼성SDS	태웅로직스	합작법인에서 직영	합작법인에서 직영
취급화물	케미칼 원료, 의료용품 등	타이어, 케미칼 원료, 음료 등	생활용품, 비료, 시멘트, 합판, 일반화물	화장품, 전자기기 부품, 소형 전자기기 등

자료: 부산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부산항만공사의 해외물류센터 사업은 공사 설립법상 사업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운영방식이 해외물류사업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부산항만공사의 해외물류센터 사업은 「항만공사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운영업 및 제7호에 따른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업범위에 포함

◦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 해외물류센터 부족 해소라는 사업목적이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함

❑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에 따르면 민간의 해외물류센터 직접 투자 한계를 근거로 공공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산항만공사 역시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책의 부합성이 떨어짐

◦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에 따르면 국내 10대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해외물류센터 423개소 중 자영비율이 5.8%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현지 물류센터 임대, 현지 업체에 위탁운영, 현지 업체와 합작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관 공동 물류센터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5개 해외물류센터 중 네덜란드 물류센터를 제외한 4개소는 민간과의 합작법인 또는 재임대 형태로 운영

- 스페인은 합작법인이 현재 배후단지 관리업체로부터 기존 물류센터를 임대하여 국내 운영사에 재임대하는 방식
- 인도네시아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 지분 24.5%의 합작법인이 프로볼링고 물류센터를 직접운영하고 수라바야 물류센터를 임차하여 기업에 재임대

2)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사업) ②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 항만의 건설
2.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 미국LA/LB는 부산항만공사 지분 40%의 합작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운용구조는 정부가 제시하는 '우리 기업 우선 사용, 물류서비스 할인 제공(시장가 80~90% 수준), 현지 컨설팅 지원' 등의 공공목적 이행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센터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실질적 운영권이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음

- 스페인의 경우 국내 운영사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운영권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역시 임차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 우선 지원 등 공공목적 달성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려움

[부산항만공사(BPA)의 해외물류센터 운영 방식]

구분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LA/LB
			프로볼링고	수라바야	
운영방식	BPA 직영/ 삼성SDS임대	합작법인 → 재임대 (태웅로직스)	합작법인 직영	합작법인 → 재임대	합작법인 직영
BPA지분	100%	51%	24.5%	24.5%	40%

자료: 부산항만공사

❑ 운영방식에 따라 성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부산항만공사의 해외물류센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총 47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었으나, 실제 운영 성과는 운영방식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부산항만공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센터의 중소·중견기업 이용률은 73.9%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인 반면, 합작법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은 20~55% 수준에 그침

- 인도네시아 센터의 경우 현지기업 이용률이 80%에 달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부산항만공사(BPA)의 해외물류센터 이용 현황]

(단위: 개)

구분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수라바야	미국LA/LB
중소·중견기업	17 (73.9%)	2 (22.2%)	1 (20%)	5 (55.6%)
대기업	4 (17.4%)	3 (33.3%)	-	1 (11.1%)
현지기업	2 (8.7%)	4 (44.5%)	4 (80%)	3 (33.3%)
총 계	23 (100%)	9 (100%)	5 (100%)	9 (100%)

주: 1. 2024년 12월말 기준
2. 중소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상회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 따라서 향후 해외물류센터 사업 추진 시에는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정책목적 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4-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투자심의회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미심의 문제

가. 현 황

❑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부터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확장사업은 부산항이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 컨테이너터미널 물류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확장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부지면적	219,660.6㎡
건립내용	부지조성 219,660.6㎡, 안벽 350m, 선착장 조성 2,904㎡ 등
총사업비	129,088백만원(VAT포함), 사업기간 2015~2021년
조감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건설사업은 신항구 연접 인근 배후지역 개발을 통해 신항 개발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하고, 부산 신항 개발계획에 기초한 항만 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건설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일원
부지면적	520,377㎡(욕망산 면적)
건립내용	욕망산 개발 2,867만㎥ , 항만배후단지 부지조성 520,377㎡ , 부대시설 1식
총사업비	782,522백만원(VAT포함), 사업기간 2022~2034년
조감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및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사업은 부산신항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자동화 스마트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633
부지면적	컨테이너크레인(C/C) 9기, 트랜스퍼크레인(T/C) 46기
건립내용	더블트롤리 컨테이너크레인(DTQC) 9기, 트랜스퍼크레인(ARMGC) 46기 제작·설치·시운전 1식
사업기간	2019. 12. ~ 2023. 12.
총사업비	3,224억원(VAT 제외)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부지면적	컨테이너크레인(C/C) 6기, 트랜스퍼크레인(T/C) 34기
건립내용	더블트롤리 컨테이너크레인(DTQC) 6기, 트랜스퍼크레인(ARMGC) 34기 제작·설치·시운전 1식
사업기간	2024. 6. ~ 2027. 7.
총사업비	3,673억원(VAT 제외)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부산항 신항 서‘컨’ 2-5/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사업 조감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자체 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투자 심의를 면제하는 등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그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1]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별도로 투자심의회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부산항만공사 기관 내부 투자사업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였음

○ 부산항만공사는 자체 규정(부산항만공사 투자심사지침)[2]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로 사업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위원회를 면제하였음

○ 위 4개의 사업은 2015~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위 자체 규정에 따라 모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투자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ㅇ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2) [부산항만공사 투자심사지침]

> 제3조(투자심사 대상)
> ①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정부 법·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

[부산항만공사의 투자심의회 심의 미실시 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투자심의회 심의 미실시 사유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확장사업	2015~2021	1,421	정부정책사업 (항만기본계획 고시)으로, 자체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 면제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건설	2022~2034	7,211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사업	2019~2024	3,224	타 위원회(항만시설장비위원회)를 통한 투자 적정성 검토 완료, 자체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 면제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 · 설치사업	2023~2027	3,673	

주: 사업 철회, 보류, 미추진 건 제외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부산항만공사는 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도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은 주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 수행 자금을 조달하는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기관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재무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5 인천항만공사

5-1.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에 따른 단기 유동성 관리 및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천항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임

◦ 인천항만공사의 주요 사업은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시설 조성 관리에 관한 사업 등

❑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부채 급증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부채총계는 2020년 10,242억원에서 2024년 14,189억원으로 38.5% 급증하여 최근 5년간 부채가 대폭 확대

◦ 부채비율은 2020년 45.5%에서 2024년 62.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자산총계는 2020년 32,761억원에서 2024년 36,920억원으로 12.7% 증가했으나, 부채증가율(38.5%)이 자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당기순이익은 2024년 971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부동산처분이익(1,802억원)과 같은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임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인천항만공사 재무상태 및 수익성]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자산총계	32,761	33,494	35,348	36,403	36,920	4,159 (12.7)
부채총계	10,242	11,441	13,119	14,618	14,189	3,947 (38.5)
자본총계	22,519	22,050	22,229	21,785	22,731	212 (0.9)
부채비율	45.5	51.9	59.0	67.1	62.4	17 (37.1)
매출액	1,475	1,543	1,722	1,830	1,887	412 (27.9)
영업이익	△54	32	123	211	234	288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891	△237	111	△409	971	80 (9.0)

주: 1. ( ) 안은 증감률
2. 각 연도 결산 기준
3.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는 대규모 투자부동산 건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부채로 충당함에 따라 부채가 금융부채 중심으로 증가함

○ 인천항만공사의 총 금융부채는 2020년 9,412억원에서 2024년 1조 3,103억원 39.2% 증가하여, 동 기간 자산 증가율(12.7%) 대비 3배 이상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임

[인천항만공사 금융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금융부채	9,412	11,118	12,886	14,402	13,103	3,691 (39.2)

주: 1. ( )안은 증감률
2. 각 연도 결산 기준
3.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인천항만공사의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부채증가 속도가 수익 창출 능력을 상회하고 있음

- 5년간 금융부채 증가율 39.2%에 비해 매출 증가율은 27.9%에 그쳐 대규모 중장기적 투자 확대가 현시점의 매출 증대로 즉시 연결되지 않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2020년 28.7%에서 2024년 35.4%로 6.7%p 상승하여 차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4년 12.4%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인천항만공사 부채증가 대비 수익창출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율 (B-A)/A
금융부채	9,412	11,118	12,886	14,402	13,103	39.2
자산총계	32,761	33,494	35,348	36,403	36,920	12.7
차입금의존도[1)]	28.7	33.2	36.4	39.6	35.4	6.7
매출액	1,475	1,543	1,722	1,830	1,887	27.9
영업이익	△54	32	123	211	234	-
매출액영업이익률[2)]	△3.7	2.1	7.1	11.5	12.4	16.1

주: 1) 차입금의존도(%) = (금융부채 ÷ 자산총계) ×100
2)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100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건설중인자산은 2020년 2,042억원에서 2021년 1,602억원으로 일시 감소한 후 2024년 5,089억원까지 증가함

○ 투자부동산 중 건설중인자산 급증으로 대규모 자본이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임

[인천항만공사 투자부동산 중 건설중인자산]

(단위: 억원, %)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투자부동산 중 건설중인자산	1,999	1,598	2,250	3,748	5,089	3,090 (154.6)

주: 1. ( )안은 증감률
2. 각 연도 결산 기준
3.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이후 투자부동산 중심의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업 중 인천신항Ⅰ-2단계컨테이너부두개발사업이 4,145억원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8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예정
- 투자부동산의 특성상 완공 후 임대수익 또는 매각수익을 통한 투자회수가 예상되나, 대규모 투자에 비해 단기적 매출 기여는 제한적인 상황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장부가액	준공시기
인천신항Ⅰ-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4,145	2028년 상반기
아암물류2단지(2단계) 부지조성 공사	748	2025년 하반기
연안항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188	2025년 하반기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130	2026년 상반기
기타(장부가 50억 미만 사업)	150	-
합계	5,361	-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의 주요 영업활동인 항만사용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정체로 인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인천항만공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1년 이후 개선되었지만, 2023년 및 2024년에는 정체

- 2023년 당기순손실 409억원은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 추징액 490억원이 영업외손익에 반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추징금은 조세심판 승소로 2025년 3월 전액 환급 완료되었음
- 2024년 당기순이익 971억원은 골든하버(Cs8) 매각에 따른 투자부동산 처분이익 1,802억원이 영업외손익에 반영된 결과임

[인천항만공사 손익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	1,475	1,543	1,722	1,830	1,887
영업비용	1,529	1,511	1,599	1,619	1,653
영업이익	△54	32	123	211	234
영업외손익	945	△269	△12	△620	737
당기순이익	891	△237	111	△409	971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영업의 바탕이 되는 인천항의 총물동량이 2020년 151,917천RT에서 2024년 147,812천RT로 2.7% 감소하여 물동량 회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 기인함

-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0년 3,272천TEU에서 2024년 3,558천TEU로 8.7% 증가하였으나 벌크화물은 2020년 101,602천RT에서 2024년 93,233천RT로 8.2% 감소

[인천항 물동량 현황]

(단위: 천RT, 천TEU,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총물동량(천RT)	151,917	157,806	149,681	146,352	147,812	△4,105 (△2.7)
컨테이너(천TEU)	3,272	3,355	3,193	3,461	3,558	286 (8.7)
벌크(천RT)	101,602	105,754	99,386	93,043	93,233	△8,369 (△8.2)

주: RT는 벌크 화물이나 일반화물의 총 중량을 의미하며, TEU는 컨테이너 수 단위임
자료: 인천항만공사

○ 물동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다소 증가한 것은 임대료 수입의 증가에 따름

- 사용료 수입은 2020년 560억원에서 2024년 652억원으로 16.4% 증가에 그친 반면, 임대료 수입은 2020년 702억원에서 2024년 1,026억원으로 46.2% 급증하여 수익구조가 임대사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인천항만공사 매출 구조]

(단위: 억원)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액 (B-A)
매출	사용료[1]	560	577	608	646	652	92
	임대료[2]	702	757	902	957	1,026	324
	갑문수탁수입	89	76	82	95	90	1
	기타매출	124	133	130	132	119	△5
	합계	1,475	1,543	1,722	1,830	1,887	412

주: 1) 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화물료, 수역시설점용료 및 기타사용료로 구성
2) 임대료는 부두임대료, 배후단지임대료, 기타임대료로 구성
자료: 인천항만공사

❑ 그 결과, 2024년 총 금융부채 1조 3,103억원 대비 영업이익 234억원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이자비용은 2020년

215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0.9% 증가하여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인천항만공사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영업이익	△54	32	123	211	234
이자비용	215	255	272	316	303
이자보상배율	-	0.1	0.5	0.7	0.8

주: 이자보상배율(배)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인천항만공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면 2024년 234억원의 영업이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144억원의 현금유출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동 금융부채가 2020년 2,029억원에서 2024년 3,355억원으로 65.4% 증가하여 단기 상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악화와 함께 유동성 부채 증가로 인해 단기 자금 조달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인천항만공사 현금흐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영업활동현금흐름	△39	△294	566	241	△144
투자활동현금흐름	△427	△1,567	△2,372	△1,108	1,662
재무활동현금흐름	109	1,476	1,737	1,105	△965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인천항만공사는 향후 투자부동산 완공 후 처분을 통한 투자 회수가 예상되나 완공시점까지 단기 유동성 관리 및 이자비용 절감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5-2. 골든하버사업 장기간 투자비 회수 지연 문제

가. 현 황

❑ 골든하버사업은 2001년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3년간 추진되어 온 인천항만공사의 대규모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05억원[1]임

- 사업부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서측 해상에 위치한 2종 항만배후단지[2]
- 총 면적 42만 7,657m^2(약 13만평), 11개 필지로 구성
- 해양문화관광시설, 호텔·리조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함

[골든하버사업 사업 현황]

골든하버 현황도	구분		용적율 (%)	면적 (m^2)
	Cs1		350	16,532
	Cs 2	1	350	82,151
		2	350	41,689
		3	350	35,823
	Cs3		350	17,863
	Cs4		350	18,686
	Cs5		350	9,942
	Cs6		350	44,747
	Cs7		350	61,183
	Cs8(完)		350	68,503
	Cs9(完)		350	30,539
	합계			427,657

자료: 인천항만공사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총사업비는 여객부두 건설,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여객터미널 신출공사 및 골든하버 부지 조성비용 등 일체를 포괄하는 금액임

2) 항만법에 따라 지정되는 항만배후단지 중 하나로, 항만과 연계된 물류기능 외에 상업·업무·관광·레저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1종 항만배후단지가 순수 물류기능에 특화된 것과 달리, 2종은 항만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복합개발이 허용됨

❑ 골든하버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기획부터 완공까지 약 19년, 투자회수단계에서 추가 4년이 소요되어 총 23년간 진행되고 있음

◦ 2001~2020년은 사업기획 및 건설단계로 매립공사 및 상부 기반시설 건설 완료 후 크루즈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함

◦ 2020년부터 현재는 투자회수 단계로 법적 규제 개선 및 민간투자유치 진행 중임

[골든하버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

단계	기간	주요 내용
사업계획	2001~2015년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
건설단계	2016~2020년	매립공사 및 상부 기반시설 건설, 터미널 개장
투자회수	2020~현재	법적 규제 개선, 민간투자 유치

자료: 인천항만공사

❑ 총 투자비 6,705억원(국비 1,400억원, 인천항만공사 5,30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Cs8·Cs9 부지 매각은 완료되어 일부 처분이익이 확보되었으나, 잔여 6개 필지의 매각은 지연되고 있음

[골든하버사업 투자 회수 현황(2024년말 기준)]

부지	매각상태	매각(계약)시기	매각방식	비고
Cs8	완료	2023년 12월	IFEZ매매계약	회수액 1,880억원
Cs9	완료	2023년 12월	IFEZ매매계약	회수액 807억원
Cs1	유찰	2024년 10월	공개경쟁입찰	무응찰
기타 5개 필지	매각 예정	미정	공개경쟁입찰	계획수립중

주: IFEZ(Icheon Free Economic Zone)은 인천경제자유구역임
자료: 인천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골든하버사업의 투자 회수 지연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로 인한 매각절차 지연과 시장관심도 저하에 따른 투자유치 부진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20년 「항만법」 개정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 양도제한규정이 신설되어 민간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규제 개선을 위한 항만법 재개정 과정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 소요되어 투자유치 활동이 지연됨

◦ 개정 전에는 상부시설 취득 후 10년 이내 양도 불가 및 임대 시 개별 승인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 2종 항만배후단지 분양목적 시설양도가 가능하게 됨

[「항만법」 개정에 따른 규제변화]

구분	개정전	개정후
토지	민간사업자 취득 후 제3자 처분 가능	동일
상부시설	취득 후 10년 이내 양도 불가, 임대시 개별 승인 필요	2종 항만배후단지 분양목적 시설 양도 가능
시행일	2020.7.	2024.4.

◦ 23년간의 장기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및 투자 환경 변화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됨

- 2024년 6월 Cs1부지의 공모 무응찰과 7월 공모 사업설명회 참여 저조는 투자 여건에 대한 시장의 소극적 반응을 나타냄

[골든하버사업 투자유치 현황]

연도	추진내용	결과
2023.3.	IFEZ 전체 필지 매입의향 표명	Cs8, 9 매각
2024.6.	**Cs1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	**무응찰로 유찰**
2024.7.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저조
현재	유럽 “T”사 투자유치 추진	진행 중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비 실제 투자 회수 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1.09[3]로 경제성이 확인되었으나, 장기간의 개발과정에서 투자 회수 지연이 발생

◦ 2025년 8월말 기준 Cs8 및 Cs9 매각을 통한 투자부동산 회수액 2,688억원이 투자 회수 성과로, 총 투자비(6,705억원) 대비 40.1% 수준

❑ 대규모 투자에 비해 투자 회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 인천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항만공사 자체 투자분(5,305억원) 기준으로도 회수율은 50.7%로 투자회수가 지연되고 있음

- 잔여부지 매각 지연이 지속될 경우 투자 회수 완료 시점이 더욱 연장될 가능성

◦ 현재 잔여 6개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일정 및 전략이 부재한 상황

-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시장 상황 및 잠재투자자 관심도에 따라 유동적 계획 수립 예정'으로 명확한 로드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골든하버사업의 23년간 추진 과정에서 투자 회수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체계적인 해결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총 투자비 6,705억원 대비 회수액 2,688억원(회수율 40.1%)에 머물고 있으며, 잔여 6개 필지에 대한 매각이 지연되면서 인천항만공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Cs1 공모 무응찰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매력도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종합적인 매각 전략 수립이 필요함

3) B/C는 편익-비용 비율로,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1.09는 비용 100원 투입 시 109원의 편익 발생을 의미하나, 경제성 수준은 높지 않음

5-3.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신규 배후단지 투자 회수 부진 문제

가. 현 황

❑ 인천항만공사는 2006년부터 2024년말 현재까지 총 524만m^2 규모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4,960억원을 투자하였음

○ 아암물류 1단지(남항배후단지 1단계)를 시작으로 북항배후단지(남·북측), 신항배후단지, 아암물류 2단지 2단계(남항배후단지 2단계)등 총 5개 단지가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이들 단지의 총 투자비는 2,809억원에 달함

- 가장 최근에 완공된 신항배후단지는 1,071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현재 개발 중인 아암물류2단지(1-1단계, 2단계)는 4,019억원의 투자가 2025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임

○ 배후단지 조성의 재정부담 구조를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가 전체 투자비의 평균 72.6%(4,960억원)를 부담하고 정부가 평균 27.4%(1,868억원)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인천항만공사 자체 재원의존도가 높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 개발 현황(2024년말 기준)]

(단위: 만m^2, 억원)

구분		조성연도 (입주연도)	면적	총사업비	재정부담	종
완료	아암물류 1단지[1]	2006년 ('05~'11년)	97	407	IPA 407(100%)	1종
	북항배후단지(남측)	2012년 ('13~'19년)	56	461	IPA 372(80.7%) 정부 89(19.3%)	1종
	북항배후단지(북측)	2020년 ('22년)	17	158	IPA 119(75.3%) 정부 39(24.7%)	1종
	신항배후단지 (Ⅰ-1단계 1구역)	2020년 ('21년 이후)	64	1,071	IPA 830(77.5%) 정부 241(22.5%)	1종
	아암물류 2단지[2] (골든하버)	2020년 ('20년 이후)	43	712	IPA 559(78.5%) 정부 153(21.5%)	2종
개발	아암물류2단지[3] (1-1단계, 2단계)	~2025년	255	4,019	IPA 2,673(66.5%) 정부 1,346(33.5%)	1종
합계		-	524	6,828	IPA 4,960(72.6%) 정부 1,868(27.4%)	-

주: 1) 아암물류 1단지 1단계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출자하여 기반공사를 실시 한 후 인천항만공사가 인수함

2)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3) 아암물류 2단지 1-1단계는 2021년 조성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2단계는 조성중임

1. 민간개발 배후단지는 제외함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시기별 투자 패턴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변화하면서 단위당 투자비용이 3배 이상 급증함

◦ 인천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은 2020년을 전후로 나눌 수 있음

- 1단계(2006~2012년): 소규모 초기투자로 아암물류 1단지, 북항배후단지(남측) 개발이 이루어짐
- 2단계(2020년): 대규모 동시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로 북항배후단지(북측), 신항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골든하버) 개발이 이루어짐
- 3단계(2020~2025년): 최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시기로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및 2단계 개발이 이루어짐

◦ 2020년 이후 조성된 단지(이하 '신규 단지'라고 함)들의 단위당 투자비용이 초기 단지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임

[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별 단위당 투자비용]

(단위: 억원, 만m^2)

배후부지명	조성연도	구분	총사업비	면적	단위당투자비용 (천원/m^2)
아암물류1단지(1단계)	2006년	1종	407	97	47
북항배후단지(남측)	2012년	1종	461	56	82
북항배후단지(북측)	2020년	1종	158	17	93
신항배후단지	2020년	1종	1,071	64	162
아암물류2단지(골든하버)	2020년	2종	712	43	166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2단계)	진행중	1종	4,019	255	157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인천항만공사의 재정부담 비율이 초기 100%(2006년), 80.7%(2012년) 등에서 2020년 이후에는 70%대로 낮아졌으나 절대 투자 규모 증가로 인천항만공사의 실질적 부담은 확대됨

❑ 신규 대규모 배후단지의 입주율 저조로 인한 임대수익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 단지(입주율 100%)와 신규 단지(입주율 67% 내외)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임

◦ 신항배후단지(1-1단계 1구역)의 경우 2024년말 기준 입주율이 67.7% 수준에 머물러 있어 총 입주가능면적 47만㎡ 중 15만㎡가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음(현재 7개社 입주)

- 미임대 면적 중 상당 부분은 선행시설 완공 대기, 임대계약 해지 후 정리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입주율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1)]

◦ 아암물류2단지(1-1단계)의 경우에도 입주율이 66.7%에 그치고 있어 입주가능면적 33만㎡ 중 약 11만㎡의 미임대 면적이 발생

[인천항만공사 단지별 입주 현황(2024년말 기준)]

(단위: 만m^2, %)

구분	용도	조성 면적	입주가능 면적	입주 면적	입주율	미임대 면적
아암물류1단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컨테이너 화물 특화)	97	56	56	100.0	0
북항배후단지(남측)	공장 및 창고 (벌크화물 중심)	56	28	28	100.0	0
북항배후단지(북측)	공장 및 창고 (벌크 화물 중심)	17	13	13	100.0	0
신항배후단지 (Ⅰ-1단계 1구역)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콜드체인 특화구역	64	46	31	67.4	15
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	복합물류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67	33	22	66.7	11
합계	-	301	177	151	85.3	26

자료: 인천항만공사

1) 미임대 면적 중 콜드체인 B-type 구역 11.3만㎡의 경우 A-type 물류센터의 LNG냉열 공급시설 착공 후에야 입찰이 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며, D社 사용부지 3.7만㎡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임대계약 해지 후 시설물 양수도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단기간 내 입주율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두 단지 합계 26만㎡의 미임대 면적으로 인해 월 임대료를 ㎡당 2,000원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약 62억원의 임대수익 기회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실률 장기화는 인천항만공사의 현금흐름과 투자회수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아암물류2단지 1-1단계는 1,022억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임대개시 후 3년간 172억원의 임대료 수납에 그쳐 회수율이 16.8%에 머물고 있음

❑ 단지별로 투자회수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조성 단지의 수익성이 부진함

◦ 아암물류1단지의 경우 2007년 임대개시 이후 17년간 운영되면서 407억원 투자 대비 1,303억원의 임대료 수납으로 320.1%의 회수율을 달성

◦ 북항배후단지 남측도 2012년 임대개시 후 12년간 운영되어 461억원 투자 대비 553억원 수납으로 120.0% 회수율을 기록하여 투자비 완전 회수를 달성함

◦ 반면 2020년 이후 완공된 대규모 투자 단지들의 경우 투자회수 성과가 저조한 상황

- 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은 3,357억원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대개시 후 4년간 125억원의 임대료 수납에 그쳐 회수율이 3.7%에 머물고 있음
- 신항배후단지 역시 1,071억원 투자 대비 392억원 수납으로 36.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어 30년 회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북항배후단지(북측)은 2021년 임대개시 후 3년간 운영되어 158억원 투자 대비 90억원 수납으로 57.0% 회수율 기록

[인천항만공사 단지별 투자회수 현황 및 임대료 기준(2024년말 기준)]

(단위: 억원, %, 만m^2)

구분	총사업비	누적임대료 수입	회수율	임대개시	현행임대료 (월/m^2)	임대료 기준
북항배후단지(북측) (7개社 입주)	158	107	67.7	2021년	1,834원	투자비회수 (30년)
북항배후단지(남측) (14개社 입주)	461	553	120.0	2012년	1,764원	투자비회수 (25년)
아암물류1단지 (16개社 입주)	407	1.303	320.1	2007년	1,543원	개별공시지가
아암물류2단지[1] (5개社 입주)	1,022	172	16.8	2020년	2,020원	투자비회수 (30년)
신항배후단지 (7개社 입주)	1,071	392	36.6	2020년	2,053원	투자비회수 (30년)
합계	3,119	2,527	81.0	-	-	-

주: 1) 아암물류2단지는 아암물류2단지 1-1단계에 대한 자료이며, 아암물류2단지 2단계는 현재 조성 중으로 입주기업 모집 전이므로 회수율 산정에서 제외함
1. 임대료는 2024년 기준임

자료: 인천항만공사

○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단지일수록 투자 규모는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아암물류2단지 1-1단계(1,022억원)의 회수율이 16.8%로 투자 규모가 가장 작은 아암물류1단지(407억원, 320.1% 회수율)와 비교할 때 투자 규모는 2.5배 증가했으나 회수 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현재 조성 중인 아암물류2단지 2단계까지 고려하며 총 투자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나, 동일단지 내 1-1단계의 저조한 회수율(16.8%)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투자 회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배후단지의 투자회수 현황을 종합하면 초기 단지들의 양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투자 단지들의 저조한 회수율로 인해 전체적인 투자 효율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진행속도로는 신규 단지들의 실질적인 투자회수가 어려워 인천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투자능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2020년 이후 완공된 신규 단지들의 화물처리량 성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요예측의 정확성과 단지별 특성 반영에 개선이 필요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암물류2단지의 경우 2021년 100% 달성 후 2023년 60%, 2024년 5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항배후단지는 2023년 155%, 2024년 150%의 초과 달성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 방법 개선이 필요

- 아암물류2단지의 경우 2024년 기준 계획 12만TEU 대비 8만TEU만 처리하여 달성률이 53.3%에 그쳐 실제 가동률이 낮은 상황임
- 반면 신항배후단지는 2024년 기준, 계획 10만TEU 대비 15만TEU를 처리하여 150%의 초과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계획 대비 화물 집중으로 인한 시설 포화의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화물처리량 편차는 단지별 입주율과 실제 가동률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아암물류2단지는 입주율 66.7%에 비해 화물처리 달성률이 53.3%로 낮아 입주기업들의 실제 운영 규모가 계획 대비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신항배후단지는 입주율 67.4%에 비해 화물처리량이 150%로 높아 기존 입주기업들이 계획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화물처리량 상향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인천항만공사 단지별 연간 화물처리량 현황(2024년말 기준)]

(단위: 만teu,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실적	달성	계획	실적	달성	계획	실적	달성	계획	실적	달성	계획	실적	달성	계획	실적	달성
북항배후단지(북측)	-	-	-	-	-	-	-	-	-	1	1	100	1	1	100	2	2	100
북항배후단지(남측)	17	12	70.6	13	12	92.3	13	13	100	13	13	100	13	11	84.6	13	13	100
아암물류1단지	29	26	89.7	29	26	89.7	32	28	87.5	30	25	83.3	25	25	100	30	27	90
아암물류2단지	-	-	-	-	-	-	6	6	100	15	16	107	15	9	60	12	8	53.3
신항배후단지	-	-	-	-	-	-	-	-	-	6	5	83.3	9	14	155	10	15	150
합계	-	-	-	-	-	-	-	-	-	65	60	92.3	63	60	85.2	67	65	92.9

주: teu는 컨테이너 1개 단위를 의미함
자료: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투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운영효율성이 모두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추가 개발을 앞으로 투자전략과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2020년 이후 완공된 대규모 단지들의 낮은 입주율과 저조한 투자회수율로 인해 연간 65억원의 임대수익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1,022억원을 투자한 아암물류2단지의 경우 회수율이 16.8%에 그쳐 투자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단지별 화물처리 성과가 53.3%에서 150%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어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5-4.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운영사업자 계약 불이행 및 사업 지연 문제

가. 현 황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 인근 역무선 배후부지에 총 39만 8,155m^2(약 12만평) 규모의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이라고 함)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사업구조는 인천항만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인 ㈜카마존(SPC)이 총사업비 4,37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임
  - ㈜카마존은 5개사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부지를 30년간 임대받아(10년 단위 최대 2회 연장 가능) 연간 임대료 120억원(2022년 공시지가 기준)을 지급하는 조건임
- ○ 중고차 수출관련 전시장, 경매장, 검사장, 부품판매, 편의시설, 친수공간 등을 포함한 종합 중고차 수출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함
- ○ 1단계로 남항 역무선 부두 배후 용지 20만 4,000m^2를, 2단계로 석탄부두 용지 19만 4,000m^2를 개발할 계획임
- ○ 현재 송도유원지에 위치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전할 예정임

[인천항만공사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개요]

(단위: 만m^2, 억원)

구분	위치	면적	임대료 (연간)	임대기간	사업비
1단계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82-7 일원	20.4	60	30년 (10년씩 2회 연장 가능)	2,480
2단계	동일 (석탄부두 이전 후)	19.4	60	30년 (10년씩 2회 연장 가능)	1,890
합계	-	39.8	120	-	4,370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2022년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공모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추진계약 체결('23.5월)부터 임대차계약 체결('23.12월)까지 7개월이 소요됨

◦ 실시계획 승인이 2025년 2월에 이루어져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인천항만공사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22.10.12.~2023.01.09.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운영사업자 선정 재공모 실시
2023.05.12.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사업추진계약 체결((주)카마존)
2023.12.12.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1단계 임대차계약 체결
2025.02.11.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실시계획 승인
2025.05.11.	운영사업자의 착공 신고 기한
2025.06.30.	운영사업자의 자기자본증자 기한
2027	1단계 사업 완공 목표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거점으로 국내 중고차 수출물량의 약 80%를 처리함

◦ 2022년 30만 3,416대, 2023년 50만 2,028대, 2024년 47만 8,598대를 수출하여, 국내 중고차 수출물량의 약 80%를 처리함

◦ 2024년 12월 인천시가 발표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송도 유원지 일대의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2028년까지 이전하여 주거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임

나. 주요 쟁점

❑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음

○ 운영사업자인 ㈜카마존의 주요 계약의무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025년 2월 실시계획 인가가 최종 승인되어 올해 2분기 착공을 목표로 발표되었으나 2025년 5월 예정된 착공 신고 미이행으로 공사 착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 2025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임대료 미납과 2025년 6월 30일까지 예정된 446억원(총사업비의 10%)의 자기자본증자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의 문제가 발생[1)]

○ 이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최고[2)] 조치(2025년 7월 31일 기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향후 계약해지 및 사업자 재선정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임

- 계약해지 시 새로운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 과정을 재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재공모를 실시한 경험이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사업 참여 의욕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이 경우 2027년 완공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환됨

❑ 스마트 오토밸리의 주요 목적인 송도 유원지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성공에 차질이 우려됨

○ 현재 송도유원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스마트 오토밸리 이전 시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체부지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2027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1) 당초 2024년 12월까지 자기자본증자 이행의무가 있었으나 자금조달 기한을 6개월 연장함

2) 최고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는 법적 절차로,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완공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임

- 반면 인천시의 송도유원지의 중고차 업체 이전 계획은 2028년으로 확정되어 있어, 스마트 오토밸리 완공 지연 시 기존 업체들의 이전 시기와 대체시설 준비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스마트 오토밸리 완공 지연시 기존 업체들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계획이 부재함

❑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사업 추진체계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장기 운영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2022년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재공모가 실시되었고 현재 운영사업자 역시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사업자 관련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함

○ 계약 체결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반복적인 일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저하됨

○ 따라서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6 울산항만공사

6-1. 정부 배당 확대 필요

가. 현 황

❑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항의 건설,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

◦ 「항만공사법」 제30조[1]에 따라 울산항 내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안정적인 당기순이익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2020년 당기순이익 146.9억원에서 2024년 322.6억원으로 증가

◦ 이에 따라 배당금도 2020년 88억원에서 2024년 187.1억원으로 확대

[울산항만공사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당기순이익	146.9	279.4	316.9	364.5	322.6
배당금	88	136.6	145.8	211.4	187.1
배당성향	59.9	48.9	46.0	58.0	58.0

주: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별도 기준
3. 배당성향은 배당금÷당기순이익×100으로 계산

자료: 연도별 울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항만공사법」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쟁점

❑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 여건이 양호하여 배당 확대 여력 존재

○ 울산항만공사는 자산과 부채 구조, 이익누적 및 현금창출력 등 대부분의 재무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자산총계는 2020년 8,474억원에서 2024년 8,939억원으로 약 5.5% 증가, 부채총계는 2020년 1,461억원에서 2024년 1.402억원으로 감소함
- 부채비율은 2020년 21.1%에서 2024년 15.7%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며, 타 항만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이익잉여금은 5년간 약 695억원 증가하며, 내부 유보도 충분히 확보함
- EBITDA 기준 연간 600억 원 내외의 현금창출력을 유지함
- 영업현금흐름은 2020년부터 매년 양(+)의 상태이고, 2024년에는 532.3억 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은 투자현금흐름도 양(+)으로 전환되어 자금 여유 증가

[울산항만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조달 여건]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자산	8,474	8,647	8,808	9,002	8,939
총부채	1,461	1,558	1,376	1,572	1,402
부채비율	21.1	21.9	15.6	17.5	15.7
이익잉여금	2,139	2,331	2,515	2,728	2,834
EBITDA	511.6	609.9	644.8	650.0	656.4
영업현금흐름	338.4	478.5	498.1	501.6	532.3
투자현금흐름	△319.3	△383.9	△500.4	△163.2	128.7

주: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별도 기준

자료: 연도별 울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이자비용과 자본조달 여건도 양호함

- 이자비용은 2020년 14.7억원, 2024년 18.1억원 수준으로, 차입금 총액(2024년 기준 약 1,100억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공사의 가중평균자본화이자율은 2024년 2.38% 수준으로, 2020~2023년 동안 2.83%를 유지하다 2024년 2.38%로 하락함
- 이는 공사의 조달금리가 2%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입구조상 금융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배당정책에 미치는 재무적 제약이 낮음

[울산항만공사 이자비용 및 이자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입금 총액	1,250	1,250	1,250	1,250	1,100
이자비용	14.7	14.2	15.1	15.4	18.1
가중평균자본화이자율	2.83	2.83	2.83	2.83	2.38

자료: 연도별 울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항만공사법」상 손익금 처리 우선순위와 실제 운용방식 간 불일치

○ 울산항만공사는 사업연도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함

○ 「항만공사법」 제32조[2]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금을 ①이월손실금의 보전 → ②이익준비금(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이익의 1/5이상) → ③출자자 배당 → ④사업확장적립금 순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의 감사보고서 주석에서는 '이익의 1/5 이상을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배당보다 사업확장적립금이 우선하는 것처럼 운용됨

2) 「항만공사법」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 2020~2024년간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은 법령의 우선순위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년 투자 사업계획 및 출자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이익준비금과 사업적립금을 적립하는 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울산항만공사 이익잉여금 처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익잉여금처분액		145.4 (100.0)	279.6 (100.0)	320.7 (100.0)	359.6 (100.0)	317.2 (100.0)
	이익준비금	28.7 (19.7)	71.5 (25.6)	87.5 (27.3)	74.1 (20.6)	65.0 (20.5)
	사업확장적립금	28.7 (19.7)	71.5 (25.6)	87.5 (27.3)	74.1 (20.6)	65.0 (20.5)
	배당금	88.0 (60.5)	136.6 (48.8)	145.8 (45.4)	211.4 (58.8)	187.1 (59.0)

주: ( ) 안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대비 항목별 구성 비중임
자료: 연도별 울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사업확장적립금 누적 규모와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한 배당정책 재검토 필요

○ 울산항만공사의 사업확장적립금은 2024년 기준 1,256억원까지 누적

[울산항만공사 사업확장적립금(누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확장적립금(누적)	994.5	1,023.3	1,094.7	1,182.2	1,256.3

자료: 연도별 울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이는 공사가 향후 항만시설 확충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을 자체 재원으로 일부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함

- 울산항만공사의 유형자산 투자액은 2020~2023년까지 연평균 약 301억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89.8억원으로 급감함
- 연간 투자 규모 대비 사업확장적립금 누적액이 약 4.1배에 달하여, 단기적 투자 수요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재원을 확보한 상태임

[울산항만공사 투자활동상 유형자산 취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형자산 취득	305.4	291.5	303.8	304.5	89.8

자료: 연도별 울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추가 적립의 재무적 필요성은 제한적인 상황임

○ 한편, 정부 재정 여건이 중기적으로 제약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정기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세입 기반 둔화, 복지·기후 대응 등 필수지출 증가, 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은 축소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배당 확대 및 유보금 활용을 통해 재정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울산항만공사의 배당정책은 법령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구조 정립 및 이익잉여금 처분시 투자사업 계획 등을 반영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적립의 합리적 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3)]

3)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르면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통해 배당정책 논의

6-2. 사업 전략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해외사업 조기 철수 및 투자손실 발생

가. 현 황

❑ 울산항만공사는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에 105.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착공 전 사업을 종료하고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 울산항만공사의 해외물류센터 사업은 「항만공사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운영업 및 제7호에 따른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출자한 사업임

○ 베트남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년짝 1공단 내에서 합작투자(Joint Venture) 방식으로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함

- 울산항만공사 80%, KCTC VINA 20% 현금 출자를 통한 합작투자(JV) 방식
- 총사업비는 14,740천USD(한화 약 188.7억원)이며, 출자금액은 10,000천USD(한화 약 128억원)로 울산항만공사는 지분율(80%)에 따라 출자금액이 8,000천USD(약 105.2억원)임[2]

○ 상온 및 냉동창고를 포함한 11,015m^2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계획하여 한국 중소기업 물량 보관 및 판로지원을 목표로 함[3]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사업) ②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 항만의 건설
2.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2) 적용환율 1,280원/USD

3) 창고운영

Zone A(냉동) (5,570㎡)	Zone B(상온) (3,630㎡)	Zone C(상온) (1,815㎡)
직영구역(위탁운영)		임대구역

* 상온 및 냉동창고 외 공용구역, 사무동 등 면적 제외

[울산항만공사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 투자 현황]

(단위: 천USD, 억원)

구분	내용	금액	
		USD	원화
총사업비	복합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	14,740	188.7
출자금액	초기자본금(2024.3월 납입)	10,000	128.0
울산항만공사 출자분	지분율 80%	8,000	105.2

자료: 울산항만공사 제출자료

❑ 2024년 11월 사업 전반 재검토를 통해 합의에 의한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현재 청산을 진행 중임

○ 현지 시장 상황 및 여건악화,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으로서의 해외사업 추진 방향 재정립 등을 고려하여 물류센터 공사 착공 전 사업 종료를 결정함

- 2024년 11월 사업 종료 결정 후 12월부터 청산 진행 시작, 2025년 2월 합작법인 청산과 투자프로젝트 해지를 위한 사원총회 의결 및 베트남 당국 신고가 이루어짐

○ 현재 자산 정리 및 세금확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매몰비용은 약 1.25억원으로 예상됨[4)]

- 합작법인 수입지출내역을 고려할 때 추정 잔존자산 103.9억원 분배 예정
- 울산항만공사 자본금 납입액 105.2억원 중 98.8%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전망

4) 2025년 2월 기준 환율에 따른 금액이며, 현재 합작법인 청산 진행 중인 단계로 최종 매몰 비용은 향후 잔존자산 분배 및 송금시기 환율(원화 가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주요 쟁점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방향성 혼재로 불필요한 투자손실이 발생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추진, 중단, 재추진, 종료의 과정을 반복하여 중장기적 해외사업 전략의 부재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시사함

◦ 2022년 10월 글로벌 시장환경 악화(고금리, 고환율)로 사업추진을 일시 보류하여 사업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함

- 2020년 11월 양해각서 체결 후 2021년 타당성조사 및 승인과정을 거쳐 추진하였으며, 2022년 1월 전담조직(베트남물류센터TFT) 구성과 운영을 시작함
- 2022년 10월 시장환경 악화를 이유로 사업 일시 보류를 결정

◦ 2023년 8월 사업 재추진시 자본 조달구조와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으나, 근본적인 사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없이 성급하게 재개하여 결국 사업 종료에 이름

- 2023년 10월 신규참여자 발굴 및 합작투자계약을 재체결하였으나 2024년 1월 합작법인 기업등록증 발급 후 약 10개월만에 사업 종료 결정

❑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전략적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방향성 혼재

◦ 국내 유일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으로서의 해외사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사업종료 사유로 제시한 것은 애초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전략적 검토 부족을 시사함

- 최초 사업 기획 당시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항만물류 육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음
- 그러나 에너지 물류 중심의 전략 방향 및 기관의 핵심역량과, 해외 물류센터 사업 간의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진단이 미흡하였음

❑ 사업 종료 과정에서 손실 최소화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함

◦ 물류센터 공사 착공 전 사업 종료 결정으로 대규모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하였으나 기투자된 105억의 예산 편성 이후의 기회비용 발생

- 총 투자계획 188.7억원 중 실제 투자액 105.2억원에서 매몰비용을 1.25억원(약 1.2%)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착공 후 사업 중단시 발생할 수 있었던 건설비, 위약금 등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신중한 사전 검토와 일관된 전략 수립이 이루어졌다면 애초 투자 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며, 1.25억원의 직접적 손실뿐만 아니라 투자액 105.2억원이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기회비용이 더 큰 문제임

❑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은 조기 종료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불충분한 사전 검토로 인한 불필요한 투자 손실 발생 사례로 볼 수 있는 만큼 울산항만공사는 향후 해외사업 추진시 신중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여수광양항만공사

7-1. 여수세계박람회장 인수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악화 문제

가. 현 황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광양항의 건설,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임

❑ 2023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승계와 2024년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로 금융부채 및 부채비율이 급증함

◦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승계로 자산 증가와 함께 금융부채가 급격히 증가(2022년 3,190억원→2023년 6,458억원)함

◦ 2024년말 기준 영업손실 78억원 및 당기순손실 111억원으로 적자 전환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상태 및 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자산총계	17,763	17,906	18,142	26,877	26,518	8,755
부채총계	3,483	3,476	3,477	7,975	7,740	4,257
자본총계	14,280	14,429	14,664	18,902	18,778	4,498
부채비율	24.4	24.1	23.7	42.2	41.2	16.8
금융부채	3,190	3,180	3,100	6,458	6,458	3,268
매출액	1,319	1,389	1,428	1,388	1,485	166
영업이익	188	180	231	50	△78	△266
당기순이익	124	149	219	220	△111	△235

주: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연결 기준
자료: 연도별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주요 쟁점

❑ 2023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승계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와 정부선투자금 상환 부담이 가중됨

◦ 2023년 5월 정부의 박람회장 개발정책 변경(민간개발→공공개발)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됨

- 여수세계박람회장 인수로 인해 3,658억원의 정부선투자금 상환의무가 발생했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당초 2025년까지 해당금액을 전액 상환해야하는 상황이었음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업을 항만 부문과 여수세계박람회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익성 현황을 살펴보면, 항만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엑스포 부문의 손실로 전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전체 매출총이익이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승계 전 2022년 422억원에서 2024년 215억원으로 207억원 감소
- 항만 부문은 '22년 422억원, '23년 343억원, '24년 395억원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수세계박람회 부문 손실(2024년 기준, △180억원)로 전체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음

[여수광양항만공사 부문별 수익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A)	2023	2024(B)	증감(B-A)
여수광양항만공사 전체				
매출액	1,428	1,388	1,485	57
매출원가	1,006	1,113	1,270	264
매출총이익	422	275	215	△207
여수광양항 부문				
매출액	1,428	1,364	1,437	9
매출원가	1,006	1,003	1,042	36
매출총이익	422	343	395	△27
여수세계박람회 부문				
매출액	-	42	48	47
매출원가	-	110	228	228
매출총이익(손실)	-	△68	△180	△180

주: 1.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2023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인수됨
2. 2023년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인수 후 7개월 운영한 결과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세계박람회 부문의 구조적 적자로 인해 전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전망

○ 여수세계박람회 부문은 높은 고정비용 구조로 인해 매출 증가만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2024년 기준 매출액 48억원 대비 매출원가 228억원으로 매출원가율이 475%에 달함
- 자회사 위탁관리비 78억원, 시설관리비 11억원, 인건비 15억원 등 실제 운영비용이 매출액의 2배를 넘어서고 있음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재무 및 손익]

(단위: 억원)

구분	2023년(7개월 운영)	2024년
매출액	42	48
매출원가	110	228
- 감가상각비	45	77
- 자회사 위탁관리비	33	78
- 시설관리비	4	11
- 인건비	8	15
- 기타	20	47
매출총손실	△68	△180
매출원가율	261.9	475.0

주: 1. 여수엑스포박람회재단은 2023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인수됨
2. 2023년은 여수엑스포박람회재단 인수 후 7개월 운영한 결과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 2025년 7월 관련부처(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정부선투자금 상환방식이 기존 일시상환에서 10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어 협의가 완료됨

◦ 당초 2025년 일시상환 예정이었던 3,658억원을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12회에 거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개선됨

- 2025년 상환계획은 958억원을 3회 분납(7월 300억원, 8월 200억원, 10월 458억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재 2회차(2025년 8월) 납부를 완료한 상황임

❑ 정부선투자금 상환방식의 변경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승계로 인한 재정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되었으나 여수세계박람회 부문의 구조적 적자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항만부문의 안정적 수익을 여수세계박람회 부문의 손실로 상쇄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항만공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부문의 운영효율성 제고와 수익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재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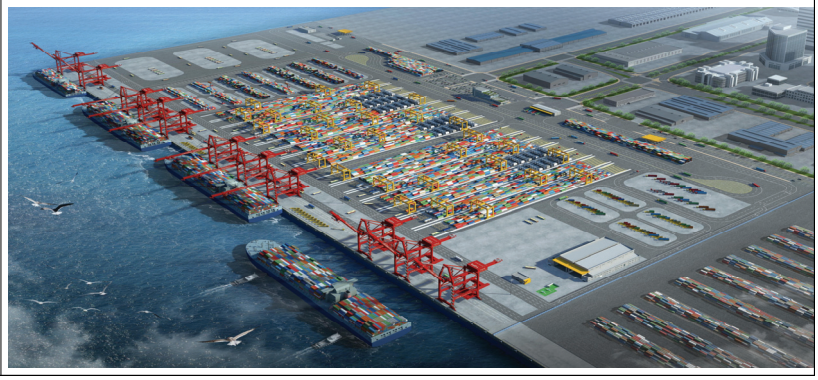
7-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집행 저조 문제

가. 현 황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부터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19년부터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시설을 도입 및 확대하는 사업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일원(컨테이너부두 3-2단계)
부지면적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부지공사 870,010㎡
건립내용	자동화부두 4선석 개발(4천TEU급 × 3선석, 2천TEU급 × 1선석)
총사업비	7,846억원(정부 50%, YGPA 50%,)
조감도	

주: 총사업비 협의조정 기준('23. 11. 기재부)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3단계 투기장에 신소재, 복합 물류·제조 산업 등 융복합화된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주요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
부지면적	332만m^2
건립내용	부지조성(연약지반개량 등) 1식
총사업비	6,530억원(예타당시 6,061억원, 물가상승 등 반영)
조감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각각 2022년과 20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5년 5월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10.6%, 10.0%에 그치고 있음

[여수광양항만공사 소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주요 집행 저조 사업]

(단위: %)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률	비고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22~2029	10.6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2019~2030	10.0	

주: 집행률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는 사업 목적의 적기 달성을 저해하고 물가 상승, 부대비용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1](2022~2029)은 총사업비 조정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10.6% 수준으로 나타나며 2025년에도 2023년 재이월예산 및 2024년 이월예산을 사용 중으로 집행이 저조함[2]

- 본 사업은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1) 광양항 '컨'부두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확대

2)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최초 협의가 2023.11.에 완료되는 등 사전 절차 소요에 따른 발주·계약 순연, 최초 협의 이후 안벽크레인을 발주하였으나 6회 무응찰로('23.12.~'24.08./9개월) 총사업비 조정('24.10.)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2022.2.)되었으며,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7,388억원에서 7,846억원으로 약 458억원이 증가하였음[3)]

- 동 사업은 2029년까지 광양항 3-2단계 부두에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바, 추가적인 사업 집행 지연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산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기 집행액	2,691	941	22,320	57,515 (현재까지)	-	-	-	784,622
집행 예정액	-	-	-	118,629 (예상)	163,168	124,333	352,540	

주: 1. 2025.5월 기준
2. 2025년 현재 2023년 재이월예산, 2024년 이월예산 사용 중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4)](2019~2030) 역시 재료원(토사, 석탄회 등)의 수급 지연 등으로 공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9년 말 완료 목표에서 2030년 말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

- 본 사업 역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2020년 10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
- 이후 2023년 5월에 총사업비가 물가상승, 감정평가 금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 6,061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468억원 증가하였음

3) 본 사업의 적용단가(국제 단가)와 국내 항만장비산업계 단가 차이에 따른 안벽크레인 지속유찰('23.12. ~ '24.08., 6회)로 사업이 순연됨에 따라 국산 안벽크레인 현실단가를 적용하여 총사업비 증가·조정이 이루어졌다.

4)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제조와 해양 신산업, 상업·업무·교육·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 물류지구 공간으로 항만재개발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변경 내역]

(단위: 억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기간	2019.7. ~ 2029.12.	2019.7. ~ 2030.12.	증 12개월
사업면적	3,260,202㎡	3,318,841㎡	증 58,639㎡
총사업비	6,061	6,529	증 468
토지이용계획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입주업종 조정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업 추진 지연이 사업 목적의 적기 달성을 저해하거나 물가 상승, 부대비용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향후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1.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 2024회계연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자산 59억원, 부채 112억원으로 순자산은 △5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은 3억원을 기록함

[2024회계연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5,894	11,165	△5,271	28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총부채(111.7억원) 중 퇴직급여 관련 부채가 95.7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이에 상응하는 자산은 41.9억원에 불과하여 퇴직급여충당률은 43.8%에 그침

○ 총부채 111.7억원 중 충당부채가 98.7억원으로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95.7억원으로 총부채의 85.7% 수준임

[2024회계연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채 구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총부채	금융부채	기타부채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	11,165	0	1,295	9,870	9,568
비율	100.0	0	11.6	88.4	85.7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퇴직연금제도 없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퇴직급여 관련 부채가 자산을 53.7억원 초과하여 충당률은 43.8% 수준임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2024회계연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퇴직급여 관련 자산·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

2024회계연도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
자산(A)	부채(B)	차이(B-A)	충당률(A/B)	
4,194	9,568	5,374	43.8	• 퇴직금제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순자산이 음(△)인 공공기관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총부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관련 자산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기관의 자본잠식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액은 매년 0.8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6.2억원에서 35.5억원으로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회계연도에서 인건비 불용액을 전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산 대비 초과 집행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최근 5년간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인건비 합계	15,960	15,960	16,933	16,933	17,501	17,501	18,074	18,074	19,624
급여	12,046	11,248	13,606	12,836	14,123	13,852	14,405	10,814	14,616
법정부담금	1,575	1,400	1,673	1,621	1,783	1,644	1,753	1,995	2,238
퇴직급여충당금	80	1,112	80	851	80	616	80	3,548	80
내평성과급여	1,225	1,166	1,262	1,313	1,495	1,369	1,410	1,291	1,590
신규증원	1,034	1,034	312	312	20	20	426	426	1,10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금 편성 예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예산 편성액이 연간 퇴직급여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의미함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매년 8,000만원으로 동일하나, 퇴직급여 지급액은 3억 6,100만원에서 9억 6,900만원으로 예산액을 크게 상회함

◦ 퇴직급여충당률은 2023년까지 20% 미만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 43.8%로 크게 개선되었음

[최근 5년간 퇴직급여충당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초적립금(A)	598	1,135	1,278	1,217	1,479
당기충당액(B)	1,105	1,113	852	622	3,549
퇴직급여 지급액(C)	568	969	913	361	834
기말적립금(D=A+B-C)	1,135	1,279	1,217	1,479	4,194
퇴직급여충당부채(E)	6,842	6,974	6,476	8,200	9,568
충당비율(D/E)	16.6	18.3	18.8	18.0	43.8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서, 필수지출 항목인 퇴직급여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정부 예산의 투입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기관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절한 규모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1.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자금 낮은 예탁이자율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1]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2] 예탁을 위해 전담은행[3]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

-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출연금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통합 RCMS 시스템 계좌로 예탁되며, 금리 및 별도의 협약조건(펀드 등)은 전담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체결함
- ○ 2024년 기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 예탁 평균잔액은 2,624억원 규모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 RCMS 예탁 평균잔액 현황(일평균잔액)]

(단위: 억원)

은행예탁계좌	2021	2022	2023	2024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	2,412	2,668	2,950	2,624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 출연금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통합 RCMS 시스템 계좌로 예탁되며, 금리 및 별도의 협약조건(펀드 등)은 전담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체결함
- ○ 재정자금예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탁 이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4]을 준용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함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자금임

3)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담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선정됨

- RCMS 참여 전문기관의 경우 모두 발생이자를 국고로 납입하고 있음[5)]

○ 전담은행과 협약 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설정하게 되면, 국고로 납입되어야 할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전담은행과 협약 체결 시 시중금리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사업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 전담은행의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재정자금예탁기관의 경우,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 예탁이자율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평균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음[6)]

- 2024년 기준 한국재정정보원의 평균이자율은 3.54%으로 높은 평균예탁규모(11.3조원)를 바탕으로 매년 19개 예탁은행에 예탁금리를 통보하고 차년도 예탁은행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 높은 예탁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평균예탁잔액은 2024년 1,130억원으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예탁규모에 비해 적음에도 2024년 평균이자율(3.56%)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예탁이자율(2.42%)에 비해 높음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되거나,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RCMS 참여기관의 경우 모두 국고로 납입하고 있음

6)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협약 시점인 2019년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0.2%p 수준의 금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2020) → +0.15%p(2025) 수준으로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조정하였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타 예탁기관 예탁 규모·이자금액·평균이자율 현황]

(단위: 억원, %)

은행예탁계좌		2021	2022	2023	2024
산업기술자금 예탁 자금 (MMDA)	평균잔액(A)	25,614	29,653	30,628	30,737
	이자금액(B)	79	239	647	702
	평균이자율(C=B/A)	0.31	0.81	2.11	2.28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MMDA)	평균잔액(A)	2,412	2,668	2,950	2,624
	이자금액(B)	8	20	67	63
	평균이자율(C=B/A)	0.33	0.75	2.26	2.42
한국재정정보원 (MMDA)	평균잔액(A)	92,934	99,534	101,136	113,252
	이자금액(B)	274	1,820	3,503	4,064
	평균이자율(C=B/A)	0.31	1.82	3.48	3.54
정보통신기획평가원(보통예금)	평균잔액(A)	1,194	1,259	1,161	1,130
	이자금액(B)	9.1	25.0	42.7	40.2
	평균이자율(C=B/A)	0.76	1.98	3.68	3.56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자금 전담은행과 이자율 협약과 더불어 별도의 협약조건을 체결하였는데, 국고로 환수될 이자율 수익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시 협약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대출 금리 감면 최대 1.7%[7], 해양수산 R&D 과제 성공수행기업 대상 직접투자(3년 60억원), 컨설팅 30건, RCMS 운영비 분담금 지원 등과 같은 별도 협약 조건을 체결함

◦ 간접적인 기업 지원 방식보다 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R&D 사업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은행 금리 협상력 강화 및 예탁이자율 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예탁금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은행에서 예탁금리를 기관에 선제시하는 방식으로 은행 간 예탁금리 경쟁을 유도하여 금리 협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 대출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발간일	2025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세일포커스(tel 02·2275·6894)

ISSN 3091-9509

ⓒ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8-002040-10
ISSN	3091-950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